



2024. 7. 4.

국회에산정책처 | 사업평가

생활체육 육성사업 평가

Evaluation of the Project for Fostering ‘Sports for All’

박승민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생활체육 육성사업 평가

생활체육 육성사업 평가

총 괄 | 김경호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권순영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작 성 | 박승민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

지 원 | 김선정 사회행정사업평가과 행정실무원
박세영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 02) 6788-3773 | sae@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사업 평가

2024. 7.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4. 06. 07.)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 등으로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에서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체육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스포츠권’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고, 현재 60% 대인 생활체육 참여율을 2028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이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선제적으로 지켜 나가는 ‘적극적인 복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보고서는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 제정 이후 시행하여 온 생활체육 육성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위축되었다가 최근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과거의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보고서는 생활체육 육성사업의 현재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사업 운영 일반”, “생활체육시설 확충·운영”,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으로 구분하여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가 생활체육 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차 례

CONTENTS

요 약 / 1

I. 개 요 / 1

- 1. 분석의 배경과 목적 1
- 2. 분석의 구성과 방법 4

II. 현 황 / 7

- 1. 생활체육 육성사업 개요 7
 - 가. 사업의 구성 7
 - 나. 사업 추진체계 9
- 2. 생활체육 육성사업 관련 법률 및 상위계획 11
 - 가. 관련 법률 11
 - (1) 생활체육 육성 11
 - (2)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15
 - 나. 관련 계획 및 연혁 17
 - (1) 스포츠진흥기본계획 17
 - (2) 국민생활체육 진흥계획의 연혁 21
- 3. 생활체육 육성사업 예·결산 현황 24
 - 가. 일반회계 24
 - 나. 국민체육진흥기금 25
- 4. 주요국의 생활체육정책 29
 - 가. 주요국의 생활체육 육성정책 29
 - 나. 주요국의 생활체육 참여율 33

CONTENTS

Ⅲ. 주요 쟁점 분석 / 35

1. 총괄 분석	35
가. 재정투입 및 성과분석	35
(1) 생활체육 육성사업에 투입된 재정과 생활체육 참여율과의 관계 분석	35
(2) 생활체육 시설지원에 투입된 재정과 이용자 만족도와의 관계 분석	38
나. 성과계획 및 성과지표 분석	40
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 분석	48
2. 생활체육 육성사업 운영 관련 쟁점	56
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분석	56
나. 학교체육 육성사업 분석	65
(1)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분석	69
(2)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분석	74
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분석	85
라. 스포츠클럽 육성사업 분석	92
(1)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 대한 사후 조치 미흡	95
(2)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 분석	97
3. 생활체육시설 확충·운영 관련 쟁점	108
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분석	108
나.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 분석	116
4.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관련 쟁점	127
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분석	127
나.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분석	140
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분석	153

Ⅳ. 결론 및 시사점 / 169

요 약

1. 개 요

1. 분석의 배경과 목적

-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함
 - 생활체육의 목적은 개인의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발달을 촉진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것
- 최근 인구 고령화, 서구적 생활 습관으로 인한 질환 증가,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 등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사람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정부는 현재 60%대인 생활체육 참여율(주1회 30분 이상 규칙적 운동 기준)을 '28년까지 70%로 높인다는 목표
- 본 보고서는 현재까지 시행되어 왔던 생활체육정책의 사회적 배경과 정책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생활체육 육성사업의 사업 성과, 예산 편성·집행의 적절성, 관련 법령·제도 등을 분석·평가하고, 향후 생활체육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분석의 구성과 방법

- 본 보고서는 정부가 그간 시행해온 다양한 ‘생활체육 육성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였음
- 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대한체육회, 한국스포츠편제정책과학원 등 관련 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였고, 국내외 각종 문헌과 통계자료, 언론 기사 등을 종합 활용하였음

II. 현 황

1. 생활체육 육성사업 개요

- 생활체육 육성사업 해당 사업은 ‘생활체육육성 프로그램’ 내에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시설지원’, ‘학교체육 육성’ 단위사업이, ‘장애인체육육성 프로그램’ 내에 ‘장애인 체육육성’ 단위사업이 있음

2. 생활체육 육성사업 관련 법률 및 상위계획

- 생활체육 육성사업 근거 법률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스포츠기본법」 등이 있음
 - ‘장애인 생활체육’은 상기 법률에 더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됨
- 생활체육 육성사업 상위계획에는 ‘스포츠진흥기본계획’ 등이 있음
 -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1990년대 경제발전과 국민 생활 수준 향상 등으로 생활체육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정부는 ‘국민 생활체육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 옴
-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¹⁾은 최초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분야를 통합한 종합계획으로, 생활체육 분야는 ‘28년까지 생활체육 참여율 70% 달성을 추진하는 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함

3. 생활체육 육성사업 예·결산 현황

- ‘생활체육 육성사업’은 대부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동 사업의 예산은 2022년에 ‘생활체육활성화’, ‘장애인생활체육지원’ 등에 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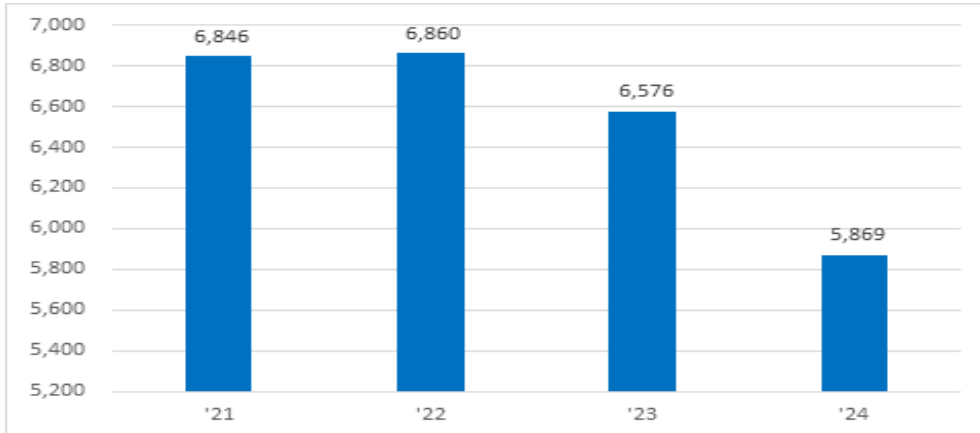
1) 2018년 이후 국민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은 ‘2030스포츠비전(18.3.28)’, ‘제1차 스포츠진흥 기본계획(2024~2028)(2023.12.20.)’ 등으로 대체하여 수립·발표되었음

6,860억원이 편성된 이후 2024년 5,869억원으로 감소 추세

- 일부 사업의 실행률 저조로 인한 예산 감액, 지자체 경비부담 확대로 인한 국비 지원 감소 등에 기인

[생활체육 육성사업 관련 기금계획액 변동 추이(2021년~2024년)]

(단위: 억원)



주: 1. 2024년의 경우 기금에서 균특회계로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지원' 예산 197억원이 이관되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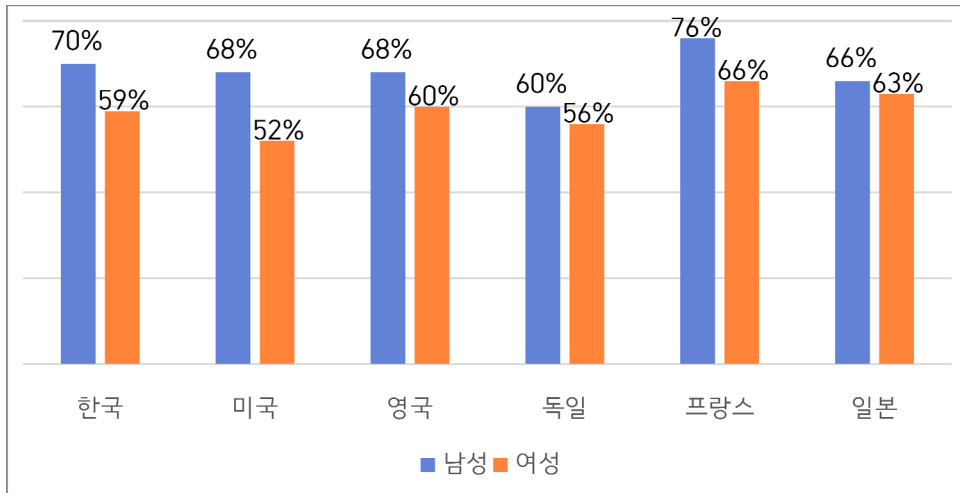
2. '장애인체육육성' 단위사업 중 '장애인생활체육지원' 세부사업 예산을 포함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4. 주요국의 생활체육정책

-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스포츠 강국은 생활체육을 사회·의료 비용을 절감하는 '적극적 복지' 개념으로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시행 중
 - 특히,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서로 연계하는 체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전문체육 측면에서도 두터운 선수층을 육성하는 기반이 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18세 이상 국민 중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22년 기준)은 한국 남성 70%, 여성 59%, 미국 남성 68%, 여성 52% 등으로 확인되어 한국이 낮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임

[2022년도 세계 주요국 생활체육 참여율 비교]



- 주: 1. 세계 각국의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등 모두 같은 요건을 적용하였음
 2. 각국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국가 간 표준화를 위하여 전체 18세 이상의 국민(100%)에서 '신체 운동이 부족한 자'의 비율(2)을 뺀 값을 적용함.
 자료: WHO, "Global status report on physical activity 2022 - country profiles", 2022.
 10.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Ⅲ. 주요 쟁점 분석

1. 총괄 분석

가. 재정투입 및 성과분석

- '생활체육 참여율' 성과지표는 사업에 투입된 재정 규모보다는 코로나-19 등 외 부적 요인에 따라 증감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3)도 외부요인에 따라 증감하는 측면이 있지만 비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편차가 적은 편

- 2) '신체 운동이 부족한 자'는 "한 주당 ① 중강도 유산소 운동시간이 150분보다 적거나 ② 고강도 유산소 운동시간이 75분보다 적거나 ③ ①·②와 동등한 조합으로 중강도·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실시하지 않는 자"로 정의함
- 3) 최근 1년간 재활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1주일에 2회 이상(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자로,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 결과보고서", 2023. 12.는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라고도 함

-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는 재정을 투입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지속 상승 중

[생활체육 육성사업 관련 재정 투입 규모 및 성과지표 결과 현황('17~'23년)]

(단위: 백만원)

구분		'17	'18	'19	'20	'21	'22	'23
생활체육 참여율(%)	재정투입	387,700	372,098	554,864	650,206	790,729	650,815	611,303
	성과지표	59	62	67	60	61	61	62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재정투입	13,045	15,436	20,015	21,362	26,192	27,254	27,736
	성과지표	20	24	25	24	20	27	34
생활체육 시설만족도 (점)	재정투입	179,753	138,513	299,419	375,002	339,288	273,089	238,683
	성과지표	81.9	82.4	83.1	84.9	86.4	88.3	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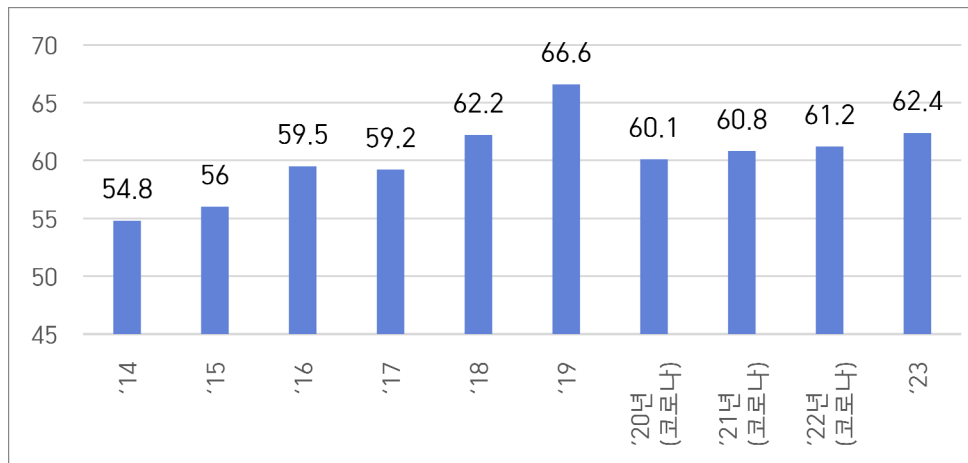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성과계획 및 성과지표 분석

-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율'의 2024년도 목표치는 64.0%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더딘 참여율 회복세 등을 고려하면 비교적 적극적인 수준임

[생활체육 참여율(2014년~2023년)]

(단위: %)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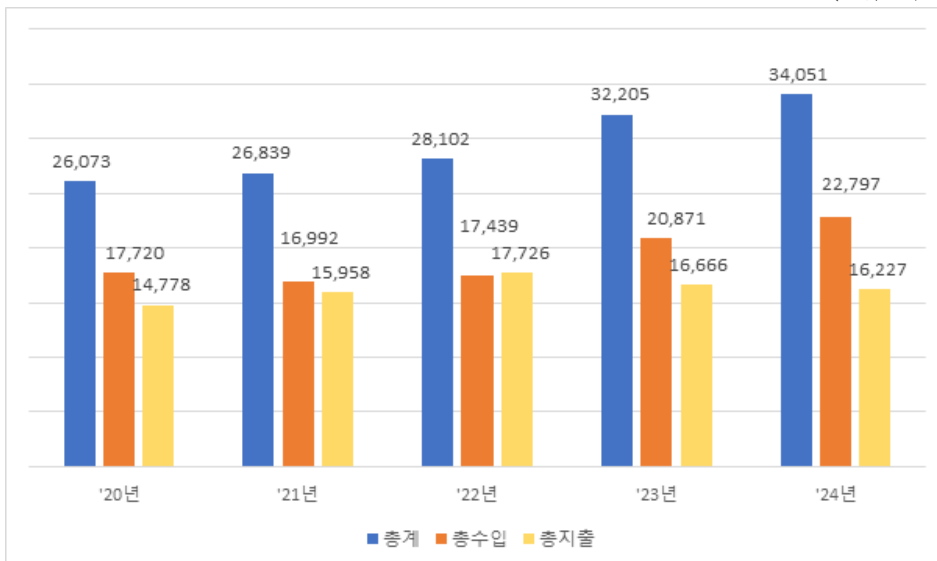
- 다만,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성과지표의 경우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지금보다 세밀하게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 분석

- 최근 5년간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과 지출 규모를 비교한 결과, 수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운용상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 중 일부('23년 1천억원)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연례적으로 전출되는 사례도 있음

[최근 5년간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 규모]

(단위: 억원)



- 주: 1. 총계: 기금의 자체 수입, 정부 내부수입, 여유자금 회수 등 수입의 총계
 2. 총수입: 기금의 자체 수입(잡수입, 경상 이전수입, 민간 용자금 회수 등의 합계)
 3. 총지출: 기금의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의 합계
 4. 각 연도 당초 계획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 생활체육 육성사업 운영 관련 쟁점

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분석

- 저소득층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내역사업⁴⁾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에게 일정 금액의 스포츠강좌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지원 대상자의 스포츠 참여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연도별 스포츠강좌수강료 지원 인원 및 지원금액(2020년~2024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지원인원(명)	51,496	60,804	72,778	92,028	-
월 지원금액(만원)	8	8	8.5	9.5	10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첫째, 저소득층의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사용료가 저렴한 공공체육시설을 보다 많이 활용하여 스포츠강좌를 개설하도록 유도할 필요
 -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때 수반되는 추가 비용을 고려하면,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개설된 스포츠강좌를 수강하는 것이 보다 저렴할 수 있음
 - 하지만 '23년말 기준 공공체육시설 중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시설은 전체 시설(3만 5,941개)의 약 3.3%(1,200개)⁵⁾에 불과
 - 이에 각 지자체는 사업자가 유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스포츠강좌를 보다 많이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독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스포츠강좌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난 5년 간(2019~2023) 유·청소년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하여 수강한 상위 다섯 종목은 태권도 54.6%, 합기도 7.8%, 복싱 3.6%, 헬스 2.0% 순

4)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세부사업’에는 비장애인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내역사업’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내역사업’이 있음

5) 문체부 제출자료에 따름

- 해당 종목은 대부분 고가의 스포츠 용구가 필요하지 않거나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적거나 없는 종목임
- 저소득층이 보다 다양한 종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다양화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

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사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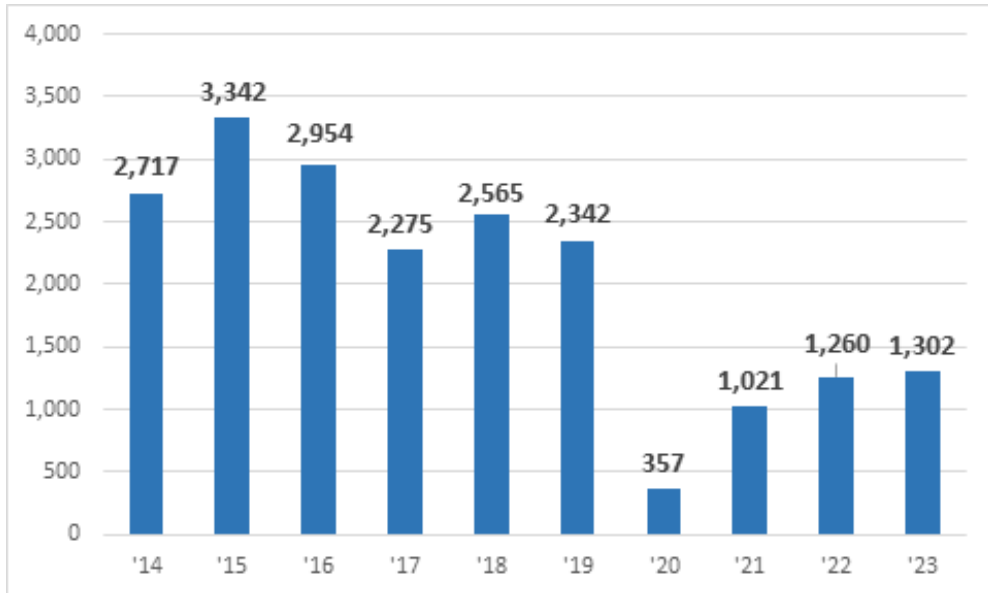
- 동 사업은 전국의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정규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방과 후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도하게 하는 등 초등학교 체육을 육성하고자 함
- 스포츠강사의 감소로 초등학교 체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스포츠강사가 감소하는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 스포츠강사는 2015년(2,408명)부터 2023년(1,657명)까지 지속 감소

다.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분석

- 동 사업은 토요일 휴업일에 초·중·고등학생의 스포츠활동과 여가 선용 등을 지원함
- 첫째, 사업 규모의 축소 추이를 고려하여 문체부의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교육부(방과후학교), 여성가족부(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등 유사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시행할 필요
 - 주말체육프로그램 수업 참여자의 누적 출석수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코로나-19 기간에는 그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되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된 현재까지 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주말체육프로그램 수업 누적 출석수 변동추이]

(단위: 천명)



주: 1. 누적 출석수란 1명의 참여자가 1회 이상 출석한 수업(학교안과 학교밖의 주말체육 프로그램 수업을 모두 포함)을 모두 합산한 것을 말함.

2. 2014~2020년도는 누적 참여자 수 기준으로만 실적조사가 이루어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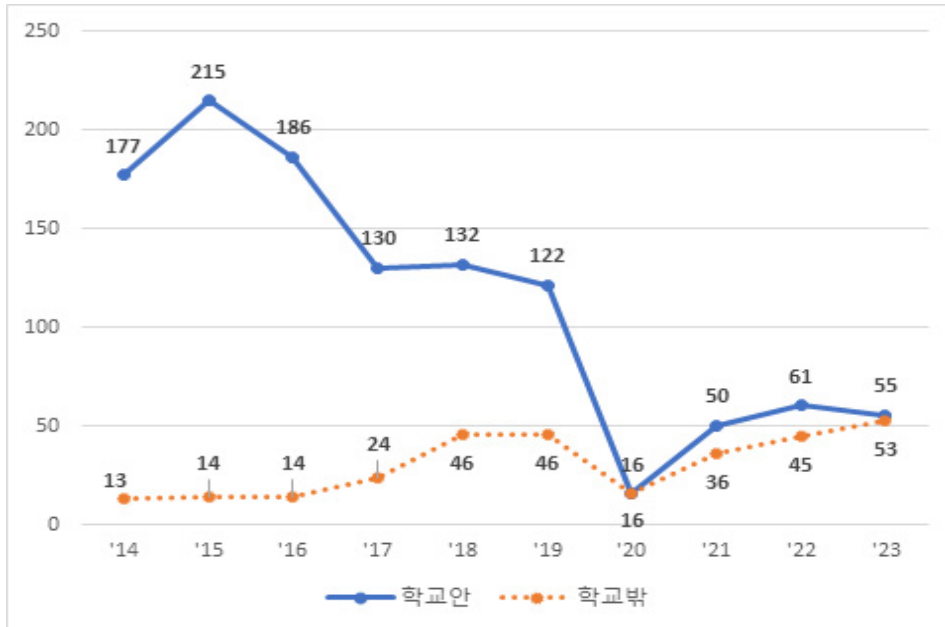
자료: 대한체육회 관리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2022 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에 따르면 사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평가됨

□ 둘째, 교내·외로 구분 시 교내 프로그램이 지속 감소 추세인데(’15년 21.5만건→’23년 5.5만건), 교내와 교외에 개설된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내에 다양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최근 10년간 주말체육프로그램 수업 개수 증감현황]

(단위: 천개)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교내 프로그램이 감소한 것은 학교시설의 사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에 한계가 있고, 주말에 학교를 개방하여 체육수업을 개설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임
- 다만, 교외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 확보나 체육시설로의 이동 문제가 있고, 방과후학교 등 유관 프로그램과 연계가 어려운 측면을 종합 검토할 필요

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⁶⁾ 분석

- 동 사업은 지자체별 생활체육 현장에 생활체육지도자를 고정 배치하여, 국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보조하고자 함
- 첫째,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비중이 매우 적은 수준으로 확대 방안 검토가 필요함

6)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 유소년의 체육 지도가 정규 수업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만 가능하고, 유소년의 특성상 체육 지도가 성인에 비하여 어려운 측면이 있어 유소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정원이 타 지도자에 비하여 매우 적은 수준
 - '23년 기준 전체 정원 2,800명의 1%인 28명(일반 생활체육지도자는 1,580명으로 56.4%,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1,192명으로 42.6%)
 - 2023년 기준 10대의 생활체육 참여율(47.9%)이 전체 참여율(62.4%)보다 낮은 점, 유소년기의 '스포츠 리터러시(Sports Literacy)'⁷⁾ 함양의 필요성, 공공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경우 사교육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확대 검토
 -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 지도를 일반체육지도자가 대신해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두 지도자 간 지원 자격요건이나 시험과목 등이 상이하여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기 어려움
- 둘째, 생활체육 참여자 현황, 수도권·비수도권 지역적 안배 등을 고려하여 체육지도자 배치 정원의 재검토가 필요함
- '23년도 생활체육지도자는 대체적으로 지자체별 생활체육 참여자 수를 고려해 배치되고 있으나, 생활체육지도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도 일부 존재
 - 생활체육지도자 1인당 생활체육 참여자 수가 일부 지역(울산 10,476명, 제주 7,548명)은 전국 평균(5,516명)을 크게 상회
 - 또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고 체육시설 인프라가 수도권 외 지역보다 더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역별 안배도 검토할 필요

마. 스포츠클럽 육성사업⁸⁾ 분석

- 동 사업은 다양한 연령·계층의 지역주민이 스포츠 종목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중심의 선진형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자 함
- 「스포츠클럽법」 제2조는 '스포츠클럽'을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후 법정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정의

7) '스포츠리터러시'란 스포츠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잘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자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8)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 첫째, 수혜자인 지자체나 스포츠클럽도 일부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등 단계적인 개선이 필요
 -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4년 현재까지 사업 방식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함
- 둘째, 과거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클럽 중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약 90%에 이르므로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스포츠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발굴·지정할 필요가 있음
 - '21년 「스포츠클럽법」 제정 이후 운영비 지원 방식(공공스포츠클럽)에서, 공익 프로그램 공모 방식(지정스포츠클럽)으로 변화됨
 - '23년 기준 107개의 지정스포츠클럽 중 기존에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지원받았던 경우가 96개(89.7%)

[공공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의 차이]

구분	공공스포츠클럽	지정스포츠클럽
목적	-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주민대상 지도자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스포츠클럽을 선정 후 운영비를 지원하여 육성함	- 민간에서 자율로 추진하기 어려운 공익 목적 사업(취약계층 프로그램 등)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스포츠클럽을 지정하여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지원 근거	-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주)}	- 「스포츠클럽법」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지원 형태	- 스포츠클럽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을 위한 운영비 지원	- 적정 인력·시설을 갖춘 클럽을 지정하여 공익목적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지원금	- 5년간 4~9억원(지원내용: 사무국장, 지도자 등 인건비, 클럽 관리비 등) ※ 대도시형 9억, 중소도시형 6억, 학교연계형(한중목형) 4억	- 1개 프로그램당 2,500만원(지원내용: 프로그램 운영비) ※ 연1회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지원하며, 클럽당 최대 4개까지 지원
선정 현황	- '13년~'21년까지 총 236개 선정('23년말 현재 222개소 운영 중) ※ 14개 클럽 취소·운영종료	- '22년~'23년 총 107개 지정('23년말 현재 106개소 운영 중) ※ 1개 클럽 운영종료

주: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는 「스포츠클럽법」(2022.6.16. 시행, 법률 제18252호)이 제정·시행되면서 삭제·정비 되었음

자료: 문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셋째, 지정스포츠클럽이 수행하는 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 등 ‘기초 및 비인기 종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정스포츠클럽은 기존 공공스포츠클럽과 달리 기초 및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는 스포츠클럽을 지정·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함
 - 그러나 실제 기초·비인기 종목 비중이 20%대 수준으로 기존 공공스포츠클럽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지원 필요

[공공·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기초·비인기 스포츠 종목 현황(2023년말 기준)]

구분	클럽 수 (A)	기초 및 비인기 종목을 운영하는 클럽 수(B)	기초 및 비인기 종목을 운영하는 클럽의 비율(B/A)
공공스포츠클럽	222개소	48개소	21.6%
지정스포츠클럽	106개소	28개소	26.4%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

3. 생활체육시설 확충·운영 관련 쟁점

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분석

- 동 사업은 공공체육시설(‘22년 기준 35,941개) 개·보수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

[공공체육시설 현황(‘22년말 기준)]

(단위: 개소)

체육관			수영 장	간이 운동장 ¹⁾	게이트 볼장	축구장	테니스 장	기타	계
생활체육	구기종목	투기종목							
765	524	48	512	25,983	1,968	1,109	873	4,159	35,941

주: 1) 마을체육시설 등을 포함함.

자료: 문체부 홈페이지(<https://www.mcst.go.kr/kor/main.jsp>)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첫째, 시설의 성격 별로 개보수 지원규정의 차등화 방안 검토 필요
 - 공공체육시설 중 수영장 시설의 경우 빠른 노후화, 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나 장

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 등으로 타 체육시설보다 개보수 비용이 많이 소요 되는 측면이 있음

-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개보수 지원 비율을 규정하고 있어 차등화 방안 검토 필요
 -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 지원비율 상한
: 노후 시설 30%, 안전 관련 50%, 장애인 편의시설 70%
- 둘째, 지자체는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료의 현실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22년도 기준 사용료 부과가 가능한 시설(간이운동장 제외) 9,958개 중 28.8%인 2,868개에서 사용료 징수 중

나.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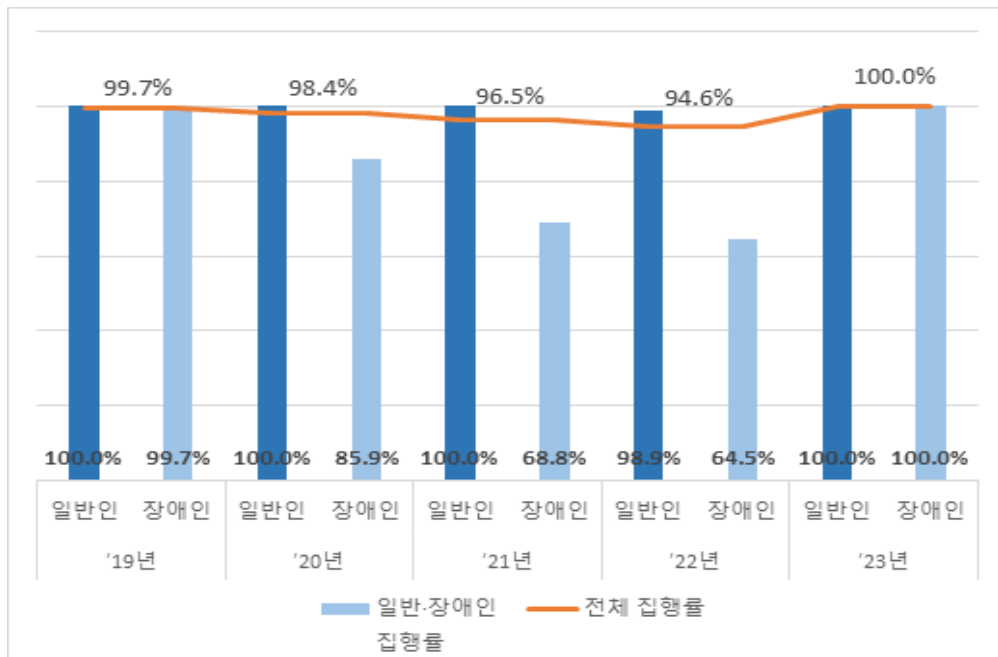
- 동 사업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과 밀착된 근거리에 수영장·체육관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23년 기준 생활밀착형(일반형) 151개소, 생활밀착형(장애인형) 89개소, 근린생활형(소규모체육관형) 238개소 등 총 478개소가 건립됨
- 첫째, 국민체육센터 건립 보조금은 센터의 유형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 중인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차등보조율' 규정을 준용한 차등 지원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일반형 30억원, 장애인형 30~40억원, 소규모 체육관형 10억원 등
- 둘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본격적인 개시('19년), '생활SOC 3개년 계획('20~'22)' 등으로 센터의 건립지원이 급격히 증가(국고지원 '12년 548억원 → '22년 2,026억원)함에 따라 지방비도 연동되어 증가하였으므로 향후 정부는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역량을 고려하여 사업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4.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관련 쟁점

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⁹⁾ 분석

- 동 사업은 장애인(만 5세~69세)에게 일정 금액의 스포츠강좌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지원 대상자의 스포츠 참여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첫째, 동 사업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세부사업이 아닌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세부사업으로 이관함으로써 장애인 생활체육에 집중하여 성과관리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의 예산 비중 자체가 낮기 때문에 집행률이 부진한 연도(’20-’22년)에도 세부사업 수준에서 비장애인의 집행률과 함께 반영되는 경우 구체적인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비장애인, 장애인 및 전체 집행률 비교(2019년~2023년)]



9)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 둘째,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선정, 카드발급, 강좌신청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실태조사 결과(2022년)에 따르면 장애인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시 도움을 받은 경우로 ‘온라인 등록 및 결제 방법을 잘 몰라서’가 49.6%, ‘결제 방법이 어려워서’가 37.6% 등으로 나타남
- 셋째,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으므로 장애인이 스포츠 강좌 이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나 장애인 스포츠 활동의 특수성 등을 종합 분석·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년간(2019-2023) 스포츠강좌 이용권 선정자 43,037명 중 73.0%인 31,466명만 실제 이용권을 사용하고 있음
 - 장애인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 유형에 따라 수행이 가능한 운동의 종류, 편의시설, 이동 수단,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사 등 제반 사항이나 장애인 스포츠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운동 시 필요사항(문체부, 2023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보고서)
 - 비용지원 37.5%, 편의시설 16.0%, 프로그램 13.9%, 용품·장비 12.0%, 체육지도 9.2%, 보조인력 7.1%, 교통지원 3.0% 등

나.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사업 분석

- 동 사업은 장애인들의 체력측정, 운동처방 등을 통하여 장애인 체력증진과 생활체육의 참여 계기를 마련하는 ‘장애인체력인증센터(전국 57개)’의 인건비(운동관리사·체력측정사 등)와 경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수행
- 첫째, 장애인 재활치료와 생활체육을 서로 연계하여 장애인의 체력측정, 운동처방 등을 수행하고, 체력측정항목과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 체력인증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재활체육 중심의 보건복지부와 생활체육 중심의 문체부 간 협력 필요

- 둘째, 장애인 체력인증시설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체력인증센터’ 근무자가 출장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장비 이동의 난점, 측정 장비 파손 등이 발생하므로 개선방안이 필요함
 - 장애 유형 중 지체장애인, 뇌병변 등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22년 기준 전체의 53.8%)은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직접 방문할 수 없음
 - '22년 기준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이용자 16,405명 중 출장자가 59.4%인 9,738명으로 방문자를 상회
- 셋째, 장애인체력인증시설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전국 각 지역 보건 의료기관에 체력측정 장비를 비치하거나 체력측정 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 보건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체제 구축을 검토할 필요
 - ‘중앙장애인 보건 의료센터’가 수행하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각 지역의 보건소 등 지역 보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건강 사업을 위하여 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장애인의 신체를 측정하는 도구 등은 지역 보건 의료기관의 장비를 활용하거나, 장애인체력인증센터 근무자가 출장 시 필요한 측정 장비를 일부 지역 보건 의료기관에 비치하는 등 협업 체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분석

- 동 사업은 ‘반다비 체육센터’의 건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27년까지 150개 설치를 목표로 함
 - 반다비 체육센터는 ‘생활밀착형(장애인형) 체육시설’로서,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 가능
 - '23년 기준 89개소가 설치되었거나 건립 중
- 첫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공모가 감소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목표 수준에 맞추어 지속적인 설립을 추진할 필요

- 선정 추이(개): 30('19년)→23('20년)→13('21년)→11('22년)→13('23년)
 - 코로나 이후 건축자재비 상승과 높은 부지 매입비용, 장애인 편의·안전시설 설치로 인한 비용증가 등 지방 재정확보의 어려움이 공모 감소 원인으로 보임
 - 또한 건립 후에도 장애인 시설의 특성상 장애인 입장료를 감면할 수밖에 없어 자체 수입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도 요인으로 보임
- 둘째, 동 센터를 당초 목적에 따라 운영하기 위해 지자체가 관련 조례나 지침 등의 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센터 건립·지원 공모 초기에는 체육센터의 운영 주체,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자체 운영조직·인력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이 운영되어 지자체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
 - 현재는 문체부에서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어 이를 활용 가능
- 셋째, 센터 설계단계부터 장애인과 장애인체육 전문가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통해 장애인의 편의·안전시설을 설치할 필요
- 일부 센터의 경우 완공 이후 운영과정에서 편의시설이나 운동시설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 있음
- 넷째, 장애인 입장료 감면으로 인한 체육시설 운영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체육센터를 건립한 이후 장애인을 우선하지 않는 운영 등은 지양될 필요
- 다섯째, 센터를 건립·배치할 때는 각 지역 반다비체육센터의 개소수와 1개소당 이용 가능한 장애인 수, 반다비체육센터 외 공공체육시설 확보현황 및 동 체육센터의 장애인체육 이용수요 우선 반영 등을 종합 고려할 필요

IV. 결론 및 시사점

□ 총괄 분석

- 생활체육 육성사업과 관련된 재정투입의 규모 외에도 외부적인 요인이나 재정 투입 기간 등에 따라 생활체육 참여율, 체육시설 이용자 만족도 등의 성과가 변동하는 측면이 있음
- ‘생활체육 참여율’과 관련된 성과목표는 ’24년 64.0%로 비교적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으나, ‘장애인 생활체육’의 성과지표는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년간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과 지출 규모를 비교한 결과 수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다한 측면이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 중 일부가 같은 문체부 소관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연례적으로 전출되는 사례도 있음

□ 생활체육 운영제도 관련 분석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공공체육시설에서 강좌를 추가로 개설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프로그램이 일부 종목에 편중된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지속적인 감소는 초등학교 체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을 타 부처의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교내·외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의 정원 비중을 보다 확대하고, 지자체별 생활체육지도자 정원을 배치할 때 생활체육 참여자 현황, 수도권·비수도권 간 안배 등을 고려할 필요
-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결과(지자체, 클럽 부담분 반영) 조치, 보다 다양한 ‘지정스포츠클럽’을 발굴·지정할 필요, 비인기 종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

□ 생활체육시설 확충·운영 관련 분석

- 일부 공공체육시설은 빠른 노후화, 안전상 문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으로 개보수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지만, 관련 법령에서는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각 지자체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부족한 개보수 비용 등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수행 시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 사업을 수행할 때는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역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속도를 조절할 필요

□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관련 분석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내역사업을 비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과 분리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사업 내에 편성을 검토하고, 동 강좌의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며, 장애인이 스포츠 강좌 이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나 장애인 스포츠 활동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이용률 제고 방안 모색
- ‘장애인체력인증 제도’는 복지부 중심 재활치료와 문체부 중심 장애인 생활체육과의 상호 연계, 체력측정항목과 다양한 운동프로그램 개발, 출장 서비스의 난점 개선, 각 지역 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체력인증 서비스 구축 등이 필요
-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모의 감소 원인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건립·지원, 지자체의 동 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례 등 제정, 설계단계부터 장애인 전문가의 참여, 동 체육센터를 건립한 후 장애인 우선 운영방식의 변경 지양, 각 지역의 장애인 수 및 기존 공공체육시설 등을 고려한 체육센터의 건립·배치 등이 필요

□ 시사점 및 종합 제언

- 앞으로 생활체육정책을 시행할 때는 생활체육 운영제도 개선, 체육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등 양적인 성장은 물론, 전 국민이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 복지함양, 건전한 여가선용 등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
- 수도권 외 지역의 주민이나 장애인·어르신·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체육활동이 필요한 학생 등 사각지대 없이 온 국민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

1

분석의 배경과 목적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생활체육의 목적은 개인의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발달을 촉진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의 양양을 추구하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의 생활체육은 건강 유지·증진, 사회적 지지 강화,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등을 달성하게 하고 나아가 사회적 참여와 요구 충족, 복지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¹⁾

세계 주요 국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와 의료비 절감, 삶의 질 제고 등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인구 고령화,²⁾ 서구적 생활 습관으로 인한 질환 증가,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활동 시간 증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 등 국민건강과 복지증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사람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처럼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국민통합위원회’³⁾는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제고, 학생의 운동 부족 해소,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두 함께 누리는 스포츠’ 정책 제안⁴⁾을 발표하였다. 동 제안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코로나19 등을 겪으면서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2022년 기준 생활체육 참여율(주 1회, 1회 30분

1)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https://www.koreanpc.kr/ibuilder.do?menu_idx=38>

2) 통계청, “2023년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 2023. 9. 26.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950만명(전체 인구의 18.4%)으로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 이상)에 근접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3) 국민통합을 위한 사향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서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653호, 2022. 5. 30. 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4) 국민통합위원회, “모두 함께 누리는 스포츠 정책 제안”, 보도자료, 2023. 2. 27.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 참여)이 62%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국민, 학생 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첫째 유아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주기 동안 전 국민의 체력측정과 운동처방 서비스를 구축하고, 둘째 학교체육 활동에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 경험을 제공하며, 셋째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평생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초등체육 과목 확대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그 밖에도 '학생들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유도,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 체육교육 기반 확대'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

한편, '국민체력100 참여 의료비 절감 효과연구'⁵⁾에 따르면, '국민체력100'⁶⁾의 '과학적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 시행'에 참여한 집단과 이를 참여하지 않은 집단 간의 연간 의료비를 서로 비교⁷⁾하였을 때, 참여한 집단은 연간 평균 7만 6,768원의 의료비 지출이 있었고, 비참여집단은 참여집단보다 약 40만원이 많은 평균 47만 9,101원의 의료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민체력100' 참여자를 약 30만 명(2019년 기준)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연간 1,200여 억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였다.

의료보험제도가 질병이 발생한 후 신체적 건강회복을 지원하는 소극적 복지정책인 반면, 생활체육 육성정책은 사전에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여 의료비를 절감하는 적극적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육성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정(1962년)과 '국민생활체육회' 설립(1991년)을 통하여 시작한 '생활체육 육성'은 학교체육이나 전문체육⁸⁾과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였고, 2016년에는 전문체육을 담당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국민생활체

5)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국민체력100 참여 의료비 절감 효과연구", 2021.

6) '국민체력100'이란 개인의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으로 측정·평가하여 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대국민 체육복지 서비스를 말함.

7)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국민체력100 참여자 중 자료 이용에 동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의료비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결과를 도출함(비교대상: 국민체력 100 참여자 1,325명, 비참여집단 2,650명을 무작위로 선택·비교)

8) 전문체육: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2호)으로 흔히 '엘리트스포츠'(elite sports)'라고 부르고 있음. 여기서 '엘리트스포츠'란 '신체능력이 뛰어난 소수의 선수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이루어지는 스포츠 분야'를 말함.

육회'가 서로 통합되었으며,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생활체육정책이 큰 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과거의 생활체육정책은 생활체육 참여자 수를 확대하는 양적인 성장을 주요 목표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생활체육의 다양성과 함께 질적인 개선 추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현재까지 시행되어왔던 생활체육정책의 사회적 배경과 정책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생활체육 육성사업의 재정 규모 변동, 예산 편성·집행의 적절성, 사업성과, 법령·제도 등을 분석·평가하고, 향후 생활체육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생애 주기별 생활체육 참여의 필요성]



자료: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https://www.sports.or.kr/index.do>>

본 보고서는 그동안 정부가 시행해온 ‘생활체육 육성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였으며, ‘장애인의 생활체육 육성사업’의 평가 부문을 별도로 추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생활체육 육성사업’과 관련된 법령상 문제점, 사업의 계획과 시행에 대한 합목적성, 사업추진에 투입된 재정의 효율성 등 전반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평가·분석하고자 하였다.

생활체육 육성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의 구성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황 부문은 우리나라 생활체육 육성사업의 개요, 생활체육 육성사업 관련 법률과 상위계획, 예·결산 현황을 각각 정리하고, 세계 주요국의 생활체육 육성 정책, 생활체육 참여율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주요 쟁점 분석 부문의 구성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괄 분석 부문에서는 생활체육 육성사업과 관련된 ① 투입된 재정 대비 생활체육 참여율이나 시설이용자 만족도와의 관계 분석 ②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율’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평가, 장애인 성과지표에 대한 다양성 확대 필요 ③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수입 과다 문제 등을 각각 분석·평가하였다.

둘째, 생활체육 육성사업 운영 관련 쟁점 사항으로는 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의 유희 공공체육시설 활용 확대 및 강좌프로그램 제공의 다양성 제고 ②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감소 및 주말체육프로그램 참여자 감소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③ 생활체육지도자 정원배치 시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정원확대 필요 및 지역적 안배 고려 ④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사후 조치 미흡, 지정스포츠클럽의 다양성 확대 등 운영상 개선점을 각각 분석·평가하였다.

셋째, 생활체육시설 확충·운영 관련 쟁점 사항으로는 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관련 법령, 개보수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의 현실화 ② 지방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지방비 부담을 고려한 사업속도 조절 필요 등을 각각 분석·평가하였다.

넷째,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관련 쟁점 사항으로는 ①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분류에 대한 문제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절차에 대한 간소화 필요 ② 장애인체력인증 사업의 장애인 재활치료와 생활체육의 연계 수행, 장애인 체력측정 방식의 다양화, 출장 서비스 제도 개선 ③ 반다비체육센터 설립 추이에 대한 분석과 지속적인 건립·지원의 필요성, 동 체육센터 운영과 관련된 별도의 조례 제정 필요, 반다비체육센터 건립·배치 시 공공체육시설의 유무, 장애 인구수와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한 계획 수립의 필요성 등을 각각 분석·평가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각 주요 쟁점 부문에서 분석한 내용과 개선방안을 각각 정리하고, 향후 생활체육 육성사업과 장애인 생활체육이 나아갈 방향 등 시사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제안하였다.

본 보고서의 사안별 현황이나 정책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직접 문체부를 방문하여 자료수집 및 담당자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고, 생활체육 육성사업을 수행·연구하는 대한체육회,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전문가 면담을 통한 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그 밖에도 국내외 각종 문헌과 통계자료, 언론 기사 등을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생활체육 육성사업 평가의 구성과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분석 내용
I. 개요	○ 분석의 배경과 목적 ○ 분석의 구성과 방법
II. 현황	○ 생활체육 육성사업 개요, 생활체육 육성사업 관련 법률과 상위계획, 예·결산 현황 ○ 주요국의 생활체육 육성정책, 주요국의 생활체육 참여율
III. 주요 쟁점 분석	○ 총괄 분석 - 재정투입 및 성과 분석 (재정투입과 생활체육 참여율, 시설이용자 만족도 관계 등) - 성과계획 및 성과지표 분석 -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 분석
	○ 생활체육 육성사업 운영 관련 쟁점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분석 - 학교체육 육성 분석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지원) - 생활체육지도자 정원배치 분석 - 스포츠클럽 육성사업 분석
	○ 생활체육시설 확충·운영 관련 쟁점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분석 -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 분석
	○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관련 쟁점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분석 -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분석 -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 분석
IV. 결론 및 시사점	○ 주요 쟁점 분석에 대한 결론 요약 ○ 종합 제언

1

생활체육 육성사업 개요

가. 사업의 구성

2023회계연도 기준 생활체육 육성사업은 ‘생활체육육성’, ‘장애인체육육성’ 등 2개의 프로그램과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시설지원’, ‘학교체육 육성’, ‘장애인 체육육성’ 등 4개의 단위사업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14개의 세부사업과 60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체육 육성’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올바른 운동 방법의 지속적인 전개와 캠페인 실시, 접근성이 양호한 주민 생활권역에 다양한 형태의 생활체육시설을 지속 확충, 체육시설안전시스템 구축 및 안전한 스포츠 환경 구축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장애인체육육성’ 프로그램 중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부문과 관련된 주요 목표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 교실과 프로그램, 지도자 배치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생활체육육성’ 프로그램에는 ‘생활체육활성화’, ‘생활체육시설지원’, ‘학교 체육육성’ 등 3개의 단위사업이 있으며, 동 사업의 세부사업에는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초등학교스포츠강사 배치지원’ 등 13개가 있다. 그리고 세부사업의 최하위 단위인 내역사업은 ‘체육지도자 양성’,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총 54개의 사업이 있다.

장애인 생활체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사업은 ‘장애인체육육성’이 있으며, 동 프로그램에는 같은 명칭인 ‘장애인체육육성’ 단위사업 1개와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⁹⁾

9) ‘장애인체육육성’ 단위사업에는 ‘장애인체육단체운영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원’,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체육지원’ 등 3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3개의 세부사업 중 ‘장애인생활체육지원’ 1개만 평가·분석하였음

세부사업 1개가 있다. 그리고 동 사업의 최하위 단위인 내역사업은 ‘장애인 생활체육활동지원’,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등 총 6개의 사업이 있다.

[생활체육 육성사업 내역(2023회계연도 기준)]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생활체육 육성 (54개)	생활체육 활성화 (32개)	생활체육활성화 지원(3개)	체육지도자 양성, 생활체육활성화 정책 운영 등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3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12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스포츠클럽 육성, 생활체육동호회리그 지원, 스포츠클럽디비전, 학교 체육시설개방지원 등
		국민체력인증(3개)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등
		체육·문화예술사업 지원(6개)	학교체육 활성화, 학교·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 등
		안전한 스포츠활동지원(2개)	안전한 스포츠 환경 구축 등
		스포츠 종목 보급 (3개)	스포츠 종목 보급, 충주 전통 무예 진흥시설 건립 등
	생활체육 시설지원 (20개)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3개)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지원 등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건립지원(1개)	소규모체육관 건립지원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지원(15개)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 구수산 체육센터 건립, 대구 제2빙상장 건립 등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1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학교체육 육성 (2개)	초등학교스포츠 강사 배치지원(1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신나는주말체육 프로그램지원(1개)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지원 운영지원
장애인 체육육성 (6개)	장애인 체육육성 (6개)	장애인 생활체육지원 (6개)	장애인 생활체육활동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관리,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등

주: 괄호 안의 숫자는 내역사업의 개수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사업 추진체계

생활체육 육성사업은 대부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나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 사업비 일부를 보조·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계획 수립(문체부, 보조기관) → 수요조사 → 보조금 신청(보조사업자) → 교부 결정(문체부) → 사업수행 → 정산·평가의 순으로 진행된다.

지자체가 생활체육 육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매칭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데, 해당 사업들은 먼저 정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하면 나머지 사업비용은 지자체에서 매칭 비율에 따라 마련하는 방식으로 조달된다.

[생활체육 육성사업 사업추진체계]

세부사업명	시행방법	시행주체	피보조기관	보조율 또는 정액 보조금	사업 수혜자
생활체육 활성화지원	직접수행 보조	문체부, 국민 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체육 진흥공단, 대한체육회	· 보조율 100%	전 국민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응시자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직접수행	문체부	해당 없음	해당없음	장애인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지원	보조	지자체	지자체	· 정액 보조: 10억원	전 국민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	지자체 보조, 직접수행	국민체육진흥 공단, 17개 광역시·도	지자체 보조, 국민체육 진흥공단, 대한장애인 체육회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지자체 보조 70%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지자체 보조 70%,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100%	수급 가구 차상위 계층의 유·청소년 (만 5~18세) 장애인 (만 5~69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보조	대한체육회, 17개 광역 시·도 등	대한체육회, 17개 광역 시·도 등	· 스포츠클럽육성등: 대한체 육회 등 보조 100% ·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 원 등: 지자체 보조 50%	전 국민
국민체력 인증	민간· 지자체 경상보조	국민체육 진흥공단, 지자체	국민체육 진흥공단, 지자체	·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등 : 국민체육진흥공단 100%) ·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지 자체 보조(80%)	전 국민

세부사업명	시행방법	시행주체	피보조기관	보조율 또는 정액 보조금	사업 수혜자
체육·문화 예술사업의 지원	민간경상 보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여러 체육 단체, 문화예 술단체	체육단체, 문화예술단 체 등	· 체육단체, 문화예술단체 민간경상 보조(100%)	전 국민
안전한 스포츠 활동지원	직접수행 민간보조	스포츠안전 재단, 국민 체육진흥공단	스포츠안전 재단, 국민 체육진흥공단	· 정액보조: 스포츠안전재단 등 '24년 기준 4,203백 만원	체육시설업자, 전 국민
스포츠 종목보급	지자체 보조, 민간보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대 한씨름협회, 대한바둑협 회, 유네스코 국제무예 센터 등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 씨름협회, 유네스코 국제무예 센터 등	· 대한씨름협회, 대한체육회 등 스포츠 종목 보급 보조 100% ·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운영 보조 40%	전 국민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지자체 자본보조	지자체	지자체	· 정액보조: 지자체 자본보 조, '24년 기준 84,787 백만원	지자체, 지역주 민, 학생 등
기초생활 체육 저변 확산지원	지자체 자본보조	지자체	지자체	· 지자체보조 30%	전 국민
공공체육 시설 개보수 지원	지자체 자본보조	지자체	지자체	· 노후시설 개보수 30% · 긴급·안전 관련 시설 개 보수 50%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70%	전 국민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시·도교육청	지자체	· 지자체 보조 10%	스포츠강사 및 배치학교 학생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지원	보조	대한체육회, 사·도(시·군 구)체육회	대한체육회	· 보조 100%	전국 초·중·고 등학생 및 동 연령대 청소년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보조	대한장애인 체육회, 지자체	대한장애인 체육회, 지자체	· 장애인 생활체육활동지원 등 정액보조; '24년 기 준 12,924백만원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관리(지자체 보조 50%)	장애인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관련 법률

(1)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육성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스포츠기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우리나라 체육정책은 1960년대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제정과 함께 정부의 주도하에 시행되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며, 체육의 영역을 학교와 교육의 영역만이 아닌 국민 생활의 영역까지 확대·발전시키고, 체육 진흥을 국가와 지역의 중요한 정책 요소로서 명문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 중 생활체육 관련 조문]

제목	해당 조문
제1조(목적)	본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절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제목	해당 조문
	10.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제33조(대한체육회)	①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5의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의4.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의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8. 지역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주: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9701호, 2023.9.14., 일부개정)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law/>>

「생활체육진흥법」은 생활체육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시행과 ‘국민생활체육회’¹⁰⁾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¹¹⁾되었다.

동 법은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체육정책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10)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된 당시 국민생활체육회는 전국 17개 시·도에 약 37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연간 약 700억원의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등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현재는 대한체육회와 통합·운영되고 있음

11) 「생활체육진흥법」(법률 제13251호, 2015. 3. 27. 제정)

〔생활체육진흥법〕 주요 내용

조문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
제2조 (정의)	- 생활체육: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 - 생활체육지도자: 학교·직장·지역사회 등에서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등의 법정 자격을 취득한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자 - 생활체육종목단체: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 - 체육동호인조직: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
제3조 (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음 -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함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함.
제6조 (생활체육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생활체육의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 생활체육 진흥의 기본방향,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생활체육 활동의 안전관리, 생활체육대회 육성,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 생활체육시설의 안전·위생·방역 관리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제7조 (국민생활체육회)	- 국민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생활체육종목단체와 지역생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등을 수행함 - 국민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정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 생활체육회는 법인으로 하며, 지부·지회를 둘 수 있음

조문	주요 내용
제10조 (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체육동호인조직과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제14조 (감독)	- 국민생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함

주: 「생활체육진흥법」(법률 제19593호, 2023.8.8., 일부개정)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law/>>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 밖에 생활체육 육성사업과 관련된 법률로는 「스포츠기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이러한 법률들도 생활체육 육성과 관련된 생활스포츠, 생활체육시설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기본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중 생활체육 관련 규정

법률명	관련 조문
「스포츠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생활스포츠"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활동을 말한다. 제11조(생활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포츠지도자를 배치하거나 생활스포츠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스포츠의 대상과 영역, 제2항에 따른 스포츠지도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law/>>

(2)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장애인 생활체육’만 별도로 규정한 법률은 없지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규정과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등의 일부 장애인 생활체육과 관련된 규정을 근거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이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장애인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사항은 대부분 동법 제25조 ‘체육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그 밖에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법률로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동 법률에는 ‘장애인 체육시설’,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동호인조직 육성’,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각각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과 관련된 법률 규정]

법률명	관련 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법률명	관련 조문
「생활체육 진흥법」	제10조(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과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 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스포츠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12조(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 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을 지정하여 장애인에게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 할 수 있다.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law/>>

나. 관련 계획 및 연혁

(1) 스포츠진흥기본계획

생활체육 육성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은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3년)’ 등이 있다.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은 모든 국민이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스포츠권’ 보장을 가장 큰 목표로 하여, 「스포츠기본법」 제8조¹²⁾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 계획이다.

동 계획은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 포함·대체되어 수립된다.

동 계획의 3대 정책 방향은 ‘스포츠 참여 확대’, ‘엘리트스포츠 위상 강화’, ‘스포츠 가치 확산’ 등 3가지가 있으며, 5대 추진전략으로 ‘스포츠로 국민건강·지역활력 제고’, ‘최강의 경기력, 안정된 삶’ ‘함께 성장하는 생활-전문스포츠’ 등이 있다.

동 계획은 기존의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진흥계획을 통합한 종합계획으로, 2028년까지 국민의 스포츠 참여율 70% 도달, 스포츠강국 G7 달성, 국내 스포츠 시장의 105조원 돌파 등을 주요 목표로 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

12) 제8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차 스포츠진흥계획의 “대한민국 스포츠 비전 및 정책 방향”]

비전	“은 국민의 스포츠,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 방향	[스포츠 참여 확대]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 핵심지표: 국민 일상스포츠 참여율 70%(’28년) [엘리트스포츠 위상 강화] 국민 영웅인 엘리트 스포츠인들이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핵심지표: 스포츠강국 G7 달성(’28년) * 하계(2024)·동계(2026) 올림픽 순위 등 [스포츠 가치 확산] 건강, 공정성, 탁월성, 사회적 통합 및 교류, 스포츠 산업 등 스포츠 가치가 개인과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확산·정착 * 핵심지표: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원(’28년)
5대 추진전략	15대 핵심과제
스포츠로 국민건강지역활력 제고	1. 선진 수준의 전 국민 스포츠활동 지원 2. 스포츠로 활기를 되찾고 연대하는 지역 3. 장애인에게 장애 없는 스포츠 여건 조성
최강의 경기력, 안정된 삶	4. 토대가 튼튼한 엘리트선수 육성체계 구축 5. 상호존중 스포츠 훈련 문화와 공정스포츠 환경 조성 6. 촘촘하고 믿음직한 체육인 복지 실현
함께 성장하는 생활-전문스포츠	7. 생활-전문스포츠를 잇는 핵심고리, 5만 스포츠클럽 8. 스포츠로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만들기 9. 생활-전문스포츠를 아우르는 통합형 스포츠인재 양성
국가 신성장동력, K-스포츠	10. 스포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 구축 11. 레저·관광·콘텐츠와의 융합을 통한 신부가가치 창출 12. 스포츠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K-스포츠테크
스포츠 정신의 글로벌 리더, 대한민국	13. 세계인과 함께하는 국제 스포츠 연대의 장 14. 글로벌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 15. 자유와 연대가 스며드는 스포츠 거버넌스 확립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 2023.12.20.

참고로 우리나라 체육정책 관련 기본계획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을,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 등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체육정책 기본계획 수립 관련 법률 규정]

법률명	관련 조문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주)}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스포츠기본법」	제8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스포츠클럽법」	제5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주: 2018년 이후 국민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은 ‘2030스포츠비전(18.3.28.)’,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2023.12.20.)’ 등으로 대체하여 수립·발표되었음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law/>>

한편,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와 미래, 지방시대 등 6대 부문의 국정 목표를 수립·명시하고 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사항으로 ‘120대 국정과제’를 두고 있다.

‘생활체육 육성’ 사업은 6대 국정 목표 중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목표의 60번째 과제인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과제에 따라 정책이 시행된다. 동 과제목표에는 ‘생애주기 별 스포츠활동지원, 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으로 스포츠 저변 확대, 국가 위상에 걸맞은 전문체육 지원으로 스포츠 경쟁력 강화’ 등이 있으며, ‘스포츠 기본권 보장, 전문체육 환경 개선,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함께 목표의 기대효과로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21년, 60.8% → '27년, 69%)과 스포츠산업 시장 확대('21년, 51.5조원 → '27년, 100조원) 등을 제시하였다.

[국정과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과제 목표	○ 생애 주기별 스포츠활동지원, 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으로 스포츠 저변 확대 ○ 국가 위상에 걸맞은 전문체육 지원으로 스포츠 경쟁력 강화 ○ 스포츠 R&D 확대를 통한 스포츠산업 육성,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 국제교류 확대로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및 위상 제고
주요 내용	○ 스포츠 기본권 보장: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지원, 운동하는 국민께 혜택 제공 (스포츠 마일리지 및 소득공제)을 위한 체육시설 기반 체력인증센터 확충, 체육인이 참여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 개편 ○ 전문체육 환경 개선: 국가대표 위상 강화 및 실업팀 지원 확대 등 전문체육 육성 강화, 체육 발전 공헌에 대한 영예 제고를 위한 훈·포장 확대, 공제사업 추진 등 체육인 복지 체계 구축 ○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스포츠 중심의 지역 랜드마크 조성,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 스포츠 R&D 지원 확대를 통한 스포츠 신산업 육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체육 환경 구축 ○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제고: 글로벌 인재양성(은퇴선수 경력경로 개발), 2024 강원 청소년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e스포츠 및 태권도 등 세계에서 사랑받는 국제스포츠 종목 육성
기대 효과	○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 ('21년, 60.8% → '27년, 69%) ○ 스포츠 산업 시장 확대 ('21년, 51.5조원 → '27년, 100조원)

자료: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2022. 7.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 국민생활체육 진흥계획의 연혁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1990년대 경제발전과 국민 생활 수준 향상 등 생활체육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정부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국민 생활체육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1990년대의 경제발전과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과 함께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한편, 체육활동을 국위 선양은 물론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도시화나 산업화로 인한 심리적, 생리적 스트레스가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부각되자 사람들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삶의 보람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도 ‘국민 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호돌이 계획)’을 시작으로 1993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국민체육 진흥 5개년 계획’, 이명박 정부의 ‘문화 비전 2012 품격 있는 대한민국 계획’, 문재인 정부의 ‘2030 스포츠 비전’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반 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되었다.

[국민생활체육 진흥계획의 연혁(제6공화국~문재인 정부)]

정부명	계획명	정책과제와 목표	주요사업(추진내용)
6공화국 (1990~1992)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 (호돌이 계획)	생활체육 진흥으로 건강생활 체조 보급	○ 운동장, 체육관 등 기본 체육시설 확충 ○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국민체육센터) 확충 ○ 기본 시설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올림픽 시설을 활용 ○ 직장체육시설 개방 및 학교 체육시설의 주민시설화 등
문민 정부 (1993~1997)	제1차 국민체육 진흥5개 년계획	국민체력 증진, 여가선용 도모, 세계 10위권 경기력	○ 국민 체육활동 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지역 기본 체육시설의 확보 ○ 생활권 체육시설인 동네 체육시설, 종합체육관, 구민체육회관 등 건립 ○ 체육공원의 집중적인 설치 추진 등
국민의 정부 (1998~2002)	제2차 국민체육 진흥5개 년계획	사회건강은 생활체육에서	○ 시·군·구별 기본체육시설과 근린체육공원 조성 ○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체육활동 향유 기회 확대 ○ 시설 이용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민간 위탁 등 관리운영의 다양성 확대 등
참여 정부 (2003~2007)	제3차 국민체육 진흥5개 년계획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주민친화형 생활체육공간 확충 ○ 스포츠클럽의 체계적 육성 ○ 체육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과학적 국민체력관리시스템 구축 ○ 레저스포츠발전 방안 마련 ○ 생활체육 지도인력 양성 및 활용 등
이명박 정부 (2008~2012)	‘문화비전 2012 품격 있는 대한민국 계획’ 중 일부 ^{주)}	신나는 한국인,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기는 나라	○ 지역스포츠클럽 정착 및 활성화 ○ 체육인력 활용 제고 및 국민체력 향상 ○ 맞춤형 체육복지 구현 ○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및 활용제고 ○ 레저스포츠시설, 공간 확충 등

정부명	계획명	정책과제와 목표	주요사업(추진내용)
박근혜 정부 (2013~ 2017)	스포츠 비전 2018	손에 닿는 스포츠 '스포츠로 사회를 바꾸다'	○ 2013년 기준 - 종합형스포츠클럽 확대 - 국민체력인증제 실시 - 생활체육지도자 증원 - 작은 체육관 조성 -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 개·보수 - 저소득계층 대상 행복나눔 스포츠교실 확대
	국민생활 체육진흥 종합계획	스마일 100 '스포츠를 마음껏 일상적으로 100세까지'	○ 주1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 - '13년 43.3%에서 '17년 60%로 확대 ○ 유아기관과 스포츠활동 우수학교 인증제 도입 ○ 학교스포츠클럽 정착 및 지역스포츠클럽과 연계시스템 구축 등 ○ 찾아가는 체력관리와 생활체육교실 확대 등
문재인 정부 (2017~ 2022)	2030스 포츠비전 (국민생활 체육진흥 기본계획)	스포츠가 있는 일상, 모두가 누리는 행복	○ 생활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지원강화 ○ 생활 속 스포츠의 일상화 ○ 스포츠격차 해소를 위한 환경조성 ○ 스포츠클럽간 연계 및 리그 확산 ○ 전문적 체육지도자 양성과 지원 ○ 수요자 중심 스포츠 시설 및 정보 제공

주: 이명박 정부는 '국민생활체육 진흥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하고, '문화비전 2012 품격 있는 대한민국 계획' 중 일부로 생활체육 육성사업을 추진함.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 및 김미옥, "문재인 정부 생활SOC 정책 내용 분석 및 공공체육시설 정책에 미치는 함의", 2020. 2.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가. 일반회계

‘생활체육활성화’ 단위사업 예산은 코로나-19가 종료된 후 일부 증액되었으며, 등 예산에 대한 최근 3년간 집행률은 대체로 높은 편이다.

생활체육 육성사업 예산 중 일반회계로 편성된 단위사업은 ‘생활체육활성화’가 있다.

‘생활체육활성화’ 예산은 2021년도 17억 5,300만원이 편성된 후 2022년 16억 4,300만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23년도에는 36억 1,300만원, 2024년도에는 44억 9,1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2023년도와 2024년도 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코로나-19의 종료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응시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예산도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생활체육활성화’ 예산에 대한 집행률은 99% 내외로 대체로 높게 나타난 편이다.

[최근 4년간 생활체육활성화 단위사업 예·결산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연도	본예산	추경예산	예산현액 ¹⁾ (A)	집행액(B)	불용액(A-B)	집행률(B/A)
'21년	1,753	-	1,753	1,735	18	99.0
'22년	1,643	1,630 ²⁾	1,630	1,611	19	98.8
'23년	3,613	-	3,613	3,577	36	99.0
'24년	4,491	-	-	-	-	-

주: 1) 예산현액: 일반회계예산에 추경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을 모두 반영한 금액

2) 2022년 제2회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경상경비 일부 감액(△13백만원)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 육성사업’ 관련 예산은 2022년에 ‘생활체육활성화’ 3,515억 1,800만원, ‘장애인생활체육지원’ 275억 2,100만원 등 총 6,860억 2,900만원이 편성되어 최근 4년간 편성된 예산 중 가장 규모가 컸지만, 이후에는 일부 사업의 실행을 저조, 사업방식의 변경 등으로 그 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성된 ‘생활체육 육성사업’ 예산은 ‘생활체육활성화’, ‘생활체육시설지원’, ‘학교체육육성’ 등 3개의 단위사업과 ‘장애인생활체육지원¹³⁾’의 1개 세부사업 등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생활체육 육성사업’과 관련된 2024년도 기금 계획액은 5,869억 3,800만원(생활체육육성 프로그램 예산 5,583억 6,300만원, 장애인생활체육지원 세부사업 예산 285억 7,500만원)으로 동 기금 사업비 전체 지출 계획액인 1조 5,662억 1,900만원¹⁴⁾ 대비 약 37.5%를 차지하고 있다.

[2024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비 지출계획액]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명	계획액	비중
생활체육육성 ^{주)}	558,363	35.7
전문체육육성	437,585	27.9
스포츠산업육성	337,622	21.6
국제스포츠역량강화	121,993	7.8
장애인체육육성	110,656	7.1
합계	1,566,219	100.0

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이관된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지원’ 예산 19,688백만원은 제외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생활체육 육성사업’ 관련 2021년도 예산은 6,845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22년도에는 전년 대비 14억 7,300만원이 증액된 6,860억 2,900만원이 편성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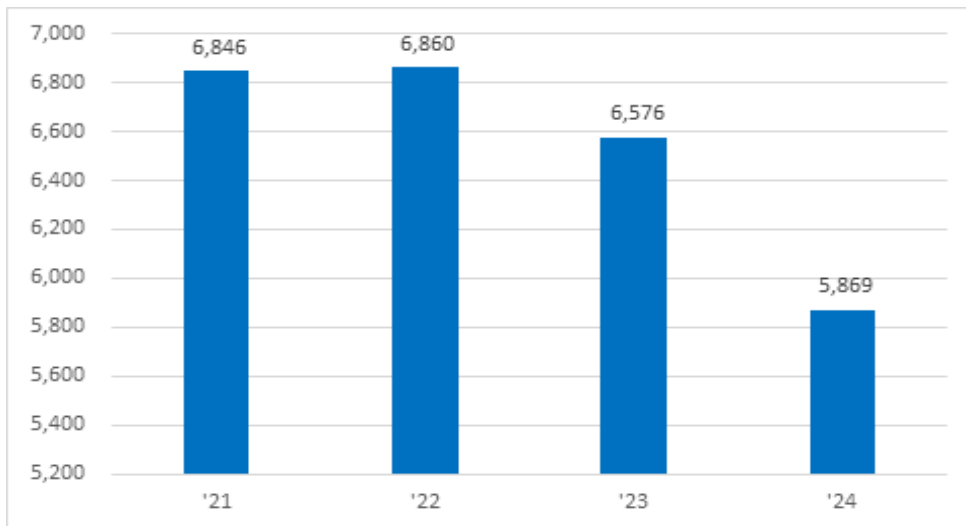
13) ‘장애인생활체육지원’ 세부사업은 ‘생활체육 육성’ 프로그램이 아닌 ‘장애인체육육성’ 프로그램에 해당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생활체육의 한 부분으로서 별도로 분석·평가하였음

14)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편성된 순수 사업비를 말함.

었으나, 이후에는 2023년 6,576억 300만원, 2024년 5,869억 3,800만원이 편성되는 등 점차 예산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사업비 예산 규모가 감소하는 주된 사유로는 일부 내역사업 실행행률 저조로 인한 예산 감축, 지자체 경비부담 증가에 따른 사업 규모 축소, 일부 사업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이관¹⁵⁾ 등이 있다.

[생활체육 육성사업 관련 기금계획액 변동 추이(2021년~2024년)]

(단위: 억원)



주: 1. 2024년의 경우 기금에서 균특회계로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지원’ 예산 197억원이 이관되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커짐
 2. ‘장애인체육육성’ 단위사업 중 ‘장애인생활체육지원’ 세부사업 예산을 포함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한편, ‘생활체육 육성사업’ 집행률을 살펴보면 2021년 98.5%, 2022년 98.3%, 2023년 96.6%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이는 정부가 지자체,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등에 보조(교부)한 지원금이 집행률로 나타난 것이므로, 실제 사업 예산에 대한 집행률(실집행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중 해당 사업에 실제로 투입한 금액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5) ‘생활체육 육성’ 프로그램 예산 중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지원(5163-301)’ 세부사업 예산은 2024년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됨. 참고로 동 지원예산의 2024년도 균특회계 예산 편성액은 19,688백만원임

[최근 4년간 생활체육 육성사업 예·결산 현황(국민체육진흥기금)]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구분	계획액 (당초)	계획액(수정) (A)	집행액 (B)	집행률 (B/A)
'21년	생활체육활성화	276,640	419,480 ¹⁾	417,294	99.5%
	생활체육시설지원	348,609	348,609	339,288	97.3%
	학교체육육성	32,413	32,413	32,412	100.0%
	장애인생활체육지원 ²⁾	26,894	26,894	26,192	97.4%
	합계	684,556	827,396	815,186	98.5%
'22년	생활체육활성화	351,518	353,381 ³⁾	346,006	97.9%
	생활체육시설지원	275,841	275,841	273,089	99.0%
	학교체육육성	31,149	31,149	30,109	96.7%
	장애인생활체육지원	27,521	27,521	27,254	99.0%
	합계	686,029	687,892	676,458	98.3%
'23년	생활체육활성화	340,913	340,913	338,631	99.3%
	생활체육시설지원	258,214	258,214	238,683	92.4%
	학교체육육성	30,418	30,418	30,412	100.0%
	장애인생활체육지원	28,058	28,058	27,736	98.9%
	합계	657,603	657,603	635,462	96.6%
'24년	생활체육활성화	362,747	-	-	-
	생활체육시설지원 ⁴⁾	176,175	-	-	-
	학교체육육성	19,441	-	-	-
	장애인생활체육지원	28,575	-	-	-
	합계	586,938	-	-	-

주: 1)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등 2021년도 추경과 자체 변경으로 당초 계획액인 2,766억 4,000만원에서 수정 계획액 4,194억 8,000만원으로 증액되었음

2) '장애인체육육성' 단위사업에 포함된 3개의 세부사업 중 '장애인생활체육지원' 사업만 해당

3) '스포츠강좌이용권 체험수기 공모전 개최비용' 확보 등 자체 변경으로 당초 계획액인 3,515억 1,800만원에서 수정 계획액 3,533억 8,100만원으로 증액되었음

4)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지원' 예산액 19,688백만원은 균특회계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제외하였음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 중 ‘생활체육 육성’ 프로그램 사업과 ‘전문체육 육성’ 프로그램 사업의 예산 규모를 상호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생활체육 육성사업 예산은 2021년에 6,577억원이 편성되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육성사업 예산을 합한 금액(이하 “전체 금액”)인 1조 472억원 대비 63%를 차지하였고, 2022년에는 생활체육 육성 예산은 6,585억원으로 전체 금액 대비 62%를, 2023년에는 6,295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0%를, 2024년에는 5,584억원으로 전체 금액 대비 56%로 나타나는 등 예산 규모와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에 전문체육 육성사업 예산은 2021년에 3,895억원으로 전체 금액 대비 37%를 차지하였고, 2022년에는 3,965억원이 편성되어 전체 금액 대비 38%를, 2023년에는 4,220억원이 편성되어 전체 금액 대비 40%를, 그리고 2024년에는 4,376억원 편성에 전체 금액의 44%를 차지하는 등 예산의 규모와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4년간 생활체육육성 및 전문체육육성 프로그램 사업 예산 비교]

(단위: 억원, %)

연도	생활체육육성 ¹⁾		전문체육육성		합계 (C)=(A+B)
	금액(A)	비중(A/C)	금액(B)	비중(B/C)	
'21년	6,577	63	3,895	37	10,472
'22년	6,585	62	3,965	38	10,550
'23년	6,295	60	4,220	40	10,515
'24년	5,584	56	4,376	44	9,960

주: 1) ‘장애인체육육성’ 프로그램 사업은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간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 이를 제외하였음

1. 생활체육 육성사업에 포함되었던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지원’ 예산액 197억원이 2024년에는 균특회계로 이관됨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가. 주요국의 생활체육 육성정책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스포츠 강국은 생활체육에 대한 중요성을 비교적 일찍부터 인식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복지 향상, 여가활동 장려 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1962년), 「생활체육진흥법」(2015년), 「스포츠클럽법」(2021년), 「스포츠기본법」(2021년) 등을 제정하고, ‘국민체육진흥계획’, ‘스포츠진흥기본계획’ 등 중장기 계획에 따라 국민의 생활체육정책을 시행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시대적인 요인, 급속한 경제성장, 사회적 변화 등에 기인하여 전문체육정책이 주로 시행되었는데, 이는 빠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큰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체육 위주의 정책은 어린 선수의 교육 기회 박탈, 입시 체육의 폐단, 비인기 종목 스포츠에 대한 무관심 등 여러 문제점도 동시에 발생시켰다.

반면에 스포츠 주요 강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활체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 생활체육 육성과 함께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서로 연계하는 체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두터운 선수층 육성과 함께 현재에도 여전히 스포츠 강국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생활체육 육성사업의 현실과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계 주요국의 체육정책 실태를 다음과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독일의 생활체육 육성정책은 ‘국민의 스포츠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증진과 사회·의료 비용 절감’ 등을 주요 추진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스포츠 배지(Sportabzeichen)’를 통하여 연령 별 신체활동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성인·장애인스포츠로 구분하여 금·은·동 배지를 수여하는 등 주로 개인과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전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웰빙(Well-Being)과 건강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주요 목표로 생활체육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마추어 스포츠법(The Ted Stevens Olympic and Amateur Sports Act)」에 따라 스포츠 건강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신체활동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는 10년 주기로 ‘건강증진계획(Healthy People)’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스포츠의 일상화’ 정책을 통하여 지역의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학교, 공원, 스포츠 시설, 복지센터 등이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추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수행 목표로는 ‘코로나-19의 극복 및 스포츠의 일상화 회복, 스포츠를 통한 지역 연대, 유·청소년 및 청년의 긍정적 경험, 근거를 기반으로 한 건강 및 웰빙과 연계’ 등이 있다.

일본은 ‘국민에게 다양한 스포츠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체육 참여를 증진’하는 것을 주요 추진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스포츠기본법」에 따라 현재 ‘제3기 스포츠 기본계획(2022~2027)’을 추진 중이다. 동 계획은 주 1회 이상 운동하는 성인의 비율은 70%까지, 아동의 비율은 90%까지 상향하는 것을 세부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의 생활체육 육성정책은 ‘생활체육의 중요성, 평등성, 공익성을 추구’하며, 현재 ‘쥬데부 스포츠(Sentez Vous Sport)’, ‘스포츠 쿠폰(Coupon Sport)’, ‘스포츠 지원수당(Pass'Sport)’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생활체육정책]

국 가	법률 및 주요내용		주요 사업 내역
	법률명	주요내용	
독 일	「스포츠지 원법」 (라인란트 -팔츠주)	- 스포츠클럽과 연맹 중심 - 스포츠클럽운 영을 위한 자 원봉사활성화	○ 대표사업: 스포츠배지(Sportabzeichen) ○ 주요 추진내용: 스포츠활동 참여 촉진, 건강증진과 사 회·의료비용 절감 ○ 독일 올림픽 체육연맹(DOSB¹⁾)이 스포츠 배지 사업을 운영 - 연령별 기준에 따른 개인의 신체활동 테스트를 실시 하여 테스트 등급에 따라 금, 은, 동 배지를 수여 - 청소년 스포츠 배지(8세-17세), 성인 스포츠 배지(18세 이상), 장애인스포츠 배지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운영 ○ 라인란트-팔츠 주에서는 「스포츠지원법」에 따라 개인 과 스포츠클럽을 지원
미 국	「아마추어 스포츠법」	- 스포츠 및 건 강 전담기구 설치 - 미국인을 위 한 신체활동 지침 제공	○ 대표사업: 건강증진계획(Healthy People 2030) ○ 주요 추진내용: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웰빙과 건강 잠 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 ○ 미국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질병 예방 건강증진 국(ODPHP)’²⁾이 1990년부터 10년을 주기로 하는 ‘Healthy People’³⁾을 수립 -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총 5번의 계획을 수립·시행 - 초기에는 조기사망 감소 등과 같은 양적 건강지표에 집중하다가 이후 건강수명, 삶의 질, 건강 형평성 등 의 질적 건강지표로 확대 - 2020년에 수립된 ‘Healthy People 2030’은 웰빙 (well-being)의 개념을 도입하여 건강의 심리·사회 적 관점을 강조
영 국	관련 법률 없음	-	○ 대표사업: 스포츠미래(Sporting Future), 운동 통합 (Uniting the Movement) ○ 주요 추진내용: 스포츠의 일상화를 위해 지역의 스포츠 클럽을 중심으로 학교, 공원, 스포츠 시설, 복지센터 등 이 상호 협력을 추진 ○ 지역 생활체육의 방향과 가이드를 제공하는 국가 단위 생활체육정책은 스포츠 잉글랜드(Sport England⁴⁾)를 통해 제시 ○ 영국의 스포츠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수립 - 회복과 재투자(코로나19 극복 및 스포츠의 일상화 회

국가	법률 및 주요내용		주요 사업 내역
	법률명	주요내용	
			복), 스포츠를 통한 지역 연대, 유·청소년 및 청년의 긍정적 경험, 근거를 기반으로 한 건강 및 웰빙과 연계, 활동적 환경(시설, 공간) 등
일본	「스포츠 기본법」	- 체육활동은 모두의 권리 - 권리를 실현할 계획 수립	○ 대표사업: 생활 속 스포츠활동증진 프로젝트(Sport in Life) ○ 주요 추진내용: 국민에게 다양한 스포츠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체육 참여를 증진 ○ 현재 ‘제3기 스포츠 기본계획(2022~2027)’ 추진 중 - 주 1회 이상 운동하는 성인의 비율을 70%(장애인의 경우 40%), 아동의 비율을 90%까지 상향함 - ‘스포츠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스포츠 단체, 학교, 기업 등으로 구성 된 ‘Sport in Life’ 컨소시엄을 설립·운영 - 직원의 건강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장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인증하는 ‘스포츠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프랑스	「스포츠 법전」	- 스포츠 관련 법률 정비 - 쿠폰, 수당 등 비용지원	○ 대표사업: 생테부 스포츠(Sentez Vous Sport) ○ 주요 추진내용: 생활체육의 중요성, 평등성, 공익성을 추구 ○ 국가와 지자체, 민간 스포츠클럽, 스포츠 지역센터(CREPS)를 중심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 생활체육 관련 주요 지원 내용 - 생테부 스포츠(Sentez-Vous Sport): 스포츠와 관련된 강의·행사 관람권을 무료로 제공 - 스포츠 쿠폰(Coupon Sport): 생활체육 비용 지원을 위해 국립 휴가 바우처 기관에서 발행 - 스포츠 지원수당(Pass' Sport): 어린이 청소년에게 1인당 연 1회 50유로씩 지급 등

주: 1) DOSB: Der Deutsche Olympische Sportbund

2) ODPHP: Office of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3) Healthy People: 우리나라의 건강증진종합계획에 해당하는 국가 단위의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 계획으로 생활체육을 비롯한 건강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

4) 스포츠 잉글랜드(Sport England): 영국의 커뮤니티 스포츠에 관한 상담, 홍보, 투자 활동을 하는 기관

자료: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주요국의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2022. 4. 및 국회법률도서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국의 생활체육 참여율

문체부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대한 제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국민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생활체육 참여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활체육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국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상호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실시하는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이나 조사 방법 등이 상이하여 사실상 같은 조건의 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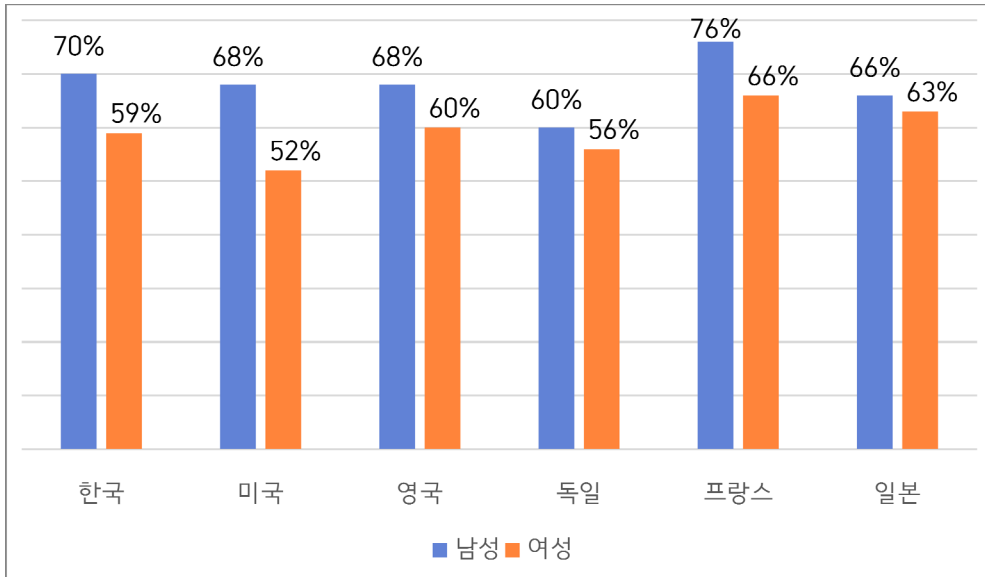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발표한 ‘Global status report on physical activity 2022’에서는 세계 각국의 ‘신체 운동이 부족한 자¹⁶⁾ 중 18세 이상의 국민’ 비율을 남녀 별로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체육활동 관련 통계자료는 각국의 조사대상이나 조사 방법 등이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되었는데, 전체 18세 이상의 국민에서 ‘신체 운동이 부족한 자 중 18세 이상의 국민’을 제외하여 이를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한 자’로 간주¹⁷⁾하면, 각국을 같은 조건으로 조사한 생활체육 참여율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산출된 세계 각국의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을 각각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18세 이상인 국민(이하 타 국가의 경우도 동일) 중 남성은 70%, 여성은 59%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활체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남성 68%, 여성 52%가, 영국의 경우 남성 68%, 여성 60%가 각각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일은 남성 60%, 여성 56%가, 프랑스는 남성 76%, 여성 66%가, 일본의 경우 남성 66%, 여성 63%가 각각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신체 운동이 부족한 자’는 “한 주당 ① 중강도 유산소 운동시간이 150분보다 적거나 ② 고강도 유산소 운동시간이 75분보다 적거나 ③ ①·②와 동등한 조합으로 중강도·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실시하지 않는 자”로 정의함

17) 이러한 산출 방식은 황선환, “생활체육 참여실태”, 한국의 사회 동향, 2013.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적용된 바 있음

[2022년도 세계 주요국 생활체육 참여율 비교]



- 주: 1. 세계 각국의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등 모두 같은 요건을 적용하였음
 2. 각국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국가 간 표준화를 위하여 전체 18세 이상의 국민(100%)에서 '신체 운동이 부족한 자'의 비율을 뺀 값을 적용함.

자료: WHO, "Global status report on physical activity 2022 - country profiles", 2022. 10.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1

총괄 분석

가. 재정투입 및 성과분석

(1) 생활체육 육성사업에 투입된 재정과 생활체육 참여율과의 관계 분석

생활체육 육성사업의 성과지표인 ‘생활체육 참여율¹⁸⁾’은 육성사업에 투입된 재정 규모보다는 코로나-19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증감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생활체육 육성사업’에 투입된 재정 규모와 ‘생활체육 참여율’과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하여, 최근 7년 간(2017년~2023년)간 투입된 재정과 생활체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 투입된 재정(집행액 기준)은 3,877억원이며, 2018년 3,720억 9,800만원부터 2021년 7,907억 2,900만원에 이르기까지 재정투입 규모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생활체육 참여율은 2017년 59%, 2018년 62%, 2019년 67%로 증가하였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60%로 하락한 후 2021년에는 전년도와 비슷한 61%를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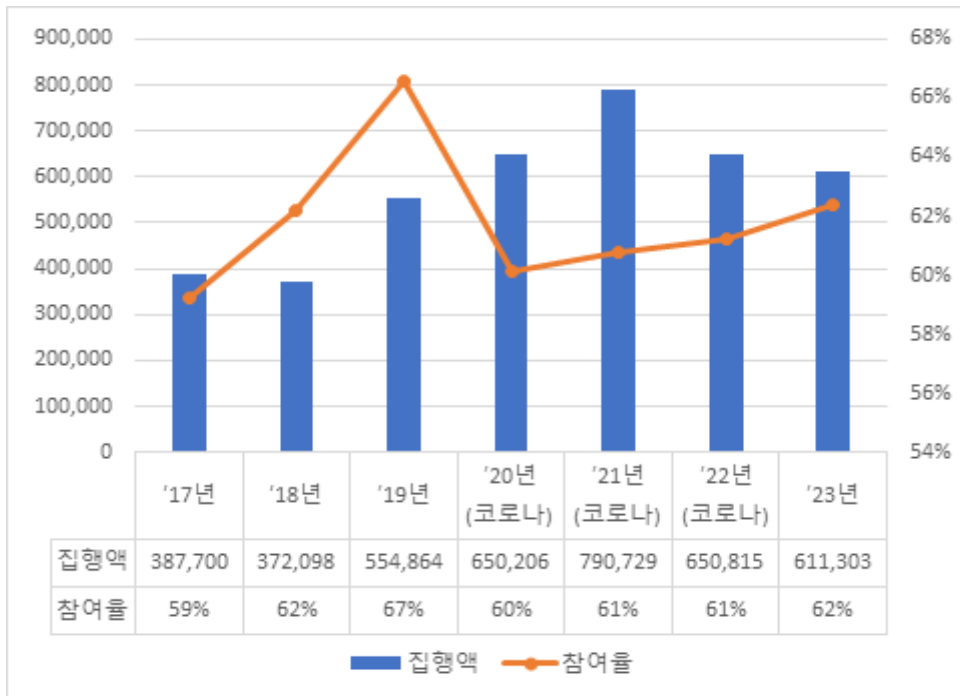
그리고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소된 생활체육 참여율을 반영하여 2021년도 집행액 대비 약 17.7%가 감소된 6,508억 1,5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2023년에는 2022년도에 투입된 재정보다 395억 1,200만원이 적은 6,113억 300만원이 집행되었다. 반면에 생활체육 참여율은 그동안 투입된 재정 규모 추이와는 달리 2022년에는 61%, 2023년에는 62%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러한 생활체육 육성사업에 투입된 재정 규모와 생활체육 참여율과의 변동 추이를 교차 비교해본 결과, 2019년까지는 재정 규모 증가에 따라 참여율도 상승하였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는 재정 규모와 무관하게 생활체육 참여율이 급격히 하락하였고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8) 최근 1년간 주 1회,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

[생활체육 육성사업의 재정 투입 규모 및 생활체육 참여율과의 관계('17~'23년)]

(단위: 백만원)



- 주: 1. 집행액: 일반회계 단위사업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단위사업인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시설지원', '학교체육육성'의 집행액을 합한 금액
 2. 생활체육 참여율: 주 1회 이상(1회 30분)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자 비율을 일정 측정 식으로 나타낸 것임(규칙적인 참여자 수/설문응답자×100)

자료: 문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한편,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¹⁹⁾도 투입된 재정 규모보다는 코로나-19 등 외 부요인에 따라 증감하는 측면이 있지만, 비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편차가 적은 편이다.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사업'에 투입된 재정 규모와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7년간(2017년~2023년) 투입된 재정 규모와 생활체육 참여율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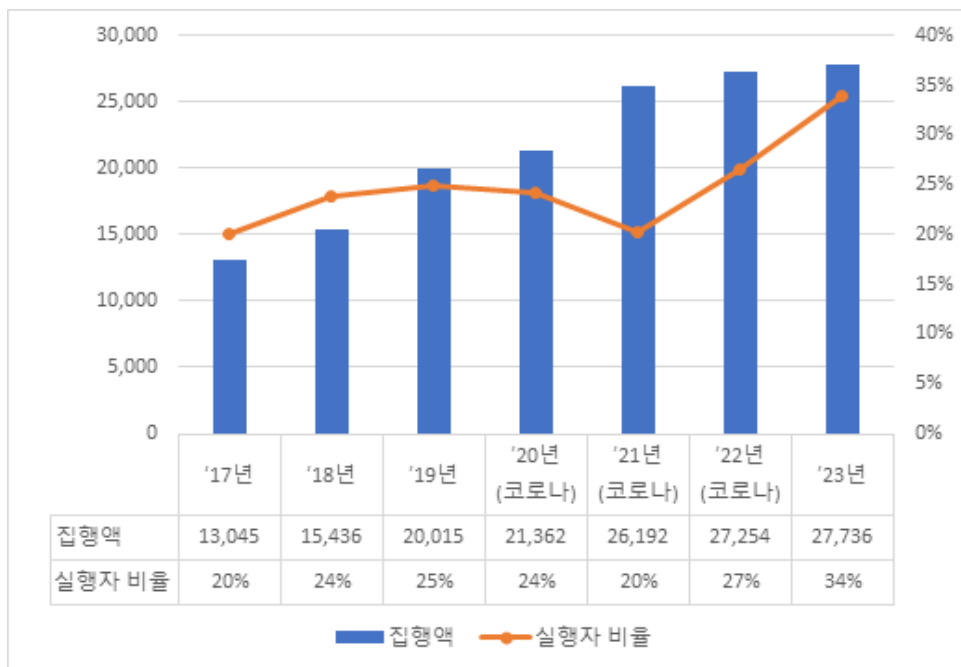
먼저 투입된 재정(집행액 기준)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 130억 4,500만원이

19) 최근 1년간 재활치료 외의 목적으로 1주일에 2회 이상(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자로,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 결과보고서", 2023. 12.는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라고도 함.

투입되었으며, 이후 2023년 277억 3,600만원까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017년 20%, 2018년 24%, 2019년 25%로 계속 증가하다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전년도보다 감소한 24%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2021년에는 20%로 하락하였으며, 2022년 27%와 2023년 34%로 급격한 회복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사업에 투입된 재정 규모와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재정의 투입 규모보다는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요인에 따라 증감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변동 추이는 비장애인의 투입 재정 대비 생활체육 참여율 변동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비장애인의 변동추이보다는 상대적으로 편차가 작은 편이다.

[장애인 생활체육 재정 투입 규모 및 생활체육 참여 비율과의 관계('17~'23년)]
(단위: 백만원)



- 주: 1. 집행액: 세부사업인 '장애인생활체육지원' 사업 예산 집행액
 2.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최근 1년간 재활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1주일에 2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장애인의 비율(생활체육 참여 장애인 수/장애인등록인구(보건복지부)×100%)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 생활체육 시설지원에 투입된 재정과 이용자 만족도와의 관계 분석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는 생활체육시설의 지원에 투입된 재정 규모나 코로나-19 등 외부요인보다는 재정을 투입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측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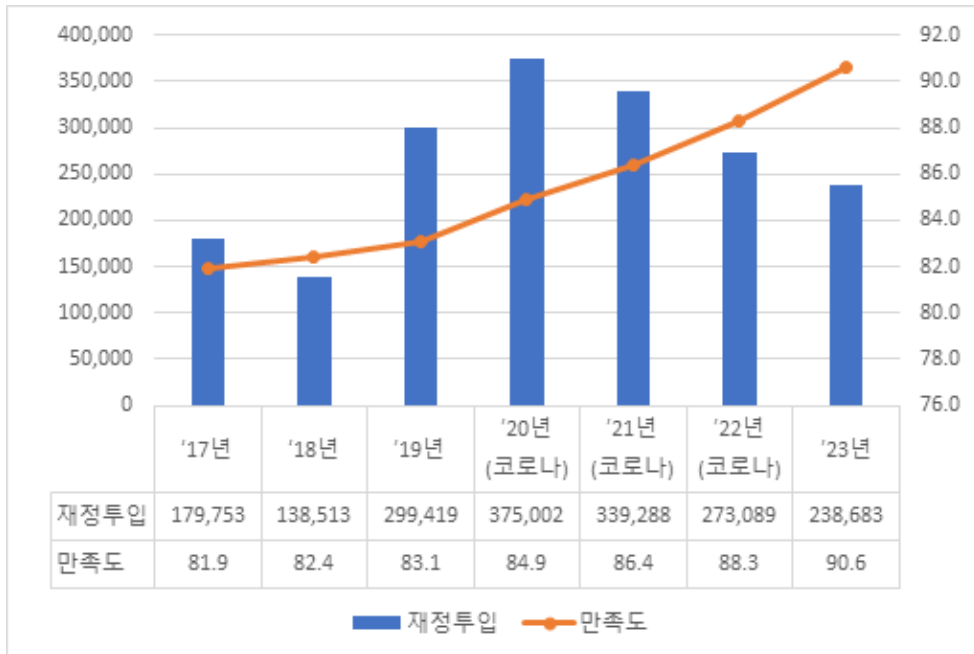
‘생활체육시설지원’에 투입된 재정의 규모와 시설이용자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7년간(2017년~2023년) 투입된 재정과 ‘시설이용자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2017년도에 투입된 재정(집행액 기준)은 1,797억 5,300만원이며, 2018년에는 전년 대비 412억 4,000만원이 감소된 1,385억 1,300만원이 투입되었다. 2019년은 2,994억 1,900만원이 투입되었고, 2020년도에는 3,750억 300만원으로 최근 7년간 중 그 규모가 가장 컸지만, 2021년 이후에는 투입된 재정의 규모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점수는 2017년에 81.9점을 기록한 뒤 2018년 82.4점, 2019년 83.1점을, 코로나-19 기간인 2021년 86.4점과 2022년 88.3점을 기록하였으며, 코로나-19가 종료된 2023년에도 90.6점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7년간 생활체육시설에 투입된 재정 규모, 코로나-19 등 외부요인과 시설이용자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체육시설에 투입된 재정이나 코로나 등 외부요인은 시설이용자 만족도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재정투입 기간이 오래될수록 시설이용자 만족도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체육시설지원 재정투입 규모 및 이용자 만족도와의 관계('17~'23년)]

(단위: 백만원, 점)



- 주: 1. 집행액: '생활체육시설지원' 세부사업의 집행액임
 2. 이용자 만족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목표치로서 ' $\{\sum(7\text{점척도} - 1) \times 16.7\} / \text{전체 응답자 수}$ '에 따라 산출된 값임
 3. 2020년에는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아 해당 연도 목표치를 기재하였음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성과계획 및 성과지표 분석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 계획 중 생활체육 육성사업과 관련된 성과목표는 ‘스포츠 생활화로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와 ‘장애인 체육 활동을 활성화한다’ 등 2개가 있다.

성과관리 계획은 ‘성과관리 전략계획²⁰⁾(2023~2027)’에 따라 정부가 직접 수립하며, ‘성과관리 전략계획’에서 제시된 6대 전략목표와 ‘정부 핵심 추진과제’, ‘국정과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등을 바탕으로 하위 개념인 성과목표와 관리과제를 수립한다.

문체부에서 수립한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6대 전략목표, 22개의 성과목표, 74개의 관리과제, 158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된다. 이중 ‘생활체육 육성사업’과 관련된 전략목표(제5번)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 경쟁력 강화로 국민 행복을 실현한다’가 있다. 그리고 동 전략목표의 하위 단위인 성과목표에는 ‘스포츠 생활화로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제1번 성과목표)’와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한다(제5번 성과목표)’ 등 2개가 있으며, 동 성과목표(제1번과 제5번)의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율’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등이 있다.

[생활체육 육성과 관련된 전략목표]

구분	목표내용	성과지표	측정방법(또는 측정산식)	'28년 ^{주)}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	5.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 경쟁력 강화로 국민 행복을 실현한다	① 체육활동 참여율(%)	주 1회 이상(1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자 비율 측정(규칙적인 참여자 수/설문 응답자*100)	70%	정성	결과	통계청 승인 통계
'28목표치 산출근거		과거 추세치*와 더딘 일상회복 속도에도 불구하고, '24년 목표치는 전년 대비 1.6%p 상향한 64.0%로 설정하고, 생활체육참여율 한계치(70% 외국사례 참조)를 고려하여 매년 목표치 1.5%p 상향 조정하여 '28년까지 70% 달성 목표 * 코로나 이후 최근 4년('20~'23) 증감평균(-1.49%p)					

주: '성과관리 전략계획(2024~2028)'에 따라 2028년까지의 목표치를 설정함.

자료: 문체부, '2024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0) '성과관리 전략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을 말함.('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5조)

[생활체육 육성과 관련된 성과목표, 관리과제 및 성과지표]

구분	목표내용	성과지표	측정방법(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성과 목표	1. 스포츠 생활화로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	①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 (공통)	주 1회 이상(1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자 비율 측정 - 규칙적인 참여자 수/설문응답자×100	64%	정량	결과	통계청 승인 통계
관리 과제	①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참여 제고	①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공통)	{ Σ (7점척도-1)×16.7}/ 전체 응답자수	91.2점	정성	결과	
		②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수혜자 만족도(점)(공통)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7점척도, 100점 환산)	92.7점	정성	결과	
	②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①인구 1인당 공공체육 시설면적(㎡)	공공체육시설 면적/ 주민등록인구 수	4.29㎡	정량	결과	
성과 목표	5.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한다.	①장애인생활체육참여율(%) (공통)	생활체육참여 장애인수/장애인등록인구(보건복지부)×100	36.1%	정량	결과	통계청 승인 통계
관리 과제	① 장애인 생활체육활동 참여여건 조성	①장애인체육지원사업 만족도(점)(공통)	{ Σ (7점척도-1)×16.7}/ 전체 응답자수	92.1점	정성	결과	
		②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수혜자수(천명)(공통)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지도활동을 받은 수혜자 수 합산(누적)	2,708천명	정량	산출	

자료: 문체부, '2024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첫째,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율’의 2024년도 성과지표 목표치(64.0%)는 코로나 팬데믹의 정점인 2020년 이후의 더딘 참여율 회복세와 최근 악화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적극적인 수준으로 보인다.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율’에 대한 2024년도 성과지표 목표치 산출 근거를 보면, 참여율이 코로나 팬데믹의 정점인 2020년(전년 대비 6.5%p 감소) 이후 서서히 회복세(전년 대비 '21년 0.7%p, '22년 0.4%p, '23년 1.2%p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악화된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 회복세의 추이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럼에도 '24년도 목표치는 '22~'23년의 평균 증가율(0.8%p)의 2배인, 전년 실적 대비 1.6%p 상향한 64.0%p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율’ 성과목표치를 적극적인 수준으로 설정한 측면이 있다.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율 성과지표]

(단위: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21	'22	'23	'24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 (공통)	60.8	61.2	62.4	64.0	- 주 1회 이상(1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자 비율 측정 (규칙적인 참여자 수/설문응답자×100)	국민생활체육조사 - 인원수: 9,000명 - 방법: 대면조사 - 주관: 전문리서치 업체
'24목표치 산출근거	코로나 정점('20년 -6.5%p) 이후 서서히 회복세('21년 0.7%p, '22년 0.4%p, '23년 1.2%p)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악화된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 회복세의 추이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측됨. 그럼에도 '24년도 목표치는 '22~'23년의 평균 증가율(0.8%p)의 2배인, 전년 실적 대비 1.6%p 상향한 64.0%p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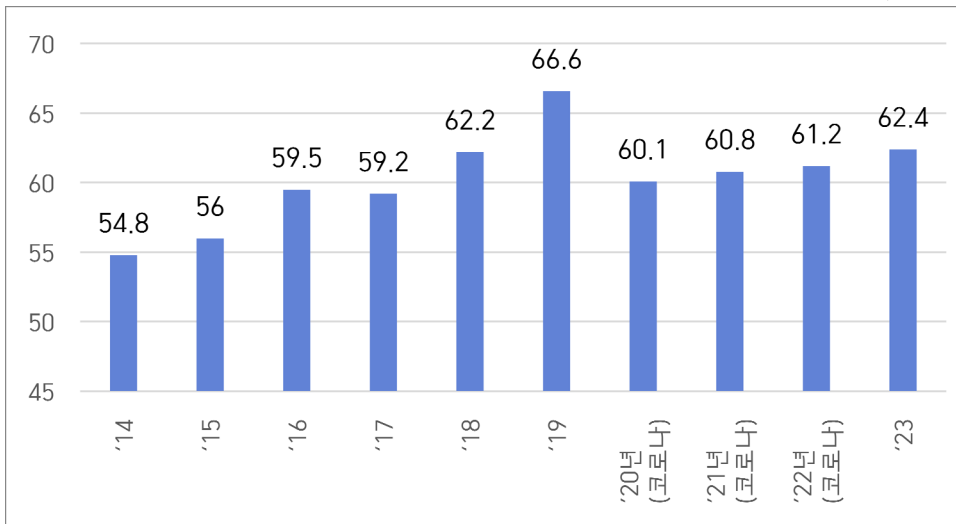
자료: 문체부, '2024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로 최근 10년간(2014년~2023년) ‘생활체육 참여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에 54.8%의 참여율을 기록한 뒤 2015년에는 56.0%, 2016년 59.5% 등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까지 꾸준한 상승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60.1%로 급락한 후 2021년 60.8%, 2022년 61.2%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등 생활체육 참여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코로나-19가 종료된 2023년에도 전년 대비 1.2%p가 상승한 62.4%를 기록하는 등 생활체육 참여율이 회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2023년 생활체육 참여율]

(단위: %)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둘째,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성과지표의 경우 장애의 종류나 장애의 정도에 따라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상이하므로,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금보다 세밀하게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장애인 생활체육’과 관련된 성과지표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장애인 체육지원사업 만족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수혜자 수’ 등이 있는데, 이러한 지표들은 모두 장애의 유형이나 장애의 정도를 구분하지 않은 단일 지표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유형이나 경증·중증 등 장애의 정도에 따라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능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를 구분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²¹⁾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관련 복지정책은 장애의 유형이나 장애 정도를 세밀하고 다양하게 구분·시행하고 있다.

21) 김권일·김인애, “생애주기 및 장애 정도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019. 8.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성과지표]

(단위: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21	'22	'23	'24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공통)	20.2	26.6	33.9	36.1	생활체육 참여 장애인수 / 장애인 등록인구(보건복지부) × 100	전문조사기관용역 (표본설문조사 실시)
'24목표치 산출근거	일상 회복으로 '22년과 '23년 큰 폭으로 참여율이 상승. 이를 반영하여 설정한 '24년도 목표치는 최근 10개년 상승률 평균 2.2%p를 더해 36.1% 상향 설정					

자료: 문체부, '2024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먼저 장애 유형별로 실제 참여가 가능한 체육활동을 살펴보면, 신체의 거동이 어려운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등은 체육활동의 제약이 비교적 크지만, 시각·청각·언어장애인 등은 비장애인과 비슷한 수준의 체육활동이 가능한바, 장애의 유형이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금보다 세밀한 성과지표의 설정과 관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의 장애 유형은 크게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등 2가지로 구분되며,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 등 2가지로,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 등 2가지로 각각 분류된다.

이러한 장애들을 다시 세분화하면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등 15가지의 장애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렇게 분류된 장애 유형은 다시 경증과 중증 등 장애 정도에 따라 세분된다. 이처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세밀하게 구분·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인 중에는 지체장애·뇌병변·심장장애인 등의 경우 신체의 거동이 어려워 경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가벼운 체육활동조차 수행이 어려운 반면, 시각·청각·언어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비장애인과 비슷한 수준의 체육활동 능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정책 또한 장애의 유형, 경증·중증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금보다 세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들의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생활체육 참여 전략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 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 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 2023. 3. 21.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장애의 정도를 기준으로 생활체육 참여율 추이를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경증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보다 코로나-19 등 외부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으므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성과지표를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설정·관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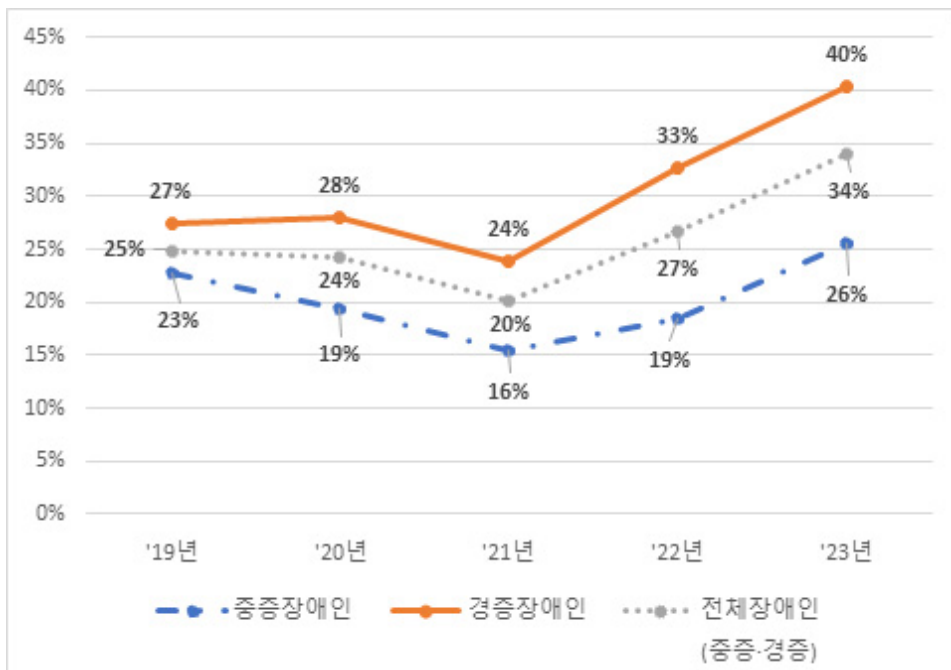
최근 5년간(2019년~2023년)의 장애 정도별 생활체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2019년은 전체 장애인의 25%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체육에 참여했으며, 그중 중증장애인은 23%, 경증장애인은 27%가 각각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전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2020년 24%, 2021년 20%, 2022

년 27%를 기록하였고, 중증장애인은 2020년 19%, 2021년 16%, 2022년 19%를, 경증장애인은 2020년 28%, 2021년 24%, 2022년 33%를 각각 기록하였다.

최근 5년간 ‘장애 정도별 생활체육 참여율’의 변동 추이는 전체 장애인과 중증·경증장애인 모두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그 편차를 살펴보면 참여율이 하락추세에 있을 때는 경우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 참여율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하였고, 참여율이 상승할 때는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보다 더딘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는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참여율 23% 대비 3%p가 상승한 26%를 기록한 반면, 경증장애인은 2019년도 참여율 27% 대비 13%p가 높은 40%까지 상승하여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의 변동추이가 중증과 경증 등 장애의 정도에 따라 편차가 서로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정밀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성과 지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중증과 경증장애인으로 각각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5년간 장애 정도별 생활체육 참여율]



주: 1. 참여율: 생활체육에 참여한 장애인 수/장애인 등록인구(보건복지부)×100%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 및 통계청, KOSIS(국가통계포털)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참고로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비중은 2019년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전체 장애인 대비 37.6%를, 경증장애인은 62.4%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2020년에는 전체 장애인 대비 중증장애인 37.4%, 경증장애인 62.6%를 차지하는 등 2023년 10월(중증장애인 37.1%, 경증장애인 62.9%)까지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등록장애인(장애 정도 별) 현황]

(단위: 명, %)

연도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합계 (C)=(A+B)
	등록인원(A)	등록비율(A/C)	등록인원(B)	등록비율(B/C)	
2019년	985,403	37.6	1,633,515	62.4	2,618,918
2020년	984,965	37.4	1,648,061	62.6	2,633,026
2021년	984,813	37.2	1,659,887	62.8	2,644,700
2022년	983,928	37.1	1,668,932	62.9	2,652,860
2023년 ^{주)}	978,637	37.1	1,662,528	62.9	2,641,165

주: 2023년은 10월말 기준임

자료: 통계청. KOSIS(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 분석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시설 비용, 학교·직장 체육의 육성, 체육인의 복지 향상, 체육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1972년에 설치되었으며, 동법에 따른 기금조성의 주요 목적은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학교체육 및 직장 체육의 육성,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도박 문제의 예방과 치유’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이다.

실제 동 기금의 운용상황을 살펴보면 동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약칭: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²²⁾’에서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한다.

수입내역은 다시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지출내역은 ‘사업비’, ‘기금운영비’, ‘정부내부지출 및 기타’, ‘여유자금 운용’ 등으로 구분된다,

동 기금 수입의 주요 내역 중 ‘자체수입’은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경우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문체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등이 있으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 및 가산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동 주요 내역 중 ‘정부 내부수입 및 기타’에는 ‘정부의 출연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²³⁾ 등이 있다.

또한 지출의 주요 내역 중 ‘사업비’에는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경우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과 그 보급 사업’,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선수 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등이 있으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경우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과 도박 문제의 예방 치유’, ‘한국도박문제센터 운영’ 등이 있다.²⁴⁾

2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라 사행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와 불법 사행산업에 관한 감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되는 위원회

23) 「복권 및 복권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 복권수익금 배분 비율은 10.371%이다

24) 한국재정정보원, “2023 회계·기금 운용 구조”, 2023. 3.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과 관련된 법령상 규정]

법령	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한다. 1.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2. 체육인의 복지 향상 3. 체육단체 육성 4. 학교체육 및 직장 체육육성 5. 체육·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6. 취약분야 육성 7. 스포츠 산업 진흥 8.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 9.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제2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 제2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0조(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입장료"란 명칭과 관계없이 같은 호에 따른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여 체육활동을 할 목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의 금액은 각종 세금의 포함 여부와 관계 없이 입장권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힌 액면금액으로 한다. 제21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령	규정
	1.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정관리기관이 국유나 공유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대부받은 경우 그로 인한 수익금 2. 「경륜·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에의 출연금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law/>>

한편, 동 기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계정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수입내역 중 ‘자체수입’에는 잡수입(기타잡수입, 기타영업외잡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부가금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융자원금회수(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기타경상이전수입(법정부담금) 등이 있고,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에는 예탁금원금회수(공공기금예탁원금회수), 예탁금이자수입(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 등이 있으며, ‘여유자금회수’에는 정부예금회수(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등이 있다.

그리고 지출내역 중 ‘사업비’에는 ‘생활체육육성’, ‘전문체육육성’ 등 5개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가, ‘기금운영비’에는 운영비(국민체육진흥기금 운영비), ‘정부내부지출 및 기타’에는 기금간거래(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문화예술진흥기금·복권기금 간 전출)가, ‘여유자금 운용’에는 여유자금운용(체육기금의 통화금융기관예치 등)이 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지출에 대한 계정별 주요 내역(2023년도 기금계획액 기준)]

(단위: 억원)

수입내역			금액
자체수입	잡수입(국민 ¹⁾)	기타잡수입	264
		기타영업외잡수입	18,124
	기타경상이전수입(국민)	부가금수입	16
		기타경상이전수입	1,381
	기타경상이전수입(사행 ²⁾)	기타경상이전수입	14
	융자금회수(국민)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683
	기타경상이전수입(사행)	법정부담금	235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국민)	기타민간이전수입	42
		기타재산수입	107
기타재산이자수입(사행)	기타재산수입	6	
소계			20,871
정부내부 수입 및 기타	예탁금원금회수(국민)	공공기금예탁원금회수	6,200
	예탁금이자수입(국민)	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	221
	복권기금전입(국민)	복권기금전입금	915
소계			7,335
여유자금 회수	정부예금회수(국민)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700
	정부예수금회수(사행)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99
소계			3,999
합계			32,205
지출내역			금액
사업비	생활체육육성(국민)	생활체육육성 관련 사업비	6,295
	전문체육육성(국민)	전문체육육성 관련 사업비	4,399
	스포츠산업육성(국민)	스포츠산업육성 관련 사업비	3,428
	국제스포츠역량강화(국민)	국제스포츠역량강화 관련 사업비	1,150
	장애인체육육성(국민)	장애인체육육성 관련 사업비	969
	생활체육육성(사행)	도박문제 예방·치유 ³⁾	218
소계			16,460
기금운영비	기금운영비(국민)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영비	318
소계			318
정부내부 지출 및 기타	기금간거래(국민)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7,000
		기금간전출(문화예술진흥기금)	1,000
		기금간전출(복권기금)	146
소계			8,146
여유자금 운용	여유자금운용(국민)	통화금융기관예치(체육기금)	6,945
	여유자금운용(사행)	통화금융기관으로예치	336
소계			7,282
합계			32,205

주: 1) 국민체육진흥계정

2)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3) '생활체육육성' 프로그램 내에 '도박문제 예방·치유' 단위사업이 있음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최근 5년간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과 지출 규모를 비교한 결과, 수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 운용상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기금의 규모를 증가추세별로 살펴보면, 기금 수입의 총계²⁵⁾는 2020년 2조 6,073억부터 2024년 3조 4,051억원까지 5년 동안 30.6%가, 그리고 총수입(자체 수입)은 2020년 1조 7,720억원부터 2024년도 2조 2,797억원까지 28.7%가 증가한 반면, 총지출²⁶⁾은 2020년 1조 4,778억원부터 2024년 1조 6,227억원까지 9.8%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5년간 총계와 총수입의 규모는 약 30% 정도가 확대된 반면, 총지출은 같은 기간 동안 약 10%밖에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총계·총수입 규모의 확대가 바로 기금의 사업비 등 총지출의 확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속적인 기금 수입 증가가 총지출 증가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중기적으로 가용자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할 수밖에 없고, 결국 동 기금의 조성 목적보다는 정부 내 타 지출 항목인 ‘공자기금 예탁’이나 ‘타 기금으로의 전출’ 등으로 사용²⁷⁾하고 있어 재정 운용상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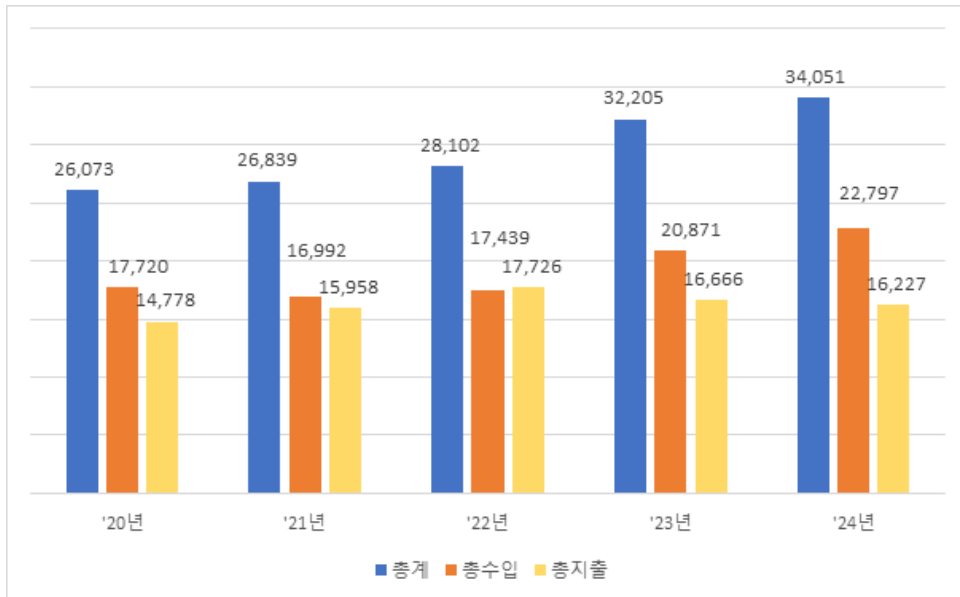
25) 기금 수입의 총계: 기금의 자체 수입, 정부내부수입, 여유자금 회수 등의 합계

26) 총지출: 기금의 사업비와 기금운영비의 합계

27)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2023.5.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중기 가용자산규모가 과다하다고 지적된 바 있음

[최근 5년간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 규모]

(단위: 억원)



- 주: 1. 총계: 기금의 자체 수입, 정부 내부수입, 여유자금 회수 등 수입의 총계
 2. 총수입: 기금의 자체 수입(잡수입, 경상 이전수입, 민간 용자금 회수 등의 합계)
 3. 총지출: 기금의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의 합계
 4. 각 연도 당초 계획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타 기금으로의 전출의 한 예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 중 일부가 같은 문체부 소관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연례적으로 전출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기금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극장이나 공연장 등에서 모금을 통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모금행위에 대하여 위헌판결(2002헌가2, 2003. 12. 18.)을 함으로써 2004년부터 기금조성을 위한 모금이 불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기금의 자체 수입원도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기금의 자체 수입원이 없어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자체적인 구조조정²⁸⁾이나 기금의 새로운 수입원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²⁹⁾을 시도하기도 했다.

28) 문화예술 관련 사업 예산의 지방 이양('19~'22년, 156억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사업 이관('21~'23년, 195억원), 경상비 절감('24년, 28억원) 등

현재는 취약한 예술계 사정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가³⁰⁾,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사업비 증액³¹⁾ 등으로 적립금이 꾸준히 감소함에 따라 현재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으로부터 기금의 상당 부분을 이관받아 운영하는 실정이다.

참고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 계획액 대비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전입된 금액의 비율은 17.2~1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입된 국민체육진흥기금 현황(2021~2024년)]

(단위: 억원, %)

연도	수입계획액(수정)(A)	국민체육진흥기금전입액(B)	전입률(B/A)
2021	5,240	970	18.5
2022	5,240	970	18.5
2023	5,397	1,000	18.5
2024	5,798	1,000	17.2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8년간(2016년~2023년)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출된 금액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500억원이 전출되어 계획 현액 대비 약 3%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 지출액 대비로는 2.5~3%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출되었다. 그리고 2019년 이후에는 매년 1,000억원 정도가 전출되어 계획 현액 대비 약 3.1~4.3%, 총 지출액 대비로는 3.0~3.7%에 해당하였다.

29)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새로운 수입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6770, 김영주의원 등 11인)을 발의·논의한 바 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음

30) '18년 2,412억원 → '24년 4,668억원으로 6년 간 사업비 예산 93.5%가 증가됨

31) 통합문화이용권 등 복권기금 사업에 문예기금 적립금을 활용('22년, 568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출·이관 내역('16~'23년)]

(단위: 억원, %)

연도	계획현액 (A)	총 지출액 ¹⁾ (B)	전출 내역		
			금액(C)	계획현액대비 (C/A)	총지출액대비 (C/B)
'16	16,509	16,593	500	3.0	3.0
'17	15,978	20,036	500	3.1	2.5
'18	15,764	19,796	500	3.2	2.5
'19	23,493	29,708	1,000	4.3	3.4
'20	26,076	27,182	1,000	3.8	3.7
'21	26,839	29,739	970	3.6	3.3
'22	28,102	32,080	970	3.5	3.0
'23	32,205	33,763	1,000	3.1	3.0

주: 1) 각 회계연도의 결산 기준임

1. 2024회계연도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1,000억원, 영화발전기금으로 300억원이 각각 전출될 예정임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분석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세부사업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시스템관리 및 사업운영’,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 3개의 내역사업이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세부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이나 장애인 등에게 일정 금액의 스포츠강좌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지원 대상자의 스포츠 참여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는 동일한 명칭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과 ‘시스템관리 및 사업운영’,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 3개의 내역사업이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지자체 보조방식(보조율 70%)으로 시행되며,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지자체 보조(보조율 70%)와 국민체육공단·대한장애인체육회 보조방식(보조율 100%)으로 병행·실시되고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예·결산 현황('19년~'24년)]

(단위: 백만원, %)

연도	사업명	계획현액 ¹⁾ (A)	집행액 ²⁾	실집행액 ³⁾ (B)	집행률 (B/A)	불용액등 ⁴⁾ (A-B)
'19 년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24,668	24,585	23,104	93.7	1,564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21,504	21,504	21,442	99.7	62
	- 시스템관리 및 사업운영	514	439	439	85.4	75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2,650	2,642	1,223	46.2	1,427
'20 년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27,654	27,211	23,868	86.3	3,786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24,395	24,395	22,534	92.4	1,861
	- 시스템관리 및 사업운영	514	457	457	88.9	57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2,745	2,359	877	31.9	1,868
'21 년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33,236	32,087	29,588	89.0	3,648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29,120	29,120	27,589	94.7	1,531
	- 시스템관리 및 사업운영	519	491	491	94.6	28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3,597	2,476	1,508	41.9	2,089
'22 년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53,759	50,853	43,233	80.4	10,526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46,571	46,050	39,218	84.2	7,353
	- 시스템관리 및 사업운영	567	533	533	94.0	34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6,621	4,207	3,482	52.6	3,139
'23 년	○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85,232	85,220	69,155	81.1	16,077
	-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73,096	73,096	59,089	80.8	14,007
	- 시스템관리및사업운영	503	491	491	97.6	12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11,633	11,633	9,575	82.3	2,058
'24 년	○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120,344	-	-	-	-
	-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100,799	-	-	-	-
	- 시스템관리및사업운영	554	-	-	-	-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18,991	-	-	-	-

주: 1) 계획현액: 정부 계획액(당초)에 추경예산, 전년도 이월액 등을 모두 반영한 금액

2) 집행액: 정부가 집행한 금액(사업시행주체에 교부한 금액 포함)

3) 실집행액: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지자체, 국민체육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이 정부가 지원한 보조금을 실제 집행한 금액 등

4) 불용액, 차년도 이월액 등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내역사업은 2024년도 기준으로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에게 월 10만원 범위 내의 스포츠강좌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장애인에게 월 11만원 범위 내의 스포츠강좌수강료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연도별 스포츠강좌수강료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20년~'24년)]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저소득층 유·청소년	지원인원	51,496	60,804	72,778	92,028	-
	지원금액	월 8만원	월 8만원	월 8.5만원	월 9.5만원	월 10만원
장애인	지원인원	1,756	3,776	8,776	15,617	-
	지원금액	월 8만원	월 8만원	월 8.5만원	월 9.5만원	월 11만원

자료: 문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첫째, 저소득층의 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한 스포츠강좌의 수강은 공공체육시설에 개설된 강좌를 수강하는 것이 더 저렴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사업자가 유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스포츠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스포츠 시설주(공공체육시설 또는 사설체육시설)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신청 절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시설 정보와 웹 가맹점³²⁾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바, 이때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스포츠 시설은 월 강습 형태의 스포츠강좌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하고, 아이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풍부한 경험과 스포츠 기술을 보유한 지도자를 갖추어야³³⁾ 한다.

이와 함께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자격요건으로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를 하는 가맹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종목의 강좌를 제공하는 강좌 시설, 온라인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 등이 있다.

32)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수강료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웹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함

33)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https://svoucher.kspo.or.kr/main.do>>

장애인 가맹시설의 자격요건은 저소득층 유·청소년 가맹시설 요건과 대부분 유사하나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에 대한 강좌 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 등이 포함된다는 점이 저소득층 유·청소년 가맹시설 요건과 다르다.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체육시설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 공공체육시설과 사설체육시설의 자격요건은 서로 같으며, 2가지 체육시설 모두 가맹시설 신청 자격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신청 자격]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 가맹시설	장애인 가맹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¹⁾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종목의 강좌를 제공하는 강좌 시설 -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스포츠클럽²⁾이나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에 따라 공공스포츠클럽 - 온라인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 등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종목의 강좌를 제공하는 강좌 시설 -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스포츠클럽²⁾,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사업에 따른 공공스포츠클럽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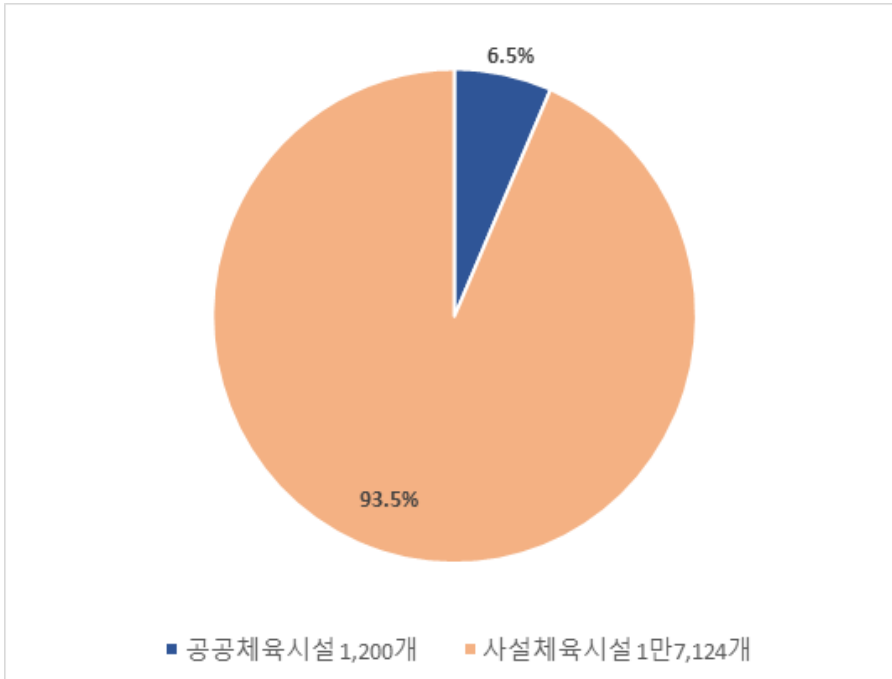
주: 1)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2)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자료: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등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말 기준 전체(공공체육시설과 사설체육시설을 모두 포함) 스포츠강좌이용권 등록시설은 총 1만 8,324개소이며, 등록된 공공체육시설은 전체 체육시설 1만 8,324개소 대비 1,200개소로 약 6.5%를, 등록된 사설체육시설은 전체 체육시설 대비 1만 7,124개소로 93.5%를 차지하고 있다.

[등록된 공공체육시설 및 사설체육시설 비중(2023년 기준)]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런데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때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고려하면, 스포츠강좌의 수강은 공공체육시설에 개설된 강좌를 수강하는 것이 보다 저렴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저소득층 등이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공공체육시설에 개설된 스포츠강좌를 수강할 때도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생활체육시설 감면 규정]

법령	해당 조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3. (생략)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생략)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law/>>

저소득 유·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생활 스포츠에 참여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비용 문제이므로, 이를 위해서도 사용료가 무료이거나 저렴한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저소득 유·청소년 등의 스포츠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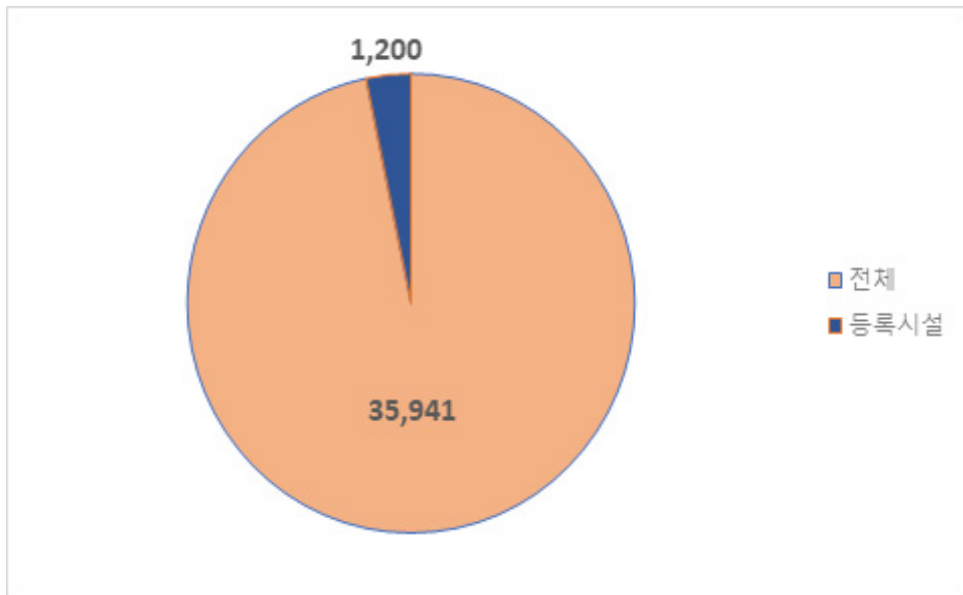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른 ‘2023년도 체육시설 이용률’을 살펴봐도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공공체육시설(28.3%)’이며, 해당 체육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로는 ‘거리상 가까워서(38.3%)’, ‘시설이용료가 무료 또는 저렴해서(30.9%)’ 등이 우선 순위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스포츠강좌를 이용하는 데 적합한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이면서, 접근성이 좋고, 시설이용료에 대한 부담이 적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스포츠강좌 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공공체육시설을 임대하여 스포츠강좌를 개설하는 경우 체육시설에 대한 별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강좌수강료에 체육시설 사용료가 포함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수강료를 보다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3년말 기준 공공체육시설 중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등록시설은 전체 시설(3만 5,941개)의 약 3.3%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각 지자체에서는 스포츠강좌 사업을 하려는 자가 스포츠강좌를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 유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공공체육시설 중 스포츠강좌이용권 등록시설 현황(2023년 기준)]

(단위: 개소)



주: 등록시설은 2023년말 기준임

자료: 문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둘째, 스포츠강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함으로써,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하여 다양한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하여 수강한 스포츠 종목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5종목을 각각 5년간(2019~2023년)의 평균값으로 비교하면, 태권도가 54.6%로 가장 높고, 합기도 7.8%, 복싱 3.6%, 헬스 2.0% 등이 그 뒤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기준 스포츠강좌이용권 종목 중 태권도 종목을 수강한 자는 45.2%로, 2019년에 62.3%를 차지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 스포츠 종목에 비하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률이 비교적 높았던 ‘태권도, 합기도, 헬스, 복싱’ 등의 특징은 대부분 고가의 스포츠 용구가 필요하지 않거나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수강이 가능한 종목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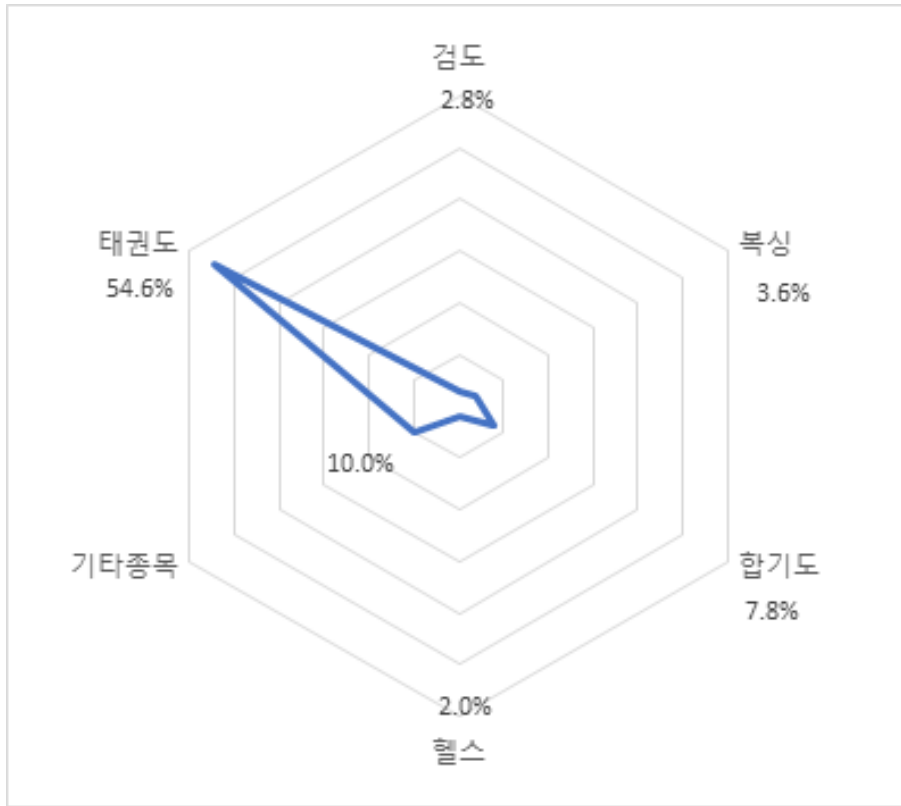
하지만 ‘골프, 승마, 야구, 스쿼시’ 등의 종목은 고가의 스포츠용품을 별도로 구매해야 하거나, ‘야구, 축구, 수영장, 인라인스케이트’ 등 대부분 사설체육시설에서 강좌가 이루어지는 스포츠강좌는 별도로 체육시설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들은 경제 사정이 그리 좋지 않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스포츠강좌이용권³⁴⁾’ 지원금을 포함한 자비를 들여 강좌를 수강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댄스, 에어로빅, 발레, 필라테스’ 등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스포츠강좌 종목들로 유·청소년들이 해당 종목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의 경제적 수준, 해당 연령대 등에 맞는 스포츠강좌 종목을 발굴·제공하거나 또는 스포츠 용구 임대 지원을 검토하는 등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보다 다양한 스포츠강좌 종목을 개설함으로써, 태권도, 합기도, 권투 등 투기 종목 위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강좌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34) 2024년도 기준 저소득층 유·청소년에 대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액은 월 10만원임

[최근 5년간 스포츠강좌이용권 주요 종목 이용률 평균(2019~2023년)]



주: 1. 기타종목 : 무에타이, 사격, 점핑, 주짓수, 줄넘기, 커브스, 클라이밍, 특공무술 등
 2. 이용률 평균: 2019~2023년까지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가장 많이 이용한 종목의 5년간 평균값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학교체육 육성사업 분석

문체부 소관의 ‘학교체육 육성’ 단위사업에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지원’ 등 2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이는 모두 교육부 소관의 ‘학교체육’과 연계되어 수행된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사업은 전국의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여 정규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방과 후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도하게 하는 등 초등학교 체육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토요 휴업일과 방과 후에 학생들의 스포츠나 레저활동의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청소년의 체력 강화와 건전한 여가 선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교체육 육성사업 관련 예·결산 현황('19년~'24년)]

(단위: 백만원, %)

연도	사업명	계획현액 ¹⁾ (A)	집행액 ²⁾	실집행액 ³⁾ (B)	집행률 (B/A)	불용액등 ⁴⁾ (A-B)
'19 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11,817	11,506	11,413	96.6	404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24,598	24,598	24,533	99.7	65
	소계	36,415	36,104	35,946	98.7	469
'20 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11,586	11,586	11,384	98.3	202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15,098	15,098	14,842	98.3	256
	소계	26,684	26,684	26,226	98.3	458
'21 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11,662	11,661	11,533	98.9	129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20,751	20,751	18,631	89.8	2,120
	소계	32,413	32,412	30,164	93.1	2,249
'22 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11,682	10,642	10,588	90.6	1,094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19,467	19,467	19,408	99.7	59
	소계	31,149	30,109	29,996	96.3	1,153
'23 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10,451	10,445	10,413	99.6	38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19,967	19,967	19,926	99.8	41
	소계	30,418	30,412	30,339	99.7	79
'24 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5,351	-	-	-	-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14,090	-	-	-	-
	소계	19,441	-	-	-	-

주: 1) 계획현액: 정부 계획액(당초)에 추경예산, 전년도 이월액 등을 모두 반영한 금액

2) 집행액: 정부가 집행한 금액(사업시행주체에 교부한 금액 포함)

3) 실집행액: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시·도교육청, 대한체육회 등)이 정부가 지원한 보조금을 실제 집행한 금액 등

4) 불용액, 차년도 이월액 등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로 학교체육과 관련된 대부분 사업은 「학교체육 진흥법」을 근거로 교육부와 각 지방교육청³⁵⁾ 주관으로 수행되며, 문체부는 이와 연계하여 학교체육 사업을 보조·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³⁶⁾에 따라 ‘학교체육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체육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모든 학생이 체육활동을 통하여 ‘공감·배려·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길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체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방안³⁷⁾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학교체육활성화 기본계획’을 추진·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체육활성화 특별교부금’을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고 각 교육청은 이를 집행한다.

‘학교체육활성화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는 ‘학교체육교육 운영 활성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다각화’, ‘학생 선수(체육 인재)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강화’, ‘교원과 체육지도자 전문역량 강화’ 등이 있으며, 2023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특별교부금 528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다.

35) 학교체육과 관련된 사업은 교육부 소관 사업이며,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만 기술하였음

36)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37) ‘2023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2023. 4. 10. 교육부)

[최근 3년간 학교체육 활성화 기본계획상 주요 추진과제 및 특별교부금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주요 추진과제 ^{주)}	특별교부금
2021년	학교체육교육 내실화	5,950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운동하는 모든 학생)	5,000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지원	-
	학교체육 네트워크 운영 및 인식 개선	-
소계		10,950
2022년	학교체육교육 운영 내실화	3,346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체계화 및 질 제고	9,249
	자기주도적 미래형 체육인재 육성	296
	교원 및 체육지도자 전문역량 강화	-
	학교체육 관리 체계(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
소계		12,891
2023년	학교체육교육 운영 활성화	28,205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다각화	22,090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강화	1,268
	교원 및 체육지도자 전문역량 강화	1,300
	학교체육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운영 강화	-
소계		52,863

주: '학교체육 활성화 기본계획' 상 주요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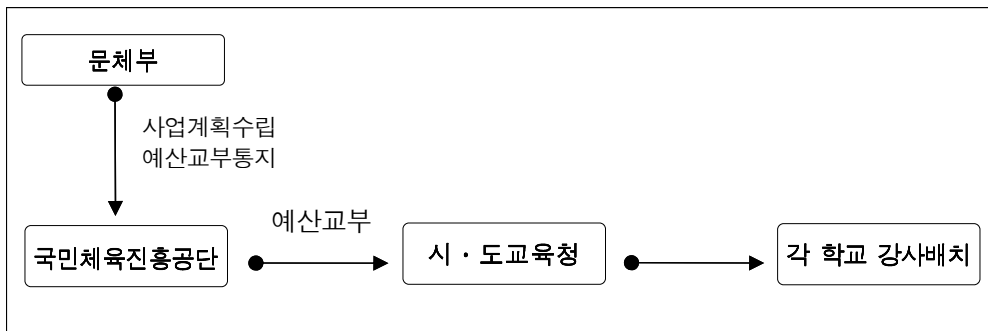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1)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분석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2015년 2,408명에서 2023년 1,657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초등학교 체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스포츠강사가 감소하는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세부사업은 초등학교의 남자 교사 부족, 교사의 업무과다 등으로 인해 학교체육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작된 사업이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사업이 처음 시행된 2008년 2학기에는 문체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지원예산 전액을 보조하였지만, 2013년에는 각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보조 비율이 30%로 축소되었다. 이후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동 보조율이 20%로 축소되었으며, 2024년에는 보조율이 10%까지 하락하는 등 지속적인 하락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사업 집행 절차]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이와 관련하여 ‘2023 보조사업 연장평가³⁸⁾’에 따르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사업은 2025년부터 시·도교육청의 수요 감소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을 재설계하여, 높은 수준의 감축과 지역 간 차이 완화, 특수학교 배치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고 있어 앞으로도 관련 예산을 계속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8) 기획재정부, “2023 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23. 9.

한편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³⁹⁾ 중에서 「학교체육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임용할 수 있으며,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스포츠강사를 재임용할 시에는 강사로서 자질이나 복무 태도, 학생의 만족도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을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관련 법령 규정]

법령	주요내용
「학교체육 진흥법」	제13조(스포츠강사의 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① 초등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스포츠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②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강사로서의 자질 2. 복무 태도 3. 학생의 만족도
「국민체육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청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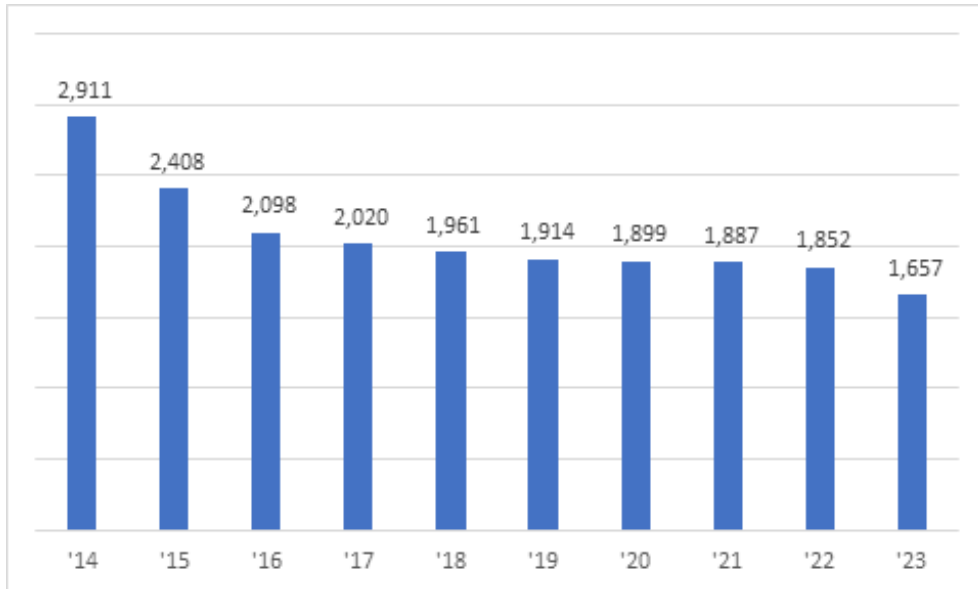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law/>>

39)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청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를 말함.

최근 10년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인원 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911명이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2015년에 들어 2,408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2016년 2,098명부터 2023년 1,657명까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인원 변동 추이('14년~'23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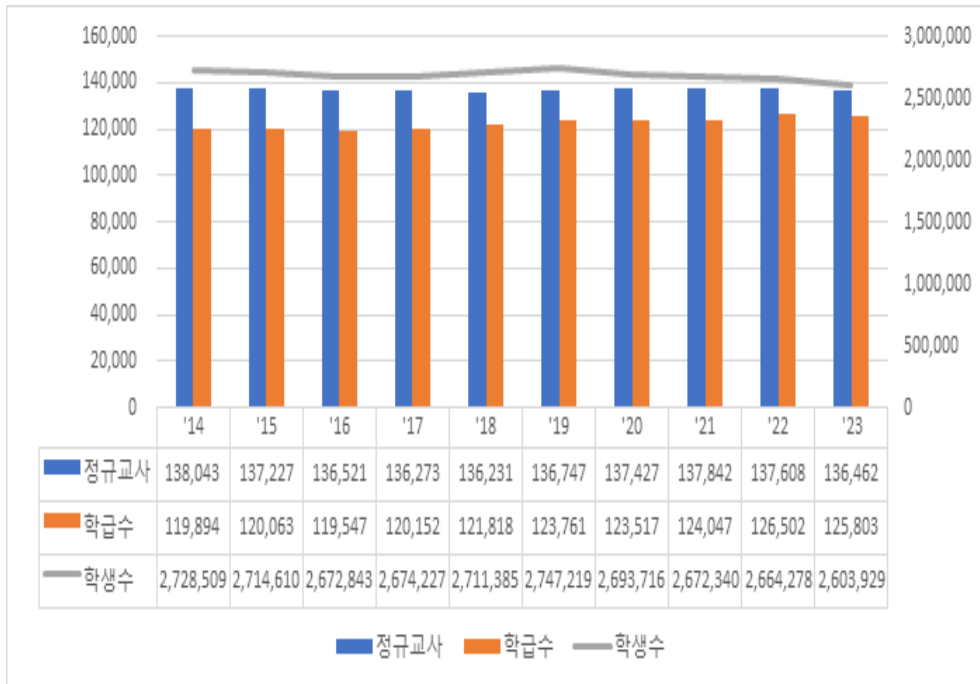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참고로 최근 10년간 초등학교 정규교사, 학급수 및 학생수 변동 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정규교사는 2014년 138,043명에서 2023년에는 136,462명(2014년 대비 1.1% 감소)으로, 학생수는 2014년 272만 8,509명에서 2023년 260만 3,929명(2014년 대비 4.6% 감소)으로 각각 감소하였다. 반면에 초등학교 전체 학급수는 2014년 11만 9,894개에서 2023년 12만 5,803개로 오히려 증가(2014년 대비 4.9% 증가)하였는바, 학생 수의 감소가 정규 체육수업을 지원하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정규교사, 학급수 및 학생수 변동 추이('14년~'23년)]

(단위: 명, 개)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및 KESS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s://kess.kedi.re.kr>)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되었음에도 지자체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에 집행한 금액이 오히려 하락하는 이유는 스포츠강사의 재임용 포기, 일부 시·도교육청의 스포츠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에 따라 정부가 지자체(시·도교육청)에 교부한 보조금의 실효행률을 살펴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하기 이전인 2019년도에는 96.6%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에는 98.3%, 2021년 98.9%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이 사라진 2022년에는 오히려 90.6%로 실효행률이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스포츠강사 본인의 재임용 포기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하여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⁴⁰⁾이다.

40)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23 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2023. p.706.

2023년도 실집행률은 99.7%로 2022년 90.6%보다 9.1%p 상승하였지만, 이는 2023년도 예산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 집행액은 2022년 105억 8,800만원 대비 1억 7,500만원이 감소된 104억 1,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19년~'24년)]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현액 (A)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시·도교육청)						
		교부액 ¹⁾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B)	실집행액 ²⁾ (C)	실집행률 (C/A)	이월액 (D)	불용액 (B-C-D)
'19	11,817	11,506	-	11,506	11,413	96.6	-	93
'20	11,586	11,586	-	11,586	11,384	98.3	-	202
'21	11,662	11,661	-	11,661	11,533	98.9	-	128
'22	11,682	10,642	-	10,642	10,588	90.6	-	54
'23	10,451	10,445	-	10,445	10,413	99.7	-	6

주: 1) 정부가 사업 시행 주체인 지자체(시·도교육청)에 교부한 금액

2) 사업시행주체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는 데 실제 집행한 금액 등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감소는 초등학교 체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는 스포츠강사가 감소하는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스포츠강사를 학교로 유인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분석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지원’⁴¹⁾사업은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 휴업일에 초·중·고등학생들의 스포츠활동과 여가 선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토요일 스포츠 강습 등을 지도하는 스포츠강사의 배치를 지원하며, 정부가 대한체육회와 시·도(시·군·구) 체육회에 지원금을 보조하는 방식(보조율 100%)으로 수행된다.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은 실력이 우수한 체육강사가 전문적인 체육시설에서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동 프로그램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나 학부모 등의 만족도⁴²⁾가 매우 높은 편이다.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수업 참여자의 누적 출석수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며, 코로나-19 기간에는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된 현재까지 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 최근 10년간(2014년~2023년) 시행된 주말체육 프로그램 수업 운영현황을 보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4년에는 271만 7천여 누적 출석수⁴³⁾를 기록하였고, 2015년에는 정점인 334만 2천여 누적 출석수를 기록하였다.

그 이후에는 2019년도의 234만 2천여 누적 출석수까지 대체로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2019년 누적 출석수 대비 약 85%가 감소한 35만 7천여 누적 출석수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에는 102만 1천여 누적 출석수를, 2022년에는 126만여 누적 출석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시작 당시 크게 하락하였던 누적 출석수 추이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듯하였다.

하지만 2023년에는 여전히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30만 2천여 누적 출석수를 기록하고 있어 코로나 이전 시기의 누적 출석수를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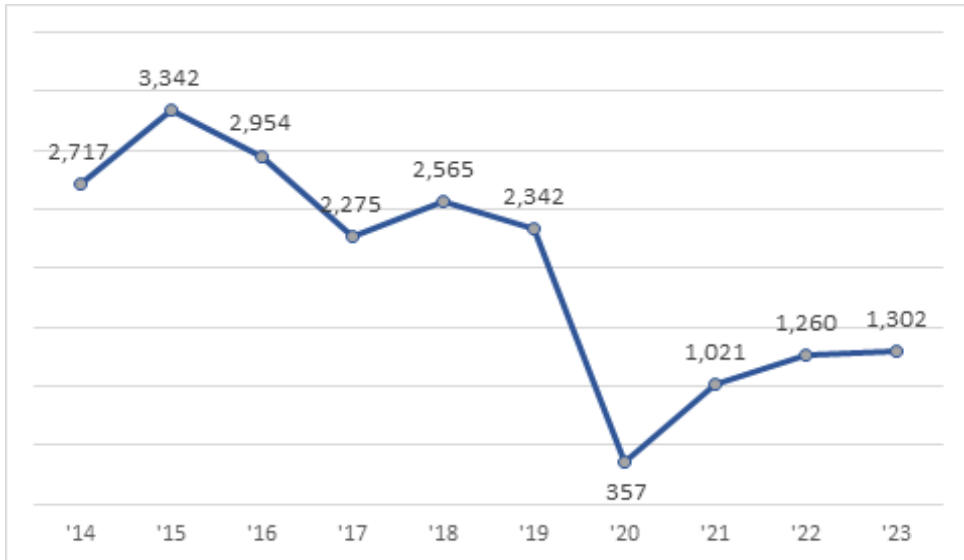
41) 2024회계연도부터 ‘방과 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음

42) 대한체육회,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만족도 조사”, 2023. 10.에 따르면, 주말체육학교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총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중 117명이 응답) ‘인기가 높다’는 의견 95.7%, ‘주말체육학교를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95.7%, ‘주말체육학교를 계속 재참여할 의사가 있다’ 98.3%,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는 99.1% 등으로 나타났다

43) 1명의 참여자가 1회 이상 출석한 수업을 모두 합산한 개수를 말하며, 2014~2020년도는 누적 참여자 수 기준으로만 실적조사가 이루어졌음

[최근 10년간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수업 누적 출석수 변동추이]

(단위: 천명)



주: 1. 누적 출석수란 1명의 참여자가 1회 이상 출석한 수업(학교안과 학교밖의 주말체육 프로그램 수업을 모두 포함)을 모두 합산한 것을 말함.

2. 2014~2020년도는 누적 참여자 수 기준으로만 실적조사가 이루어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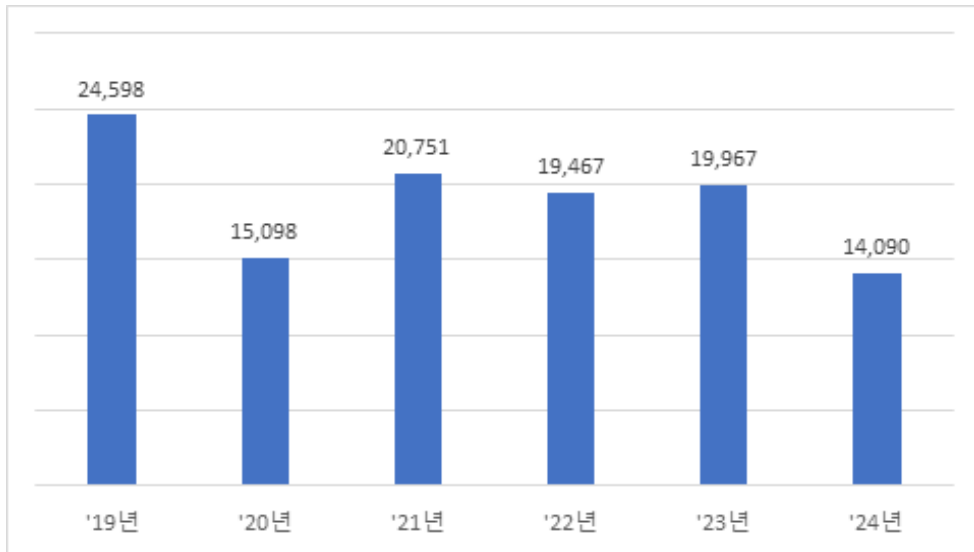
자료: 대한체육회 관리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같은 참여자 감소 추이에 따라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예산 규모도 다음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에는 245억 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150억 9,800만원으로 예산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고, 2024년에는 14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다.

비록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수업의 참여자 수에 따라 연동하여 동 사업의 예산 규모가 변동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 해당 예산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지원예산 규모 현황('19년~'24년)]

(단위: 백만원)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첫째, 사업 규모의 축소 추이를 고려할 때 문체부의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타 부처의 목적이 유사한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 사업이 지금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문체부의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민간보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 사업이다.

‘2022 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에 따르면 동 사업에 대한 효과성, 필요성 부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사업목표 달성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결과 보고⁴⁴⁾가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수혜자가 중복되는 정부 부처의 사업으로는 문체부 소관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교육부 소관의 ‘방과 후 학교’ 및 여가부 소관의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의 공통된 주요 목적은 ‘정규 수업 이외의 방과 후 학습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청소년 등의 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다.

44)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22 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2022. 9월, pp. 1,189 ~ 1,195

이러한 사업들을 각각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체부의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경우 현재 주말인 토요일 방과 후에 체육수업을 운영하고,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은 주중 정규체육 시간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주중 방과 후에도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도하는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스포츠강사를 중심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유사한 면이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방과 후 학교’, 여가부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사업도 주중의 방과 후나 주말, 방학에도 운영되는 사업이므로 이처럼 사업의 내용이 유사하거나 수혜자가 중복되는 각 부처의 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유사한 타 부처의 정책사업]

사업명	소관 부처 (운영 주체)	사업대상	운영시간	사업내용
신나는 주말체육프 로그램 지원	문체부 (대한체육회 등)	초·중·고등학생	주말(토요일)	토요 휴업일에 학생들의 스포츠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기 위하여 스포츠강사를 배치·지원
초등학교 스스포츠강 사 배치지원	문체부 (대한체육회 등)	초등학생, 특수학교학생	주중 정규 체육시간 및 방과 후	전국의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정규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방과 후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도
방과 후 학교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교육부 (각 학교)	초·중·고등학생	주중 방과후 및 주말·방학 등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정규 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
청소년방과 후 활동지원 (체육 관련 학습)	여가부 (자자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3)	주중·주말 방과 후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기반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지원, 전문체험 활동, 학습 프로그램 등 종합서비스 제공

자료: 문체부·교육부·여가부 등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학교안에서 개설되는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 확보나 체육시설로의 이동 문제가 용이한 반면, 학교밖에서 개설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외부 체육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최근 학교안 프로그램이 감소 추세인데, 학교안과 학교밖 프로그램 각각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교 내에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참여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동 체육프로그램의 수업도 계속 축소되고 있으며, 특히 학교안에서 실시되는 체육수업이 학교밖 수업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10년간(2014년~2023년)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수업 수에 대한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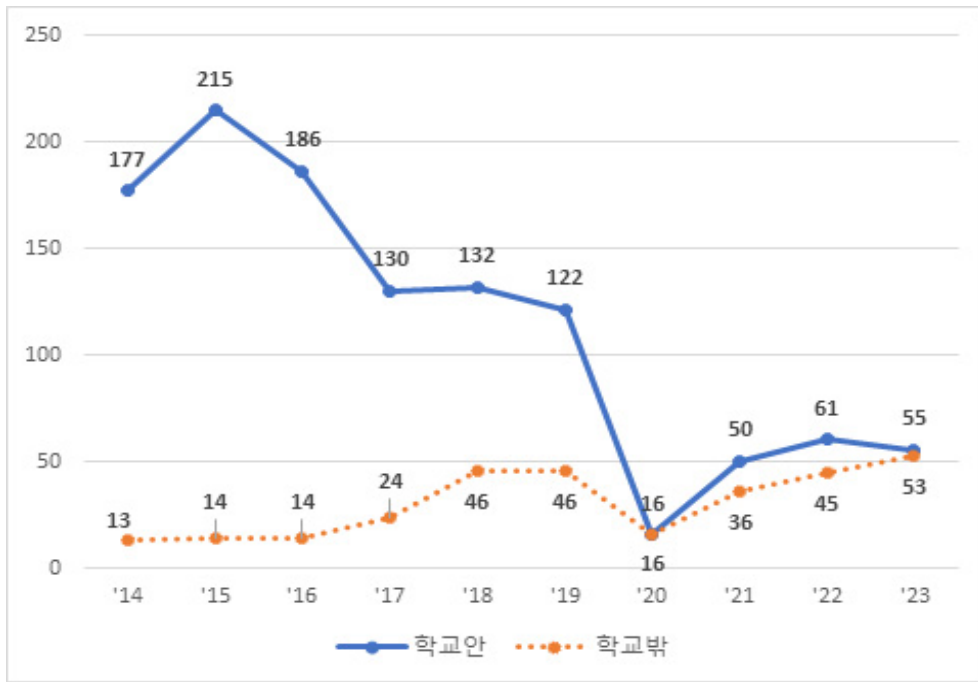
학교안에서 시행되는 동 체육프로그램의 수업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4년에 17만 7천여 개가, 2015년은 21만 5천여 개가 각각 개설되었으나, 2019년은 12만 2천여 개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후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에는 동 체육프로그램의 수업 수가 1만 6천여 개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된 2023년 수업의 개수는 5만 5천여 개로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밖의 동 체육프로그램 수업은 2014년 1만 3천여 개가 개설된 이후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만 4천여 개로 큰 변동이 없다가 2017년에는 2만 4천여 개가,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4만 6천여 개가 개설되는 등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후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1만 6천여 개로서 일시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2023년에는 5만 3천여 개의 수업이 개설되는 등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여 점진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학교안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수업이 학교밖 수업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학교안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체육관이나 운동장 등 학교시설의 사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에 한계가 있고, 주말에 학교를 개방하여 체육수업을 개설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 학교밖 주말체육 수업의 경우 학교안보다 다양한 종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갈수록 증가하는 학생들의 니즈(needs)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기 때문⁴⁵⁾이다.

[최근 10년간 주말체육프로그램 수업 개수 증감현황]

(단위: 천개)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참고로 최근 10년간('14년~'23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⁴⁶⁾ 중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체육수업 개수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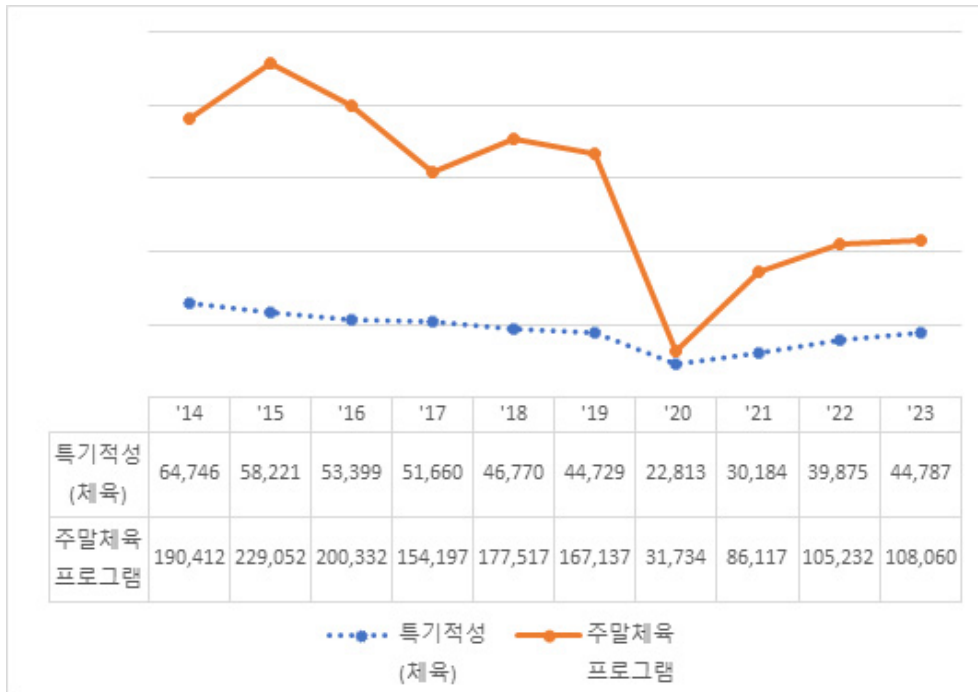
방과후학교 체육수업은 2014년 6만 4,700여 개가 개설된 이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만 8,200여 개부터 4만 4,700여 개까지 완만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후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2만 2,800여 개로 급격히 수업 개수가 하락한 이후 2023년에는 4만 4,800여 개가 개설되는 등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체육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 체육수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주말체육 프로그램의 감소 폭이 큼을 알 수 있다.

45) 문체부 답변자료에 따름

46) 공교육의 역할을 늘리고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교과 프로그램(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교과 관련)과 특기적성 프로그램(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등 특기적성 관련)으로 구분됨

[최근 10년간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및 주말체육 프로그램 증감현황]

(단위: 개)



주: 1. 특기적성(체육)이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업 중 체육수업의 수를 말함.(교육부 시행)

2. 주말체육수업은 학교안 및 학교밖에서 수행하는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수업 수를 말함.(문체부 시행)

자료: 교육부 및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한편,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수업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종목의 다양성을 살펴보기 위해 2023년말 기준 프로그램 종목과 참여자 수 등을 각각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개수의 경우 학교안은 2,022개로 전체 4,104개 대비 49.3%를, 학교밖은 2,082개로 전체 대비 50.7%를 차지하여 각 프로그램 수에 대한 비율상 차이는 1.4%p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의 수의 경우 학교안은 3만 8,060명으로 전체 9만 840명 대비 41.9%를, 학교밖은 5만 2,780명으로 58.1%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16.2%p의 차이가 있었다.

한편, 학교안과 학교밖에서 각각 운영하는 동 체육프로그램 종목의 수는 프로그램 수나 참여자 수에 비하면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교안에서 운영하는 종목은 모두 67종으로 전체 대비 35.3%, 학교밖에서 운영하는 종목은 123종으로 전체 대비 64.7%를 차지하여 두 개의 비중에 대해서는 29.4%p의 차이가 있어, 학교밖에서 운영하는 종목의 수가 학교안보다 약 1.8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교안과 학교밖의 프로그램 개수, 참여자 수 및 비율의 차이 등을 고려하더라도 운영 종목의 종류는 학교밖이 학교안보다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종목 및 참여자 수 비교 현황]

구분	운영 종목의 종류	프로그램 수	참여자 수
학교안(A)	67종(35.3%)	2,022개(49.3%)	38,060명(41.9%)
학교밖(B)	123종(64.7%)	2,082개(50.7%)	52,780명(58.1%)
전체(A+B)	190종	4,104개	90,840명

주: 1. 괄호 안은 전체 대비 비중

2. 2023년도 기준임

자료: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홈페이지 <<https://sat.sportal.or.kr/dcsc/common/Main.do>>, 문체부 제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재작성

2023년 기준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안 프로그램의 경우 ‘배드민턴, 축구, 뉴스포츠⁴⁷⁾, 배구, 농구’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일정 공간만 있으면 별다른 스포츠 용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행이 가능한 종목들이다. 반면에 학교밖 프로그램은 ‘볼링, 탁구, 수영, 골프, 클라이밍’ 등의 비중이 상위권에 속해 있는데, 이러한 스포츠 종목들은 특정 시설이나 특정 스포츠 용구가 필요한 종목들이다.

특히 수영 종목의 경우 학교밖 체육 프로그램에서는 운영 수의 비율이 6.72%로 3위를 차지하고 생존수영의 경우 0.19%로 64위를 차지한 반면, 학교안 주말체육학교 프로그램의 경우는 수영과 관련된 종목이 순위권에 들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학교안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수업의 경우 진행이 비교적 쉽고, 특정 시설이나 용구가 필요 없는 종목을 위주로 이루어지

47) 올림픽이나 국제경기에서 행해지고 있는 축구, 야구, 농구 등 메이저 스포츠가 아닌 모든 국민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스포츠

는 반면, 학교밖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수업은 특정 스포츠 시설이나 용구 등을 이용하는 종목이 많은 측면이 있다.

[학교안 및 학교밖의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개설에 대한 장단점 비교]

구분	학교안	학교밖
장점	- 학교안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안전성이 확보됨 - 근처 학교에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학생들의 이동이 용이함	- 다양한 외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 다양한 종목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함 - 학생들의 다양한 니즈(needs)를 충족할 수 있음
단점	- 체육관이나 운동장 등 학교시설의 사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에 한계가 있음	- 학교밖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학교안 보다 안전성 문제가 취약할 수 있음 - 방과후 학교, 각종 돌봄사업에는 적합하지 않음
주요 종목	배드민턴, 축구, 뉴스포츠, 배구, 농구	볼링, 탁구, 수영, 골프, 클라이밍 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처럼 학교안과 학교밖의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을 서로 비교하면 각각 장단점이 있다. 학교안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 확보나 체육시설로의 이동 문제가 용이하여 ‘방과후 학교’, 각종 ‘돌봄 사업’ 등에 적합한 측면이 있으나 주말체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학교밖’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 확보, 이동 등이 쉽지 않아 ‘방과후 학교’ 사업 등과 연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다양한 외부 체육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설이 용이하여 학생들의 니즈(needs)를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학교안 주말체육프로그램을 통해 안전성과 종목의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 하지만 학교안과 학교밖 중 어느 한 곳에 주말체육프로그램 개설을 집중하기 보다는 각각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 학교 내에 다양한 스포츠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2023년말 기준)]

(단위: 개, %)

연 번	학교안			학교밖		
	스포츠종목	운영수	비율	스포츠종목	운영수	비율
	합계	2,002	100	합계	2,082	100
1	배드민턴	483	24.13	볼링	177	8.5
2	축구	259	12.94	탁구	155	7.44
3	뉴스포츠(기타)	207	10.34	수영	140	6.72
4	배구	204	10.19	골프	112	5.38
5	농구	162	8.09	배드민턴	96	4.61
6	피구	135	6.74	축구	78	3.75
7	풋살	95	4.75	방송댄스	77	3.7
8	티볼	83	4.15	테니스	75	3.6
9	탁구	79	3.95	농구	69	3.31
10	플로어볼	41	2.05	풋살	67	3.22
11	넛볼	25	1.25	클라이밍	64	3.07
12	플라잉디스크	23	1.15	음악줄넘기	55	2.64
13	킨볼	15	0.75	복싱	53	2.55
14	학교체육(기초체력 등)	12	0.6	승마	51	2.45
15	핸드볼	11	0.55	검도	47	2.26
16	육상	10	0.5	태권도	38	1.83
17	족구	10	0.5	인라인스케이팅	38	1.83
18	음악줄넘기	10	0.5	유도	30	1.44
19	치어리딩	10	0.5	점핑피트니스	28	1.34
20	방송댄스	10	0.5	야구	27	1.3
21	씨름	8	0.4	요가	27	1.3
22	야구	7	0.35	필라테스	27	1.3
23	골프	7	0.35	펜싱	23	1.1
24	줄넘기	7	0.35	스쿼시	22	1.06
25	테니스	6	0.3	스크린골프	22	1.06
26	프리테니스	6	0.3	당구	21	1.01
27	유도	5	0.25	k-pop댄스	20	0.96
28	호신술	5	0.25	발레	19	0.91
29	헬스	4	0.2	합기도	18	0.86
30	매직테니스	4	0.2	줄넘기	18	0.86
31	에어로빅	3	0.15	바둑	16	0.77
32	양궁	3	0.15	플라잉요가	16	0.77
33	특수체육	3	0.15	수상스키	14	0.67
34	외발자전거	3	0.15	트램폴린	14	0.67

(단위: 개, %)

연 번	학교안			학교밖		
	스포츠종목	운영수	비율	스포츠종목	운영수	비율
35	연식야구	3	0.15	롤러	11	0.53
36	소프트발리볼	3	0.15	서핑	11	0.53
37	정구	2	0.1	양궁	11	0.53
38	보디빌딩	2	0.1	뉴스포츠(기타)	11	0.53
39	승마	2	0.1	배구	10	0.48
40	태권도	2	0.1	스키	10	0.48
41	인라인스케이팅	2	0.1	헬스	10	0.48
42	소프트볼	2	0.1	바른성장체조	10	0.48
43	럭비	2	0.1	정구	9	0.43
44	스포츠스태킹	2	0.1	플라잉디스크	8	0.38
45	창작댄스	2	0.1	에어로빅	8	0.38
46	피클볼	2	0.1	주짓수	8	0.38
47	자전거	1	0.05	번지플라이	8	0.38
48	사격	1	0.05	스케이팅	7	0.34
49	궁도	1	0.05	사격	7	0.34
50	검도	1	0.05	피구	7	0.34
51	바둑	1	0.05	치어리딩	6	0.29
52	레슬링	1	0.05	자전거	5	0.24
53	롤러	1	0.05	요트	5	0.24
54	비보이댄스	1	0.05	매직테니스	5	0.24
55	태권무	1	0.05	족구	4	0.19
56	필라테스	1	0.05	궁도	4	0.19
57	레저복싱	1	0.05	씨름	4	0.19
58	레크리에이션	1	0.05	벨리댄스	4	0.19
59	스네그골프	1	0.05	킥복싱	4	0.19
60	츄크볼	1	0.05	라인댄스	4	0.19
61	바른성장체조	1	0.05	줄바댄스	4	0.19
62	주짓수	1	0.05	호신술	4	0.19
63	크로스핏	1	0.05	바른자세	4	0.19
64	점핑피트니스	1	0.05	생존수영	4	0.19
65	드론축구	1	0.05	코레오댄스	4	0.19
66	스케이트 보드	1	0.05	에어로빅힙합	4	0.19
67	근대 2종	1	0.05	보디빌딩, 컬링 등 56종	113	5.46

자료: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홈페이지 <<https://sat.sportal.or.kr/dcsc/common/Main.d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분석

체육지도자는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체육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 6종류가 있으며, 유형별 자격요건이나 체육 지도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상이하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세부사업 중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내역사업은 지자체별 생활체육 현장에 생활체육지도자를 고정 배치하여, 국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보조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생활체육지도자 관련 예·결산 현황('19년~'24년)]

(단위: 백만원, %)

연도	사업명	예산·기금 현액 ¹⁾ (A)	집행액 ²⁾	실집행액 ³⁾ (B)	집행률 (B/A)	불용액등 ⁴⁾ (A-B)
'19 년	생활체육지도자 양성(일반회계)	1,478	1,478	1,451	98.2	27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기금)	37,874	37,868	36,981	97.6	893
	소계	39,352	39,346	38,432	97.7	920
'20 년	생활체육지도자 양성(일반회계)	1,528	1,528	1,309	85.7	219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기금)	40,895	40,895	38,725	94.7	2,170
	소계	42,423	42,423	40,034	94.4	2,389
'21 년	생활체육지도자 양성(일반회계)	1,436	1,436	1,358	94.6	78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기금)	41,406	41,406	38,463	92.9	2,943
	소계	42,842	42,842	39,821	92.9	3,021
'22 년	생활체육지도자 양성(일반회계)	1,326	1,326	1,306	98.5	20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기금)	42,197	42,197	38,501	91.2	3,696
	소계	43,523	43,523	39,807	91.5	3,716
'23 년	생활체육지도자 양성(일반회계)	3,296	3,296	1,914	58.1	1,382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기금)	43,448	43,444	38,803	89.3	4,645
	소계	46,744	46,740	40,717	87.1	6,027
'24 년	생활체육지도자 양성(일반회계)	4,171	-	-	-	-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기금)	44,523	-	-	-	-
	소계	48,694	-	-	-	-

주: 1) 계획현액: 정부 계획액(당초)에 추정예산, 전년도 이월액 등을 모두 반영한 금액

2) 집행액: 정부가 집행한 금액(사업시행주체에 교부한 금액 포함)

3) 실집행액: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지자체 등)이 정부가 지원한 보조금을 실제 집행한 금액 등

4) 불용액, 차년도 이월액 등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나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법정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자격 증 종류별로 구분하면 ‘전문스포츠지도사(1·2급)’, ‘생활체육지도사(1·2급)’,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1·2급)’,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 6가지가 있다.

이러한 생활체육지도자는 매년 문체부에서 각 시·도에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각 시·도에서는 다시 시·군·구로 생활체육지도자 증원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국 각 지역의 생활체육지도자 정원을 배치한다.

[체육지도자의 종류 및 법령상 정의]

법령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 체육지도자: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 법정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정의)	- 스포츠지도사: 배드민턴, 수영, 태권도 등 법정 자격 종목에 대하여 전문 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2종) - 건강운동관리사: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 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 수행방법에 대하여 지도·관리하는 사람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배드민턴, 수영, 태권도 등 법정 자격 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유소년의 행동양식, 신체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배드민턴, 수영, 태권도 등 법정 자격 종목에 대하여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 - 노인스포츠지도사: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배드민턴, 수영, 태권도 등 법정 자격 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law/>>을 바탕으로 재작성

첫째, 일반·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의 정원 비중('23년 99.0%)보다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비중('23년 1.0%)은 매우 적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10대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47.9%로 전체 참여율 62.4%보다 낮은 점, 유소년기의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의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유소년이 수행하는 체육활동은 신체와 운동기능 발달은 물론 자아개념 형성, 협동·협력경험의 습득, 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특히 지도자를 수반한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생활체육 경험은 '스포츠 리터러시'⁴⁸⁾(Sports Literacy: 운동 소양)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소년 체육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에 비하면 유소년지도자의 배치 정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정부가 배치한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현황'을 보면, 일반지도자는 2019년 1,496명으로 시작하여 2023년 1,580명까지 5년 동안 전체 지도자 수 대비 약 55~56%를 차지하였고, 어르신지도자는 2019년 1,228명부터 2023년 1,192명까지 5년간 43~45%의 비중을 차지한 반면, 유소년⁴⁹⁾지도자 정원은 2019년 16명부터 2023년 28명까지 5년 동안 체육지도자 총원 대비 약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8) '스포츠리터러시'란 스포츠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잘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자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함.

49)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서는 '유소년'을 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정원 현황]

(단위: 명, %)

연도	일반		어르신		유소년		총원
	정원	비중 ¹⁾	정원	비중	정원	비중	
'19	1,496	54.6	1,228	44.8	16	0.6	2,740
'20	1,544	55.1	1,229	43.9	27	1.0	2,800
'21	1,561	55.8	1,212	43.3	27	1.0	2,800
'22	1,570	56.1	1,202	42.9	28	1.0	2,800
'23	1,580	56.4	1,192	42.6	28	1.0	2,800

주: 1) 총원 대비 일반생활체육지도자의 비중을 말함. 이하 어르신·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비중에도 동일 적용함.

1.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정원은 문체부에서 결정함

자료: 문체부 홈페이지 <<https://www.mcst.go.kr/kor/main.jsp>>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정원이 타 지도자에 비하여 매우 적은 이유는 유소년에 대한 체육 지도가 정규 수업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만 가능하고, 유소년의 특성상 체육 지도가 성인에 비하여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가 타 체육지도자에 비하여 지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⁵⁰⁾

또한 유소년은 학교체육, 방과 후 학원을 이용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체육수업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도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다만, '2023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2023년도 전체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62.4%이며, 이 중 10대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47.9%로 전 연령대 참여율 중 가장 낮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지자체와 지방체육회의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정원을 결정한다면 유소년은 앞으로도 생활체육 지도를 제공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50) 문체부 답변자료에 따름

실제로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정원이 부족한 관계로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 지도를 일반체육지도자가 대신해서 수행하는 경우⁵¹⁾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지도자와 일반체육지도자의 경우 지원 자격요건이나 시험과목 등이 상이하여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체육 육성사업’의 성과도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점, 유소년기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에서 방과 후에 공공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는 점, 공공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경우 사교육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점, 현재도 유소년생활체육지도자가 부족하여 일반체육지도자가 이를 대신 수행하는 사례도 있는 점을 종합 고려할 때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활체육 참여자 현황, 지역별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비율은 물론 지역적 안배 등을 고려하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정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각 지역에 배치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정원이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게 배분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국의 생활체육 참여자 대비 해당 지역의 생활체육 참여자 비율과 각 지역의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배치율,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1인당 담당하는 생활체육 참여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2023년 기준 생활체육 참여자 총 1,544만여 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인 서울특별시는 약 157만명(10.1%), 경기도는 약 190만명(12.3%), 인천광역시는 약 55만명(3.6%)에 해당한다. 수도권 외 지역 중에는 전남 약 155만명(10.1%), 경남 약 149만명(9.7%), 경북 약 137만명(8.8%) 등이다.

한편,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2,800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인 서울특별시는 343명(12.3%), 경기도 335명(12.0%), 인천광역시는 112명(4.0%)에 해당한다. 수도권 외 지역 중에서는 전남 257명(9.2%), 경남 256명(9.1%), 경북 251명(9.0%) 등이 있다.

51) 「생활체육지도자 운영규정」에 따라 ‘전환배치’할 수 있음

[2023년도 생활체육 참여자 수 대비 생활체육 지도자 현황]

(단위: 명, %)

지역	생활체육 참여자 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정원		생활체육지도자 1인당 생활체육 참여자 수(A/B)
	참여자(A)	비중 ¹⁾	지도자(B)	배치율 ²⁾	
서울	1,567,445	10.1	343	12.3	4,570
부산	748,400	4.8	123	4.4	6,085
대구	601,188	3.9	102	3.6	5,894
인천	548,437	3.6	112	4.0	4,897
광주	497,766	3.2	83	3.0	5,997
대전	590,360	3.8	95	3.4	6,214
울산	775,208	5.0	74	2.6	10,476
세종	80,010	0.5	23	0.8	3,479
경기	1,901,441	12.3	335	12.0	5,676
강원	1,110,652	7.2	197	7.0	5,638
충북	614,938	4.0	140	5.0	4,392
충남	931,740	6.0	189	6.8	4,930
전북	663,970	4.3	167	6.0	3,976
전남	1,554,522	10.1	257	9.2	6,049
경북	1,365,454	8.8	251	9.0	5,440
경남	1,491,961	9.7	256	9.1	5,828
제주	400,045	2.6	53	1.9	7,548
합계	15,443,537	100.0	2,800	100.0	5,516

주: 1) 2023년도 전국 생활체육 참여자 전체의 합계 대비 해당 지역의 생활체육 참여자 비율

2) 2023년도 생활체육지도자 총 배치 정원 대비 해당 지역에 배치된 정원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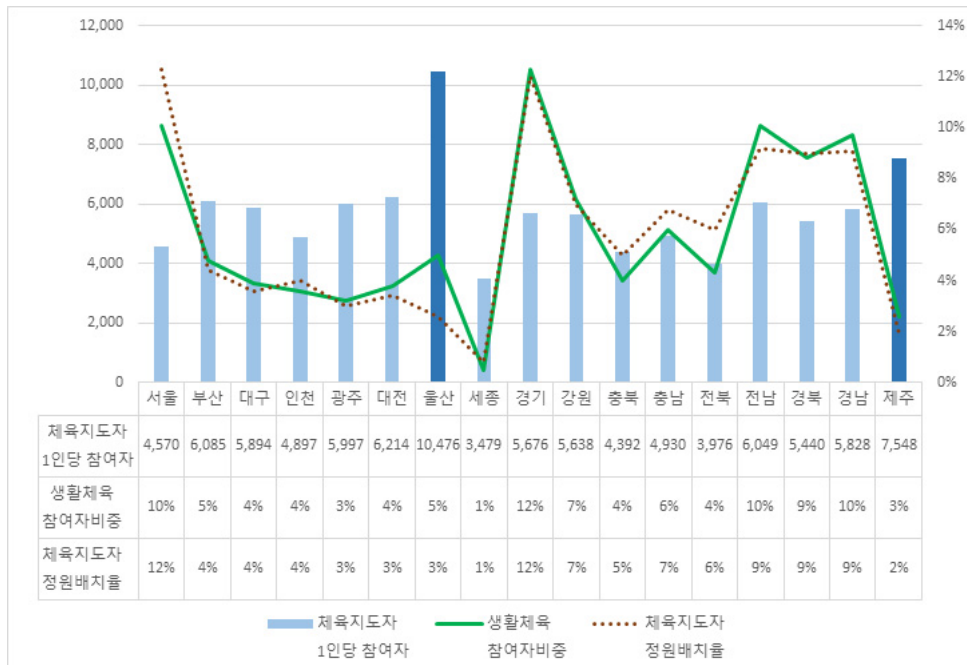
자료: 문체부, 통계청 KOSIS(국가통계포털)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도 생활체육 참여자 수 대비 각 지역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 정원을 각각 비교하면, 다음 그래프와 같이 각 지역의 생활체육 참여자 비중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정원 비율이 대체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록 생활체육지도자가 해당 지역의 모든 생활체육 참여자에 대하여 체육 지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배치는 생활체육 참여율과 생활체육지도자 1인당 할당받은 참여자 수 등을 고려하여 배치된 측면이 있다.

[2023년도 생활체육 참여자 수 대비 생활체육 지도자 현황]

(단위: 명)



- 주: 1. 2023년도 전국 생활체육 참여자 합계 대비 해당 지역의 생활체육 참여자 비율
 2. 2023년도 생활체육지도자 총 배치 정원 대비 해당 지역에 배치된 정원의 비율
 자료: 문체부, 통계청 KOSIS(국가통계포털)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다만, 생활체육지도자 1인당 생활체육 참여자 수가 울산광역시의 경우 1만 476명, 제주 7,548명으로 평균(5,516명)을 크게 상회하는 지역도 존재하고, 아울러 수도권 지역의 경우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인프라가 수도권 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생활체육지도자 정원의 배치를 수도권 지역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라. 스포츠클럽 육성사업 분석

「스포츠클럽법」 제2조는 ‘스포츠클럽’을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후 법정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클럽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스포츠클럽 지원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록스포츠클럽이 관할 시·군·구체육회에 순회지도자를 요청하는 경우 종목별 체육지도자 파견을 통한 전문적 체육 강습을 제공·지원하도록 하는 등 스포츠클럽의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스포츠클럽법」 상 스포츠클럽 관련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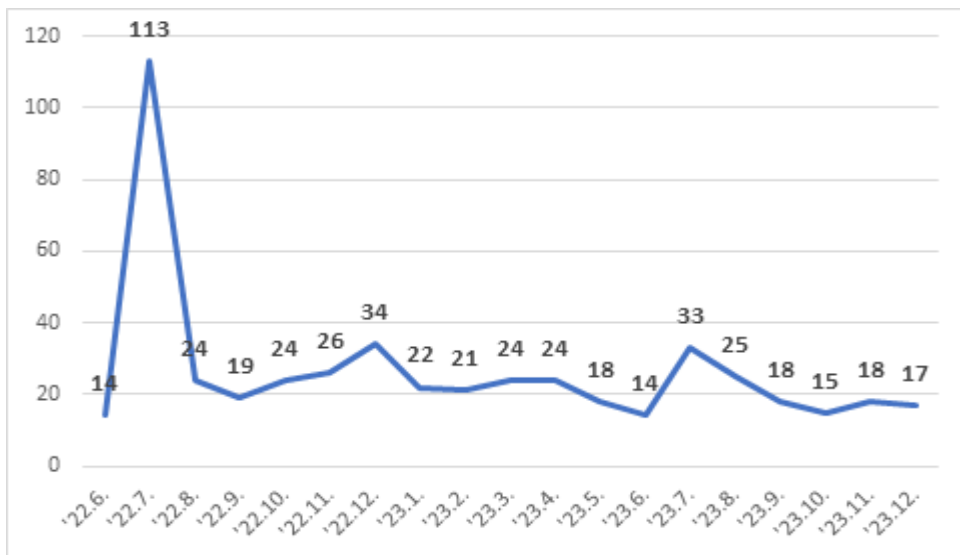
제목	주요 내용
제2조(정의)	- 스포츠클럽: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제5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문체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운영·의사결정에 관한 정관, 연간운영계획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수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등에게 등록 하여야 함
제12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음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 지자체는 스포츠클럽이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음
제16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할 수 있음
제18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문체부장관은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스포츠클럽회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law/>>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동안 ‘스포츠클럽’은 사설클럽, 동호회, 공공스포츠클럽 등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서로 폐쇄적으로 분리되어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 자원은 부족한 상황⁵²⁾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포츠클럽법」의 시행(2022. 6월)과 함께 그동안 법률상 근거 없이 활동하던 사설클럽, 동호회, 공공스포츠클럽 등을 법정 절차를 거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지정하고 이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스포츠클럽법」 시행 이후 스포츠클럽 등록 월별 현황('22.6. ~ '23.12.)

(단위: 개)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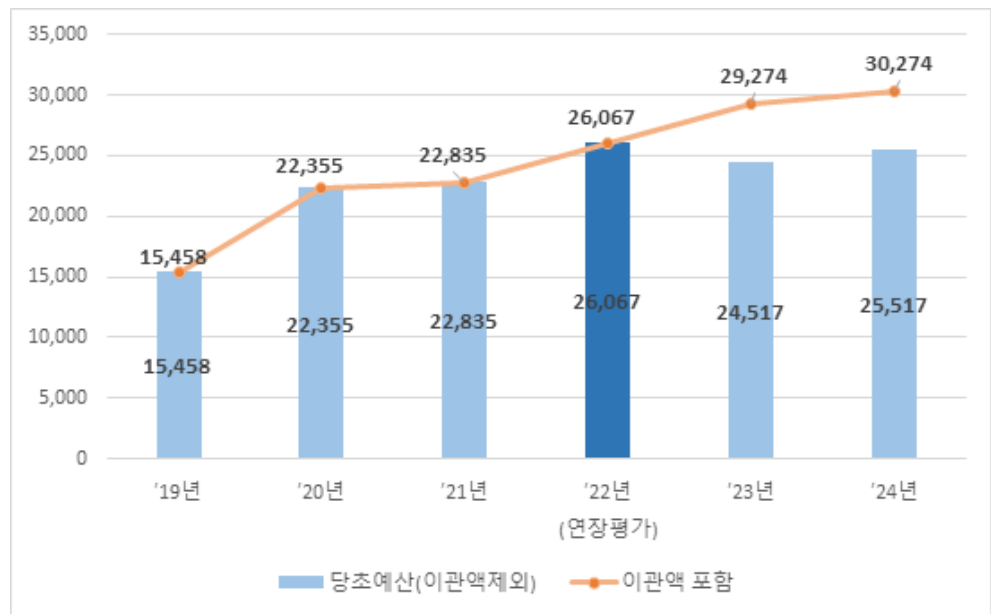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세부사업 중 ‘스포츠클럽육성’ 내역사업은 ‘다양한 연령·계층의 지역주민이 원하는 스포츠 종목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중심의 선진형 스포츠클럽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아 사업을 대행한다.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 예산의 규모는 2022년 260억 6,700만원, 2023년 292억 7,400만원, 2024년에는 302억 7,4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스포츠클럽법」의 시행(2022. 6.)에 맞춰 2023년부터 전문체육의 ‘주최단체지원(5261-317)’

52) 문체부, “제1차 스포츠클럽진흥 기본계획(2024~2028)”, 2023.12.27., p.2.

세부사업⁵³⁾에 편성되었던 ‘공공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 운영지원’ 예산 47억 5,700만원이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5161-301)’ 사업으로 이관·통합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관된 47억 5,700만원을 제외하면, 당초 ‘스포츠클럽 육성’ 예산은 2023년 245억 1,700만원, 2024년은 255억 1,700만원으로 연장평가⁵⁴⁾가 실시된 2022년 예산보다 사실상 감액되었다.

[최근 6년간 스포츠클럽육성 관련 예산 변동 추이(연장평가 전후)]
(단위: 백만원)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53) ‘전문체육육성’ 단위사업에 포함됨

54)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22 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2022. 9.

(1)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 대한 사후 조치 미흡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2022. 9.)’에 따라 지자체나 스포츠클럽도 일부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등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는 ‘스포츠클럽 육성’ 내역사업에 대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집행률이 저조했던 것을 적시하면서, “스포츠클럽육성 사업은 법령⁵⁵⁾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동시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자체는 물론 수혜자부담 원칙에 따라 스포츠클럽 회원도 함께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 하므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스포츠클럽 육성’ 관련 예산을 축소·편성하도록 주문하였다.

이와 함께 스포츠클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4년부터는 사업방식을 지자체가 수행하는 경상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자체 경비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국가와 지자체 및 민간부문(대한체육회) 간의 부담 비중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을 명시하였다.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지적된 스포츠클럽 육성사업 집행률]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기금액)	실집행액	집행률
’19년	15,458	11,622	75.2
’20년	22,355	14,766	66.1
’21년	22,835	15,793	69.2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조치에 따라 적어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이후 예산이 편성된 2024년부터는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의 수행방식을 개선하여 지자체 경비부담을 강화하고 정부의 지원을 감축하는 등 단계적인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지만, 동 조치에서 주문한 사업의 수행방식이나 대한체육회에 지원하는 보조율(100%)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나 변동 사항이 없어 보인다.

55) 「스포츠클럽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따라서 정부는 보고서에서 주문한 바와 같이 ‘지자체의 경비부담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스포츠클럽 회원의 회비를 통하여 경비를 충당’ 하게 하는 등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⁵⁶⁾ 이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6) 「20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 제22조(예산편성 및 기타 재정운용과의 연계)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 반드시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관련 조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야 하며, 보조사업과 관련한 기타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2)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 분석

분석에 앞서 ‘공공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공공스포츠클럽은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스포츠클럽 회원의 부담완화, 전문 지도자의 수준별 체육 프로그램 제공, 학교체육과 지역 생활체육 간 연계를 통한 스포츠활동 등을 수행한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통하여 스포츠클럽 회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다세대·다계층·다연령 회원들에게 전문 지도자가 다양한 종목이나 수준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창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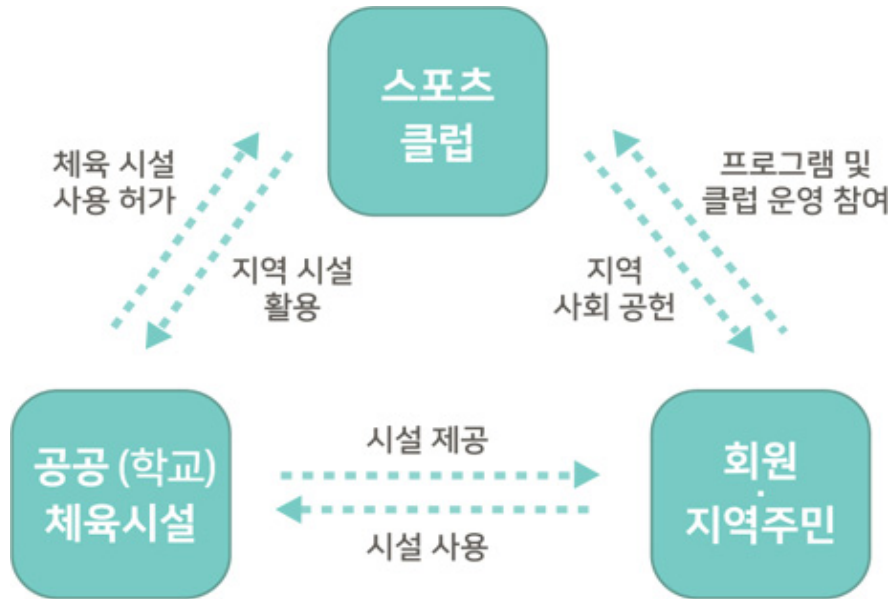
이와 함께 동 스포츠클럽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동시에 육성하며,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⁵⁷⁾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고 선수 출신 지도자 일자리 창출·지원 등을 위하여 전국 시·군·구 단위에 ‘공공스포츠클럽’의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스포츠클럽’은 학교체육이나 지역 생활체육과 연계함으로써 스포츠 접근성과 시설 이용의 편리함 등을 제공하고, 전문지도자를 구성하여 저렴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보장보험 가입으로 회원 안전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57)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국가 및 지자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 마련,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는 「스포츠클럽법」(2022.6.16. 시행, 법률 제18252호)이 제정·시행되면서 삭제·정비 되었음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운영 체계]



자료: '공공스포츠클럽 sports ON' 홈페이지 <<https://sportsclub.sports.or.kr/sports/index.do>>

공공스포츠클럽은 도시 인구, 스포츠 운영 종목의 수, 시설 규모 등에 따라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학교연계형'으로 구분되며, 예산도 공공스포츠클럽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다.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은 2013년에 시작하여 2021년에 종료되었는데, 2022년까지 기초 지자체인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의 스포츠클럽을 지정·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동 사업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지역 중심의 생활체육 활성화, 전문선수 발굴, 은퇴선수 등 체육인의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3년말 기준 우리나라 공공스포츠클럽은 모두 222개로 대도시형 68개, 중소도시형 54개, 학교연계형 100개가 있다. 이들 클럽은 지역의 인구 규모, 목표로 하는 회원 수, 회원 구성원의 종류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도시형(유형1), 중소도시형(유형2), 학교연계형(유형3)으로 구분하며, 이들이 운영하는 종목의 수도 대도시형의 경우 5종목 이상, 중소도시형은 3종목 이상, 그리고 학교연계형은 1종목 이상의 체육 프로그램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어야 한다.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은 최대 5년간 이루어지며, 대도시형 9억원, 중소도시형 6억원, 학교연계형 4억원이 각각 지원되고 있다. 참고로 사업이 종료된 2021년도에 마지막으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클럽은 대도시형 5개, 중소도시형 12개, 학교연계형 54개 등 모두 71개가 있으며, 동 스포츠클럽들은 2024년 현재에도 계속 지원을 받고 있다.

[공공스포츠클럽 현황(2023년말 기준)]

구분	대도시형(유형1)	중소도시형(유형2)	학교연계형(유형3)
클럽의 개수	68개	54개	100개
클럽의 정의	인구 20만명 이상 시·군·구 지역에서 700명 이상의 회원수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클럽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구 지역에서 500명 이상의 회원수를 목표로 하는 중소클럽	인구 규모와 상관없이 시·군·구 지역에서 회원의 50% 이상이 학생으로 구성되고 회원 수 250명을 목표로 하는 소규모 클럽
운영종목 수	5종목 이상	3종목 이상	1종목 이상
지원예산	최대 5년간 9억원 지원	최대 5년간 6억원 지원	최대 5년간 4억원 지원
시설	5종목 이상의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 확보	3종목 이상의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 확보	1종목 이상의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보
	- 공공체육시설 또는 학교 체육시설. 1일 최소 60% 이상 사용 시간 확보 - 법인 사무실 및 클럽하우스 조성		
지자체(교육청) 부담금	- 선정 후 2년 차부터 5년간 구성원 사업자 부담금(4대 보험 등) 및 퇴직 적립금,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함(필수, 공모 유형별 금액 상이)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https://www.sports.or.kr/index.do>)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 운동부와의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스포츠클럽이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프로그램의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같은 조에서는 문체부장관이 지정스포츠클럽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1차 스포츠클럽진흥 기본계획 (2024~2028)’의 3대 추진전략 중 ‘국민에게 친근한 스포츠클럽’의 일환으로 수행 되는 것으로, 2028년까지 350개의 지정스포츠클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정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은 민간이 자율로 추진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프로그램 등의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스포츠클럽을 지정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포츠클럽법」 중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근거 규정]

제목	해당 조문
제9조 (지정 스포츠 클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 의 연계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3.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프로그램의 운영 4. 장애인 선수의 육성 및 장애 유형과 정도, 성별 등의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프로그램의 운영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law/>>

‘공공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을 서로 비교하면, 먼저 법적 근거로는 공공스포츠클럽의 경우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운영된다. 지원 형태는 공공스포츠클럽의 경우 스포츠클럽이 설립된 초기에 클럽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우 이미 적정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한 후 해

당 클럽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밖에 공공스포츠클럽은 최대 5년간 4~9억원을 지원하는 등 스포츠클럽 자체에 대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나 지정스포츠클럽은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1개당 2,500만원을 지원하되, 연 1회의 프로그램 공모를 통하여 클럽당 최대 4개(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의 차이]

구분	공공스포츠클럽	지정스포츠클럽
목적	-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주민대상 지도자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스포츠클럽을 선정 후 운영비를 지원하여 육성함	- 민간에서 자율로 추진하기 어려운 공익 목적 사업(취약계층 프로그램 등)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스포츠클럽을 지정하여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지원 근거	-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주)}	- 「스포츠클럽법」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지원 형태	- 스포츠클럽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을 위한 운영비 지원	- 적정 인력·시설을 갖춘 클럽을 지정하여 공익목적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지원 금	- 5년간 4~9억원(지원내용: 사무국장, 지도자 등 인건비, 클럽 관리비 등) ※ 대도시형 9억, 중소도시형 6억, 학교연계형(한중목형) 4억	- 1개 프로그램당 2,500만원(지원내용: 프로그램 운영비) ※ 연1회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지원하며, 클럽당 최대 4개까지 지원
선정 현황	- '13년~'21년까지 총 236개 선정('23년말 현재 222개소 운영 중) ※ 14개 클럽 취소·운영종료	- '22년~'23년 총 107개 지정('23년말 현재 106개소 운영 중) ※ 1개 클럽 운영종료

주: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는 「스포츠클럽법」(2022.6.16. 시행, 법률 제18252호)이 제정·시행되면서 삭제·정비 되었음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첫째,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스포츠클럽 중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약 90%에 이르고 있는데,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스포츠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발굴·지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공공스포츠클럽’을 지정하여 도시 인구, 스포츠 운영 종목의 수, 시설 규모 등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였지만,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 신설된 이후로는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공익 목적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되고 있다.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대상 추이를 살펴보면, 기존 클럽 운영을 위하여 지원되는 2023년과 2024년도 예산은 각각 121억 2,000만원으로, 그중 2024년에 지원이 완료되는 ‘5년차’ 지원 대상 공공스포츠클럽의 경우 대도시형 7개 클럽, 중소도시형 4개 클럽, 학교연계형 63개 클럽이 있고, 2025년에 지원이 완료될 예정인 ‘4년차’ 지원 대상 스포츠클럽은 대도시형 13개 클럽, 중소도시형 8개 클럽, 학교연계형 36개 클럽이 있어서 이러한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은 향후 축소·종료될 예정이다.

반면,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대상은 2022년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될 당시에는 ‘지정스포츠클럽 특화프로그램 운영’ 항목으로 100개소가 편성되었고, 2023년에는 지원 대상 스포츠클럽이 120개소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에는 150개소가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 등 앞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공공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 지원사업 예산 편성 내역]

연도	공공스포츠클럽	지정스포츠클럽
'22년	○ 기존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13,170백만원 - 3년차 6,490백만원(대도시형 7클럽, 중소도시형 4클럽, 한중목형 63클럽) - 2년차 6,680백만원(대도시형 13클럽, 중소도시형 8클럽, 한중목형 36클럽)	○ 지정스포츠클럽 운영 9,600백만원(신규) - 지정스포츠클럽 특화프로그램 지원 9,000백만원(30백만원×3프로그램×100개소)
'23년	○ 기존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12,120백만원 - 4년차 6,490백만원(대도시형 7클럽, 중소도시형 4클럽, 학교연계형 63클럽) - 3년차 5,630백만원(대도시형 13클럽, 중소도시형 8클럽, 학교연계형 36클럽)	○ 지정스포츠클럽 운영 9,200백만원 - 지정스포츠클럽 특화프로그램 운영 9,000백만원(120개소×25백만원×3프로그램)
'24년	○ 기존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12,120백만원 - 5년차¹⁾ 6,490백만원(대도시형 7클럽, 중소도시형 4클럽, 학교연계형 63클럽) - 4년차 5,630백만원(대도시형 13클럽, 중소도시형 8클럽, 학교연계형 36클럽)	○ 지정스포츠클럽 운영 10,200백만원 - 지정스포츠클럽 특화프로그램 운영 10,000백만원(150개소×2백만원×12월×3프로그램)

주: 1)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최대 지원 기간은 5년임

1.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존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 대상 클럽은 각각 131개로 동일함

자료: 문체부의 '2023회계연도 결산', '202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23년 기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된 스포츠클럽은 모두 107개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그런데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았던 총 224개(2022년말 기준)의 스포츠클럽 중에는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가 2023년 기준으로 총 96개 클럽(지정스포츠클럽 중 8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스포츠클럽 중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된 클럽 현황]

(단위: 개, %)

공공스포츠클럽 ¹⁾ (A)	지정스포츠클럽 ²⁾ (B)	비중(A/B)
96	107	89.7

주: 1) '공공스포츠클럽' 중 '지정스포츠클럽'으로도 지정된 클럽의 개수

2) 2023년말 현재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된 클럽의 개수

자료: '공공스포츠클럽 sports ON' 홈페이지 <<https://sportsclub.sports.or.kr/sports/index.do>>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현재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은 「스포츠클럽법」 제9조, 동법 시행령 등에
서 규정하고 있다. 비록 ‘지정스포츠클럽’의 선정 기준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공공스포츠클럽’이 공익프로그램을 보다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강점을 고려하
더라도 약 90%에 이르는 ‘지정스포츠클럽’이 과거의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
었다는 것은 그 비율이 높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새롭게 지정할 때에는 신규로 등록된 스포츠클럽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공공스포
츠클럽’ 지원사업 목적이 스포츠클럽 초기 설립 당시 클럽 운영이 어려운 점을 보완
하고 스포츠클럽의 자립을 도와주는 데 있음⁵⁸⁾을 고려한다면, 이미 운영상태가 어
느 정도 양호한 스포츠클럽보다는 새롭게 설립·등록된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
포츠클럽’을 지정·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요건 관련 법령상 규정]

법령	관련 규정
「스포츠 클럽법」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 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 와의 연계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3.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스포츠 클럽법 시행령」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스포츠클럽을 지정스포 츠클럽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2. 그 밖에 지정스포츠클럽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서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58) 구정철, “스포츠클럽 정착을 위한 발전적 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2023. 11.

법령	관련 규정
「지정 스포츠 클럽 지정에 관한 고시」	제2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의 인증을 받은 단체일 것 2. 스포츠클럽회원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춘 것 3. 3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을 것 4.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1년 이상을 기한으로 하는 체육시설 위탁·사용·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5. 최근 1년 동안의 회비, 기부금, 후원금, 수익활동 등을 통한 자체수입의 비율이 총수입의 100분의 40 이상이거나 총지출 대비 총수입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6. 종목별 50명 또는 전체 1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다수준 회원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장애인 회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다. 7. 영 제6조의 기준에 맞는 지도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8. 회원 간 가입 조건이 다르지 않으며, 부당하게 회원을 차별하지 않을 것 9. 지정스포츠클럽으로서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law/>>

둘째, 지정스포츠클럽이 수행하는 ‘기초 및 비인기 종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문체부장관은 「스포츠클럽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기초 및 비인기 종목59)의 육성’을 위해 스포츠클럽을 지정·지원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시에는 없던 내용으로 기초·비인기 종목을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59) 기초·비인기 종목: 「스포츠클럽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

[공공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근거 규정]

공공스포츠클럽	지정스포츠클럽
「생활체육진흥법」 (법률 제13251호, 2015.3.27.)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법」 (법률 제18252호, 2021.6.15. 제정)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과「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3.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는 「스포츠클럽법」(2022.6.16. 시행, 법률 제18252호)이 제정·시행되면서 삭제·정비 되었음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law/>>

그런데 2023년 기준 ‘기초 및 비인기 종목’을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은 ‘공공스포츠클럽’이 48개소로 전체 클럽 222개소 대비 21.6%를, ‘지정스포츠클럽’은 28개소로 전체 클럽 106개소 대비 2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정스포츠클럽 내 기초·비인기 종목의 비중이 기존 공공스포츠클럽 내 비중과 큰 차이(4.8%p)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일부 인기 스포츠 종목에 편중된 전문체육에서 폭넓은 스포츠 종목을 육성하는 생활체육으로 스포츠정책을 전환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기초·비인기 종목 육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공공·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기초·비인기 스포츠 종목 현황]

구분	클럽 수 ¹⁾ (A)	기초 및 비인기 종목을 운영하는 클럽 수 ²⁾ (B)	기초 및 비인기 종목을 운영하는 클럽의 비율(B/A)
공공스포츠클럽	222개소	48개소	21.6%
지정스포츠클럽	106개소	28개소	26.4%

주: 1) 기초 및 비인기 종목을 포함한 공공스포츠클럽 또는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종목 전체

2) 기초 및 비인기 종목: 「스포츠클럽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

1.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종목 수(기초 및 비인기 종목 포함)는 총 66개,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종목 수는 총 55개임

2. 2023년말 기준임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

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분석

‘생활체육시설 지원’ 단위사업 중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세부(내역)사업은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전시설 강화, 노후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참여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예·결산 현황('19년~'24년)]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현액 ¹⁾ (A)	집행액 ²⁾	실집행액 ³⁾ (B)	집행률 (B/A)	불용액등 ⁴⁾ (A-B)
'19년	69,195	68,295	37,972	54.9	31,223
'20년	75,185	75,097	30,903	41.1	44,282
'21년	64,187	63,636	35,612	55.5	28,575
'22년	65,568	65,442	35,279	53.8	30,289
'23년	63,961	63,915	45,880	71.7	18,081
'24년	65,853	-	-	-	-

주: 1) 계획현액: 정부 계획액(당초)에 추경예산, 전년도 이월액 등을 모두 반영한 금액

2) 집행액: 정부가 집행한 금액(사업시행주체에 교부한 금액 포함)

3) 실집행액: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지자체)이 정부가 지원한 보조금을 실제 집행한 금액 등

4) 불용액, 차년도 이월액 등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체육시설은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와 선수훈련에 필요한 전문체육시설, 국민의 거주지에 근접하여 이용이 쉬운 생활체육시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체육시설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체육시설’은 경기대회의 개최, 기관의 업무,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운영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공공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⁶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종류]

구분	관련 규정
전문 체육 시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생활 체육 시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직장 체육 시설	제7조(직장체육시설) ①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 ¹⁾ 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주: 1) 상시 근무 직장인이 500명 이상인 직장을 대상으로 함

1.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설치목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방과 이용형태 등에 따라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의 용도로 혼재되어 이용되고 있는 시설이 다수임

자료: 문체부 홈페이지(<https://www.mcst.go.kr>)와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도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⁶¹⁾’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은 총 3만 5,941개소가 있다. 그중 체육관시설은 생활체육 765개소, 구기종목 524개소, 투기 종목 48개소 등 총 1,337개소가 있으며, 수영장 512개소, 마을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간이운동장은 2만 5,983개소가 있다⁶²⁾.

6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및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61) 문체부, “2023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2022년 12월말 기준)”, 2024.1.

62) 문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활체육시설이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함. 우리나라의 생활체육관 1개소당 사용자 수는 78,241명인데(‘20년 기준), 일본 9,819명(‘18년), 영국 29,960명(‘12년), 노르웨이 1,716명(‘10년), 덴마크 1,965명(‘10년) 등임
문체부, “공공체육시설 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 연구”, 2022.6.

[공공체육시설 현황(2022년 12월말 기준)]

(단위: 개소)

시설	체육관			수영 장	간이 운동장 ¹⁾	게이트 볼장	축구장	테니스 장	기타	계
	생활체육	구기종목	투기종목							
개소	765	524	48	512	25,983	1,968	1,109	873	4,159	35,941

주: 1) 마을체육시설 등을 포함함.

1. 2022년 12월말 기준임

자료: 문체부 홈페이지<<https://www.mcst.go.kr/kor/main.jsp>>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수영장 시설의 경우 노후화가 빠르고, 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 등으로 타 체육시설보다 개보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으나 「국민체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서는 수영장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 예산 규모를 시설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규정하고 있다.

수영장 시설은 수질 관리를 위한 물 교체, 소독약품, 정화 필터, 물탱크 등의 유지·보수 비용과 수영장 관리에 필요한 스포츠지도자, 안전요원 등에 대한 인건비, 그밖에 샤워장 수도 요금, 수영장 온도 유지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이 소요되는 등 타 체육시설보다 많은 유지비용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의 특성상 높은 습도를 유지하여 타 체육시설에 비하면 노후화가 빠르며, 이에 따른 개보수 비용도 타 체육시설에 비해 많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당장 개보수가 필요한 수영장에 대하여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해도 「국민체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영장 시설은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전체 비용의 30%⁶³⁾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령상 제한으로 말미암아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보수 비용을 마련해야 하나 재정 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지방비 미확보, 사업 취소 등으로 개보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⁶⁴⁾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⁶⁵⁾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국민체육진흥법」과 동법

63)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 대비 노후화된 시설의 경우 30%, 안전 관련 개보수의 경우 50%,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경우 70%까지만 지원이 가능

6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예·결산 현황(‘19년~’24년)’ 중 지자체가 실제 집행한 금액의 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음(실집행률 약 40~70%)

시행령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의 규모가 한정⁶⁶⁾되어 있고, 개보수 지원 비율 또한 개보수 사업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등 개보수에 필요한 실질 비용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측면⁶⁷⁾이 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예산편성·운용 관련 규정]

법령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 이 경우 개수·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하며, 지원 대상별 구체적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지원: 100분의 5 ② 법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65)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세부사업 예산을 말함.

66)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의 재원 마련에 대한 근거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수익금 5%를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그 한도를 지정하고 있음

67) 김일광·박성택·김미숙·박수선,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개선방안 : 국민체육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2020.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법령	주요내용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에 설치되어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1.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한 체육시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개수·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3.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보수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체육시설 ③ 법 제22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개수·보수에 사용되는 총 자원(용지 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개수·보수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자원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law/>>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국 공공수영장에 대한 개보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512개소 중 11개소(2.1%)가 지원받는 등 매년 3% 내외의 수영장이 지원을 받았다. 이처럼 전국 수영장 공공시설의 평균 3% 정도에 해당하는 시설이 매년 균일한 비율의 개보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시설의 성격이나 개보수의 시급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법령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규모나 개보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비율이 각각 정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공수영장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지원 현황('19년~'23년)]

(단위: 개소수, 건수, %)

연도	전국 수영장 공공시설(A)	개보수 지원 공공수영장 시설(B) ¹⁾		개보수 지원 사유 ²⁾		
		개소수	지원율(B/A)	노후화	안전 관련	장애인 관련
'19년	457	15	3.3	5	6	4
'20년	474	18	3.8	9	7	2
'21년	492	16	3.3	4	11	1
'22년	512	11	2.1	5	5	1
'23년	512 ³⁾	17	3.3	10	5	2
합계	2,447	77	3.1	33	34	10

주: 1) 전국 공공체육시설에서 운영·관리하는 수영장 시설 중 정부가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 수영장 개수
 2) 개보수 지원 사유 건수 중에는 중복으로 선택한 경우를 포함
 1. 보고서 작성 당시(2024년 4월말) 2023년도 전국 수영장 시설 집계 결과가 없어 2022년도 전국 수영장 시설 개수인 512개를 그대로 적용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로 최근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23~'27년)'⁶⁸⁾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을 이용하여 각 학교복합시설에 필요한 관리·운영비 일부를 교육활동에 활용되는 비율 등에 따라 차등 지원⁶⁹⁾할 계획이다. 따라서 공공수영장 시설에 대한 개보수 지원 방법도 이러한 방법을 응용하여 시설의 성격이나 개보수의 시급성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자체는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의 현실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022년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공체육시설 3만 5,941개소이며, 그중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간이운동장(마을체육시설) 2만 5,983개소를 제외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가 가능한 나머지 체육시설은 모두 9,958개소이다. 그리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체육시설 중 실제 사용료를 징수하는 체육시설은 2023년⁷⁰⁾말 기준 전

(68) 학교복합시설: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교육·돌봄, 문화·체육 등을 말하며, 2023~2027년간 기준 학교복합시설 설치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학교복합시설이 하나 이상 설치·운영되도록 총 200개교(연평균 40개교씩 5년간) 공모사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임

(69) 지자체의 참여 유도를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70) 본 보고서 작성 당시 공공체육시설 개수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시설 현황의 날짜 기준이 상이하여 이를 혼용하였음

국에 2,868개소(28.8%)가 있으며, 이들 체육시설에서 연간 합계 3,820억 7,000여 만 원의 징수료가 수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체육시설은 필요한 개보수 비용 등을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공공체육시설을 확대하거나 징수액을 상향하는 등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 현실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건비, 공공요금 등의 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사용료를 조례 개정을 통해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논의가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공공체육시설 운영 적자가 점차 가중되어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부담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공공성을 중시하는 공공체육시설의 특성상 과다한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정부로부터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당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기⁷¹⁾보다는 지자체 스스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현실화함으로써 이를 개보수 비용 등에 충당하는 방안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71) 김일광·박성택·김미숙·박수선,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개선방안 : 국민체육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2020.

[광역자치단체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징수현황(2022년도 기준)]

(단위: 개수, 백만원, %)

지역	전체시설 ¹⁾ (A)	사용료징수시설 ²⁾ (B)	사용료징수시설 비중(B/A)	연간사용료징수액 ³⁾ (C)	1개소당 평균징수액(C/B)	1개소당 ⁴⁾ 지원가능액(C/A)
서울	644	219	34.0	96,185	439.2	149.4
부산	312	163	52.2	50,910	312.3	163.2
대구	207	71	34.3	6,853	96.5	33.1
인천	334	140	41.9	18,111	129.4	54.2
광주	177	128	72.3	15,748	123.0	89.0
대전	128	47	36.7	10,817	230.1	84.5
울산	183	76	41.5	12,085	159.0	66.0
세종	146	81	55.5	739	9.1	5.1
경기	2,252	704	31.3	101,599	144.3	45.1
강원	846	254	30.0	8,327	32.8	9.8
충북	440	106	24.1	6,348	59.9	14.4
충남	586	78	13.3	8,458	108.4	14.4
전북	613	140	22.8	9,218	65.8	15.0
전남	776	115	14.8	3,716	32.3	4.8
경북	954	172	18.0	7,692	44.7	8.1
경남	1,207	319	26.4	23,753	74.5	19.7
제주	153	55	35.9	1,511	27.5	9.9
합계	9,958	2,868	28.8	382,070	133.2	38.4

주: 1) 2022년말 기준으로 전체 공공체육시설 35,941개소 중 간이운동장(마을체육시설) 25,983개소를 제외한 사용료 징수가 가능한 체육시설

2) 2023년 기준임

3) 2022년도 1년 동안 징수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4) 해당 지역에서 징수한 입장료 수입 등으로 각 공공체육시설 1개소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각 지자체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 분석

‘생활체육시설지원’ 단위사업 중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내역사업은 정부가 국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근거리 체육시설이나 수영장·체육관 등 국민이 선호하는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세부사업에는 동일 명칭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과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지원’, ‘사업운영비’ 등 3개의 내역사업이 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예·결산 현황('19~'24년)]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현액 ¹⁾ (A)	집행액 ²⁾	실집행액 ³⁾ (B)	집행률 (B/A)	불용액등 ⁴⁾ (A-B)
'19년	219,779	216,693	40,911	18.6	178,868
'20년	286,644	283,333	110,131	38.4	176,513
'21년	269,402	263,625	214,673	79.7	54,729
'22년	204,218	203,992	245,241 ⁵⁾	120.1	△41,023
'23년	165,473	160,083	221,420 ⁶⁾	133.8	△55,947
'24년	84,787	-	-	-	-

주: 1) 계획현액: 정부 계획액(당초)에 추경예산, 전년도 이월액 등을 모두 반영한 금액

2) 집행액: 정부가 집행한 금액(사업시행주체에 교부한 금액 포함)

3) 실집행액: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지자체)이 정부가 지원한 보조금을 실제 집행한 금액 등

4) 불용액, 차년도 이월액 등

5), 6) 정부가 지자체에 교부한 금액 중 이월액을 포함하여 집행한 금액임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중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내역사업으로 지원되는 국민체육센터의 유형은 ‘생활밀착형 일반형(‘24년 보조금 지원 30억원)’⁷²⁾, ‘생활밀착형 장애인형(30~40억원)’⁷³⁾,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형(10억원)’과 2023년 이후 신규로 도입된 ‘시니어친화형’ 및 ‘유아친화형(30억원)’ 체육센터가 있다.

다만,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사업은 2023년에 종료되었으므로, 이하 국민체육센터 건립 내역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72) 지역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체육센터로서 인구와 기존 체육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지근거리에 설립되었음

73) 일명 ‘반다비체육센터’를 말함.

최근 6년간(2019년~2024년) 국민체육센터 건립 내역사업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94개소, 2020년 236개소, 2021년 281개소로 확대된 이후, 2022년 267개소, 2023년 159개소, 2024년 90개소 등으로 감소 추세이다.

[최근 6년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지원 현황]

(단위: 개소)

연도	유 형	신규	계속	개소 당 지원액
2019년	일반형	2	11	27~33억원
	장애인형	-	1	50억원
	생활권 생활밀착형	30	20	30억원
	생활권 장애인형	30	-	30~40억원
소계		62	32	
2020년	일반형	-	7	27~33억원
	장애인형	-	1	50억원
	생활밀착형	55	45	20억원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30	30	30~40억원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형	68	-	10억원
소계		153	83	
2021년	일반형	-	2	27~33억원
	생활밀착형	25	87	30~40억원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30	60	30~50억원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형	37	40	10~12억원
소계		92	189	
2022년	생활밀착형	28	70	30~40억원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20	36	30~50억원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형	40	73	10~12억원
소계		88	179	
2023년	생활밀착형 일반형	8	35	30억(정액)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13	26	30억 또는 40억(정액) ^{주)}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15	59	10억(정액)
	시니어친화형	3	-	30억(정액)
소계		39	120	
2024년	생활밀착형	5	29	30억(정액)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15	27	30억 또는 40억(정액) ^{주)}
	시니어친화형	8	3	30억(정액)
	유아친화형	3	-	30억(정액)
소계		31	59	

주: 수중운동실이 포함될 경우 10억 추가 증액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 기준 전국 지자체별 국민체육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생활밀착형(일반형)’ 151개소, ‘생활밀착형(장애인형)’ 89개소, ‘근린생활형(소규모체육관형)’ 238개소 등으로 총 478개소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배치되어 있다.

[광역자치단체별 국민체육센터 건립·배치현황(2023년 기준)]

(단위: 개소)

지역	생활밀착형 (일반형)(A)	생활밀착형 (장애인형)(B)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형)(C)	소계 (D)=(A+B+C)
서울	15	1	11	27
부산	7	1	5	13
대구	1	2	2	5
인천	3	2	13	18
광주	4	3	6	13
대전	5	1	8	14
울산	0	1	5	6
세종	1	1	5	7
경기	40	18	52	110
강원	14	5	11	30
충북	9	6	13	28
충남	8	14	19	41
전북	6	10	22	38
전남	6	9	14	29
경북	11	5	16	32
경남	13	7	34	54
제주	8	3	2	13
합계	151	89	238	47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KOSIS(국가통계포털)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전국 각 지역의 획일적인 체육시설 공급, 스포츠를 중심으로 설계된 공간, 공급자 중심의 소극적인 운영 등 ‘거점형 국민체육센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과 밀착된 근거리에 수영장·체육관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에 따라 건립되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터'가 도입되기 전에는 '거점형 국민체육센터'를 모델로 하여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거점형 국민체육센터'의 공급방식은 전국 각 지자체에 국민체육센터를 균등하게 건립·배치함으로써 지역 안배의 균형을 주요 요건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러한 '거점형 국민체육센터'는 전국 각 지역에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획일적인 체육시설의 공급, 스포츠를 중심으로 설계된 공간, 공급자 중심의 소극적인 운영 등의 문제점이 야기된 측면도 있었다.

반면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모든 국민이 생활권 내에서 언제라도 편리하게 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중 체육시설의 사각지대가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스포츠 복지 인프라를 중요시하며, 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인 운영이 특징이다.

[거점형 국민체육센터 및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비교]

구분	거점형 국민체육센터(~2019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2018년~)
건립목표	- 기초자치단체 거점 생활체육시설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 체육시설
공급방식	- 전국 1개 시·군·구 당 1개소 건립	- 기본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등)의 사각지대가 있는 지자체에 지원
지원방식	- 건립비 30억원 정액지원 (재정자립도에 따라 27~33억원 차등 지원)	- 건립비 정액지원 (일반형, 장애인형 등 차등 지원) ^{주)}
지원대상	- 기초자치단체(1회 지원에 한정)	- 기초자치단체(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공모·선정을 통하여 지원)
지원유형	- 시설에 따라 유형을 구분 (수영장기본형, 다목적체육관, 체육관복합형)	- 초기: 지역특성을 반영한 유형구분(도시성장형, 소도시 장형, 도시 특화형) - 현재: 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유형구분(일반인형, 장애인형, 시니어친화형, 유아친화형)
주요특징	- 거점 체육시설 균형 배치 - 획일적인 체육시설 공급 - 스포츠 중심 공간 - 공급자를 중심으로 운영	- 생활권 내 체육시설 서비스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체육시설 공급 - 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인 운영

주: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도 지원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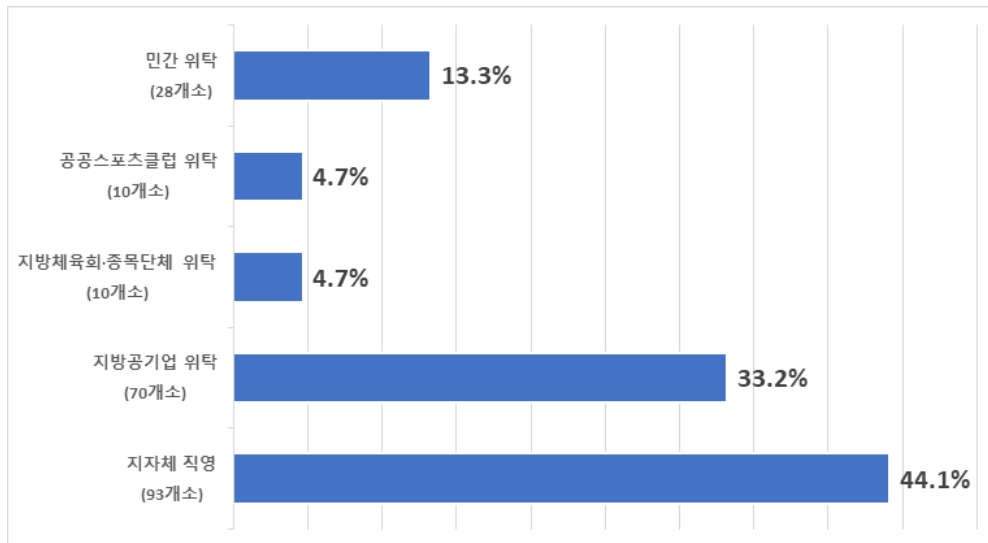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www.kspo.or.kr/kspo/main/main.do>>에서 발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민체육센터 운영방식은 체육센터 이용자 수, 주민 요구, 지자체 예산 및 인력 상황, 지역 내 체육단체 역량, 시설 규모 등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2023년 전국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 조사’⁷⁴⁾ 결과에 따르면 전국 각 지역의 국민체육센터 운영방식은 지자체 직영이 44.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지방공기업 위탁 33.2%, 민간 위탁 13.3%, 그밖에 지방체육회 등 위탁이 4.7%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의 절반 이상이 위탁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는 “국가나 지자체가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국민체육센터의 운영방식을 국민체육센터의 이용자 수, 주민의 의견이나 요구, 지자체 예산과 인력 상황, 지역 내 체육단체 역량, 시설 규모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다.

[2023년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 조사 결과]



주: 총 211개소의 국민체육센터가 “2023년 전국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 조사”에 응답하였음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74) 문체부, “2023년 전국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 조사”, 2023.

이와 함께 ‘2023년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 조사’에 참여한 211개 국민체육센터의 1,189개 프로그램 월평균 수강료를 운영형태 등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하면, 수도권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월평균 수강료는 4만 8,398원이며, 수도권 외 지역은 4만 4,515원으로 수도권 지역의 프로그램 월평균 수강료가 수도권 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영 형태별로 살펴보면, 직영의 경우 4만 4,071원, 위탁경영은 4만 5,911원으로 위탁경영 월평균 수강료가 다소 높았다. 그리고 운영 형태별로 비교해보면, 지자체 직영의 경우 4만 4,071원, 지방공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4만 6,553원, 지방체육회 및 종목단체위탁은 3만 3,247원, 공공스포츠클럽 위탁은 4만 5,709원 그리고 민간 위탁은 4만 8,845원으로 민간 위탁방식이 가장 높았고, 지방체육회 및 종목단체에 위탁한 경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지원유형별 수강료를 살펴보면 비장애인의 평균 수강료는 4만 5,940원, 장애인 평균 수강료는 3만 5,474원으로 나타나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평균 수강료가 비장애인 체육센터 월평균 수강료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체육센터별 프로그램 월평균 수강료 현황]

(단위: 개소, 원)

구분		사례 수	이용 요금 평균(1개월)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261	48,398
	비수도권	928	44,515
운영 형태별	직영	351	44,071
	위탁	838	45,911
세부 운영 형태별	지자체직영	351	44,071
	지방공기업위탁	487	46,553
	지방체육회 및 종목단체위탁	68	33,247
	공공스포츠클럽위탁	90	45,709
	민간위탁	193	48,845
지원 유형별	비장애인	1,124	45,940
	장애인	65	35,474
프로그램 전체		1,189	45,368

주: 총 211개소의 국민체육센터가 “2023년 전국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 조사”에 참석·응답하였음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첫째,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보조금은 센터의 유형에 따른 ‘정액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등보조율’ 규정을 준용한 지원 방법을 검토할 필요⁷⁵⁾가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재부장관은 매년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가감하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은 “인상 보조율은 재정 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서만 적용되 해당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차등보조율’ 제도를 통하여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민체육센터의 유형에 따라 정액을 지원하는 방식은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실제, 최근 3년(2021~2023년)간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와 해당 지역의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율을 살펴보면, 전국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국민체육센터 8개를 건립하는 동안 정부로부터 총 건립비용의 6.6%를 지원받았다. 이는 타 지자체의 지원율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서울특별시의 재정 여건이 좋아서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마련하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여력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의 경우에도 국민체육센터 건립비용 중 정부지원금 비중이 20%대 이하로 전국 평균 지원율(19.7%)보다 크게 높지 않거나(충남, 전북, 경북) 오히려 낮은 경우(경남, 제주)도 존재한다.

75) 2019년까지 추진된 ‘거점형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의 경우 재정자립도에 따라 27~33억원을 차등 지원하였음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 대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 정부 지원율]

(단위: 억원, 개소, %)

지자체	재정 ¹⁾ 자립도 (%)	국민체육센터 개수			총 건립 비용 ⁴⁾ (C)=(D+E)	정부 ⁵⁾ 지원금 (D)	정부 지원율 (D/C)	지방비등 지원금 ⁶⁾ (E)	지자체 지원율 (E/C)
		전체 ²⁾ (A)	중단 ³⁾ (B)	중단율 (B/A)					
서울	75.8	8	0	-	3,234	214	6.6	3,020	93.4
부산	46.3	5	1	20.0	524	104	19.8	420	80.2
대구	46.6	0	0	-	0	0	-	0	-
인천	51.8	9	0	-	650	162	24.9	488	75.1
광주	41.4	6	2	33.3	356	134	37.6	222	62.4
대전	41.5	2	0	-	378	42	11.1	336	88.9
울산	49.4	4	0	-	106	44	41.5	62	58.5
세종	57.6	2	0	-	88	52	59.1	36	40.9
경기	59.8	35	3	8.6	6,311	942	14.9	5,369	85.1
강원	24.9	10	0	-	761	266	35.0	495	65.0
충북	30.2	11	0	-	697	216	31.0	481	69.0
충남	33.0	22	0	-	1,830	466	25.5	1,364	74.5
전북	23.6	15	0	-	1,384	364	26.3	1,020	73.7
전남	23.4	12	0	-	783	314	40.1	469	59.9
경북	25.3	13	1	7.7	1,207	334	27.7	873	72.3
경남	33.3	16	0	-	1,549	268	17.3	1,281	82.7
제주	32.9	6	0	-	985	192	19.5	793	80.5
합계	44.6	176	7	4.0	20,842	4,114	19.7	16,728	80.3

주: 1) 최근 3년간(21~23년, 이하 '최근 3년간'이라 함) 재정자립도 평균

2) 최근 3년간 신규, 건립 중, 건립 완료, 건립 중단 등을 모두 포함한 개수

3) 최근 3년간 정부지원금을 받나하고 사업을 포기하였거나 2023년말 기준 건립 공사가 중단된 국민체육센터 개수를 모두 포함함

4) 최근 3년간 신규, 건립 중, 건립 완료, 건립 중단 등 국민체육센터 건립비용 총액(다만, 용지매입비를 제외함)

5) 최근 3년간 정부에서 지자체에 보조 지원한 총액

6) 최근 3년간 지자체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투입한 지방비 등 총액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각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해당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도록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재정자립도 등 지자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한 지원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체육센터는 생활SOC(사회간접자본)로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사정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역별 재정지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에 대한 차등보조율 지원 근거 규정]

법령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②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추가적인 소요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더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서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빼고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과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law/>>

참고로 교육부 소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23~’27년)’의 공모사업 유형별 지원 규모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정률 지원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방안 중 공모사업 유형별 지원규모(안)]

지자체 재정자립도	사업비 지원율 ¹⁾	비고
20% 미만	30%	- 늘봄학교 ²⁾ 와 연계한 경우 10% 가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우선·추가 지원 가능
20% 이상 ~ 40% 미만	25%	
40% 이상	20%	

주: 1)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

1.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로 방과 후 프로그램(교과연계, 특기적성 등 교육) 및 돌봄(휴식, 놀이, 간식 등)을 통합하여 제공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가는 생활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계·협력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교육·의료·환경·복지·문화·교통 등 시설의 설치와 서비스의 운영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자료: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방안”, 2023. 3.

둘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본격적인 개시(2019년), ‘생활SOC 3개년 계획(2020~2022)’ 등으로 해당 기간 동안 국민체육센터 건립 개소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사업비의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는 지자체의 지방비도 연동되어 증가하였으므로 향후 정부는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역량을 고려하여 사업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국민체육센터로 건립지원’ 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와 제22조(기금의 사용 등)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1997년 지방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은 2008년도에 수립된 국정과제 중 ‘체육단체기능 개편 및 학교체육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MOU를 체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 중 하나인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이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였다. 동시에 2020년부터는 ‘생활SOC(사회간접자본) 3개년 계획(2020~2022)’⁷⁶⁾의 수립·시행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가

76) 생활 SOC 3개년 계획(2020~2022)(2019년 4월 15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발표)이란. 2022년까지 국가 최소 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3년간 30조 원 수준(지방비 포함 시 48조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때 생활SOC에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이 포함됨에 따라 해당 기간(2020~2022년) 동안 국민체육센터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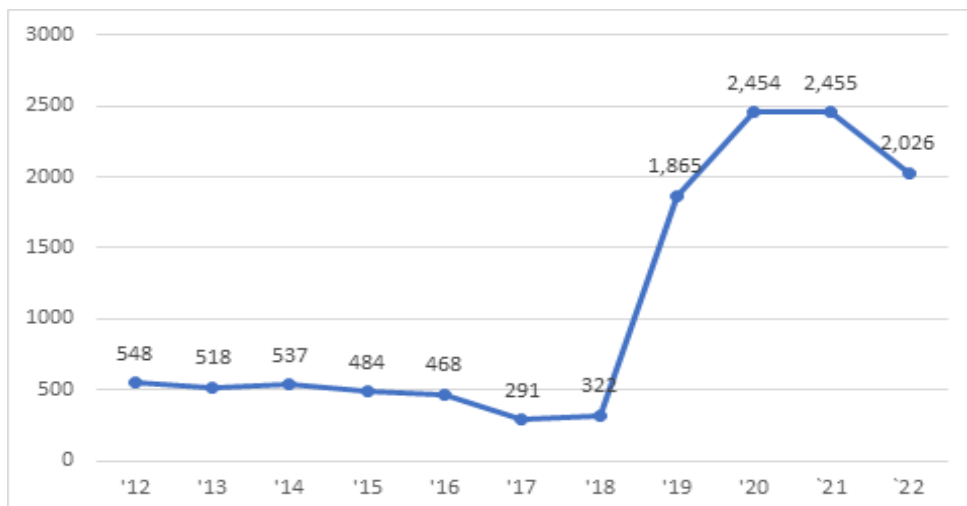
크게 확대됨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체육센터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동을 거치는 동안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시작된 초기 단계에는 정부가 지원한 국비와 총사업비의 나머지를 부담하는 지방비를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단기간에 국민체육센터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가 지원한 국비의 나머지 사업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국민체육센터를 제대로 건립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특히 생활SOC 정책으로 건립이 확정된 국민체육센터의 지방비 부담률은 총 건립비용의 68%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생활SOC 정책이 도입되기 이전인 56.5%보다 11.5%p가 높아진 것⁷⁷⁾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체육지원센터 건립사업의 급격한 확대는 공사비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도 연동되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정부는 각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가 투입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규모(2012~2022년)]

(단위: 억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77) 최경환 의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익부 빈익빈 심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도자료, 2019. 10.

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분석

첫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세부사업 중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내역사업은 예산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세부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세부사업 중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장애인(만 5세~69세)에게 스포츠강좌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의 국비와 지자체의 지방비가 각각 7대 3의 비율로 매칭되어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의 2024년도 예산은 189억 9,100만원이며,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184억 8,000만원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운영비는 5억 1,1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다.

[최근 3년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계획액 산출 내역]

연도	산출내역
'22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총 5,816백만원〉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비) 5,355백만원 (2,219백만원 증) - $9,000\text{명} \times 85\text{천원} \times 10\text{개월} \times 70\% = 5,355\text{백만원}$ * $7,000\text{명} \times 80\text{천원} \times 8\text{개월}('21\text{년}) \rightarrow 9,000\text{명} \times 85\text{천원} \times 10\text{개월}('22\text{년})$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운영비) 461백만원(전년동) - 지자체 사업설명회, 교육자료 제작 및 홍보, 부정수급 관리(공단) 71백만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정보보안관리비(공단) 146백만원 - 카드시스템 상담인력 운영 2명(공단) 63백만원 - 가맹시설 관리, 사업지원, 행정인력 운영 1명(장애인체육회) 195백만원
'23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총 11,633백만원〉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비) 11,172백만원 (5,222백만원 증) - $14,000\text{명} \times 95\text{천원} \times 12\text{개월} \times 70\% = 11,172\text{백만원}$ * $10,000\text{명} \times 85\text{천원} \times 10\text{개월}('22\text{년}) \rightarrow 14,000\text{명} \times 95\text{천원} \times 12\text{개월}('23\text{년})$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운영비) 461백만원(전년 동) - 지자체 사업설명회, 교육자료 제작 및 홍보, 부정수급 관리(공단) 71백만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정보보안관리비(공단) 146백만원 - 카드시스템 상담인력 운영 2명(공단) 63백만원 - 가맹시설 관리, 사업지원, 행정인력 운영 1명(장애인체육회) 195백만원
'24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총 18,991백만원〉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비) 18,480백만원(7,308백만원 증) - $20,000\text{명} \times 110\text{천원} \times 12\text{개월} \times 70\% = 18,480\text{백만원}$ * $14,000\text{명} \times 95\text{천원} \times 12\text{개월}('23\text{년}) \rightarrow 20,000\text{명} \times 110\text{천원} \times 12\text{개월}('24\text{년})$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운영비) 511백만원(50백만원 증) - 지자체 사업설명회, 교육자료 제작 및 홍보, 부정수급 관리(공단) 71백만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정보보안관리비(공단) 182백만원 - 카드시스템 상담인력 운영 2명(공단) 63백만원 - 가맹시설 관리, 사업지원, 행정인력 운영 1명(장애인체육회) 195백만원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세부사업 집행률은 2019년에 99.7%로 나타난 후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98.4%, 2021년에는 96.5%, 2022년도 94.6%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도 비교적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된 2023년도 집행률은 100%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역사업별로 세분한 집행률을 비교하면, 비장애인⁷⁸⁾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예산에 대한 집행률은 최근 5년간 거의 10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2019년에 집행률 100%를 기록하였으나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에는 85.9%, 2021년 68.8%, 2022년 64.5% 등 급격한 하락추세를 나타냈으며,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된 2023년에는 다시 100%로 집행률이 상향되는 등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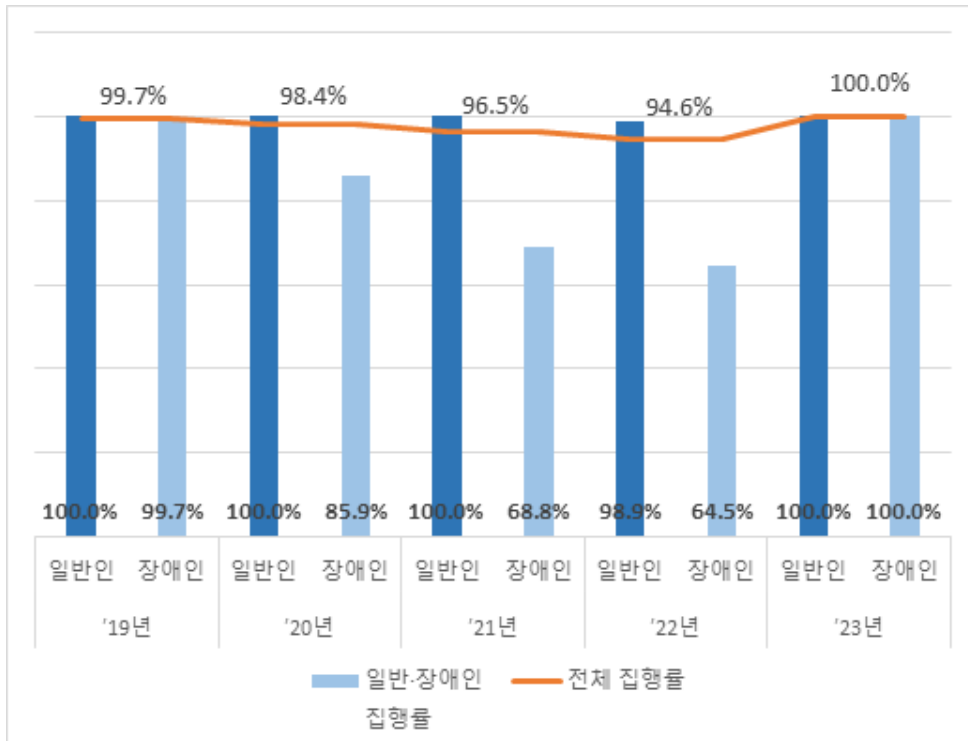
그런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의 사업 예산 중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예산은 약 12~15%에 불과하여 사업비 전체 집행률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다음의 그래프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한 비장애인, 장애인, 전체 집행률을 상호 비교한 것인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비장애인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 집행률은 거의 100%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 집행률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전체의 집행률은 큰 변동이 없다.

이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의 예산 비중 자체가 낮기 때문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의 실적이 부진한 회계연도에도 비장애인의 집행률과 함께 반영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78)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을 말하지만 장애인과 대비하여 신체적 장애가 없는 사람을 편의상 ‘비장애인’으로 표시함.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비장애인, 장애인 및 전체 집행률 비교('19~'23년)]



주: 전체 집행률이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세부사업의 집행률을 말함.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한편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내역사업이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내역사업과 함께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세부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것과는 달리,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관리' 내역사업이나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내역사업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생활체육지원' 세부사업 예산에 이를 별도로 편성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생활 체육지원' 세부사업 예산과목에 편성된 장애인 생활스포츠 관련 사업은 비장애인과 함께 같은 세부사업으로 편성·집행되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과는 달리 실제 예산 집행률이 명확히 드러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성과가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내역사업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세부사업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원' 세부사업으로 이관·편성하여 이를 별도로 집행·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모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시스템, 콜센터 등을 통합·운영하고 있어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은 예산 확보 후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생활체육 관련 세부사업 중 비장애인 및 장애인 내역사업 편성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생활체육활성화 지원(5131-300)	- 체육지도자 양성(비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5161-300)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비장애인)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장애인)
국민체력인증(5161-305)	- 국민체력인증제 운영(비장애인)
장애인생활체육지원(5561-301)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관리(장애인) -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장애인)

주: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생활체육 관련된 내역사업이 상호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대부분의 장애인 관련 사업은 '장애인생활체육지원(5561-301)'에 별도로 편성되고 있으나,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의 경우만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과 함께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5161-300)' 세부사업에 편성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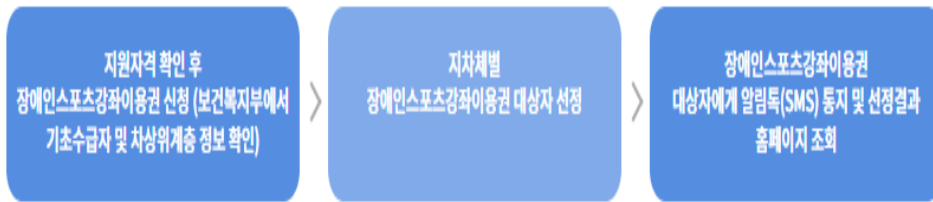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선정, 카드발급, 강좌신청 등의 절차가 번거로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강좌이용권 신청·선정, 전용카드 발급, 강좌수강 신청, 이용권 사용 후 정산 과정 등 그 과정이 매우 번거로운 측면이 있다. 장애인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처음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개인 회원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회원가입이 완료된 개인 지원 자격을 시·군·구 담당자가 확인한 후 다시 지원 대상자 중에서 강좌 이용권자를 선정⁷⁹⁾한다.

79)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나 문자메시지로 확인이 가능함.

[장애인 스포츠강좌 개인이용권 대상자 선정 절차]



자료: 문체부 홈페이지<<https://www.mcst.go.kr/kor/main.jsp>>

이렇게 선정된 이용권자는 장애인 스포츠강좌를 이용하기 위한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⁸⁰⁾ 하며, 카드를 발급받은 이후에는 카드 비밀번호 등록, 개인정보 등록 및 강좌 신청, 강좌 신청 결제 시 온라인 카드를 위한 비밀번호 등록 등을 해야 한다. 이미 이용권 카드를 소지한 자도 이용권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신규 회원가입이나 신규 카드 발급과정을 생략할 뿐 나머지 과정은 신규 신청자와 비슷하게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다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⁸¹⁾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강좌 신청과 이에 대한 결제과정⁸²⁾을 거쳐야 한다.

80)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회원이 URL을 통하여 직접 신청·발급하거나 유선을 통하여 카드발급을 신청할 때는 카드사에서 회원에게 전화를 통하여 안내·발급의 과정을 거치게 됨

81)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 <<https://dvoucher.kspo.or.kr/main.do>>

82) 오직 온라인 결제로만 사용이 가능함.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선정 및 카드발급 절차]

이용권 신규 신청 절차

- 01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개인회원으로 회원가입
- 02 로그인 후 [개인회원 > 개인 이용권신청]에서 신청 완료
- 시군구 담당자가 확인 후 승인 진행
- 03 이용권 선정 후 카드발급 온라인 신청
- 선정 확정 후 7일 이내에 온라인 카드발급 미신청 회원에게는 카드사에서 카드발급 신청자 정보 유선확인
- 04 카드 수령 및 카드 비밀번호 등록
- 05 로그인 후 [개인회원 > 개인 수강신청·결제]에서 강좌 신청
- 06 강좌신청 결제 시 온라인 결제를 위한 일반결제 비밀번호를 최초 1회만 등록

이용권 재신청 절차 (이용권카드 소지자)

- 01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로그인
- 02 [개인회원 > 개인 이용권신청]에서 신청 완료
- 시군구 담당자가 확인 후 승인 진행
- 03 로그인 후 [개인회원 > 개인 수강신청·결제]에서 강좌 신청

자료: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https://www.koreanpc.kr/index.do>>

실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에 선정된 자가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신규카드를 어느 정도 발급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5년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자 대비 선정률 평균⁸³⁾은 86.5%로 나타냈지만 스포츠강좌이용권에 선정된 사람들이 스포츠강좌 이용을 위해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은 자는 이용권에 선정된 자 대비 평균 58.9%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기존에 스포츠강좌를 이용하기 위해 이미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포함된 수치이므로 이의 결과를 그대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률이 낮아지는 결과로 직접 제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2019년의 지원 대상인 만 12~39세 저소득층에서 2023년에 소득과 무관하게 만 19세~69세 장애인까지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2019년 6개월에서 2023년 12개월까지 연장·확대하는 등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신규 선정자가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신규 카드발급률은 2019년 62.3%에서 2021년 64.9%까지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에는 52.2%, 2023년에는 59.6%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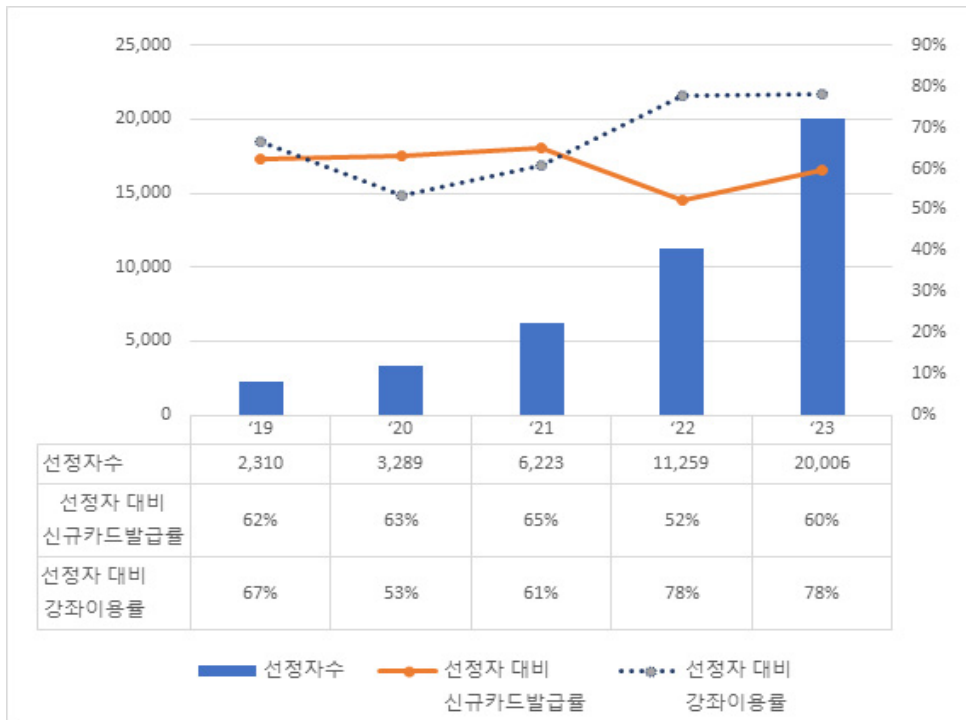
참고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실태조사 결과(2022년)에 따르면 장애인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시 도움을 받은 경우로 ‘온라인 등록 및 결제 방법을 잘 몰라서’가 49.6%, ‘결제 방법이 어려워서’가 37.6% 등으로 나타났다⁸⁴⁾.

83) 최근 5년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이 매년 확대되고 있어 보다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기 위해서 최근 5년간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였음

84) 문희정·오연풍,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개선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2023. 11.

[최근 5년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률 및 신규 카드발급률 변동추이]

(단위: 명)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실제 신규로 발급받은 카드와 이미 과거에 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모두 포함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선정자’가 실제 스포츠강좌를 신청·이용한 경우는 최근 5년간 전체 선정자 수 대비 약 73%에 지나지 않는 등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포기하는 자가 많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그 원인의 하나로 장애인이 실제 지원받는 금액⁸⁵⁾을 고려할 때,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결제 등의 절차가 번거로운 측면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문체부에서 발급하는 ‘문화누리카드⁸⁶⁾’와 같이 장애인 관련 모든 바우처 지원금을 1장의 카드로 통합·사용케 하여 편리함을 도모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85) 2024년 기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은 11만원

86) 문화누리카드: 정부(문체부)가 발급한 카드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며, 이 모든 것을 1장의 카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최근 5년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선정, 신규카드발급 및 강좌이용률 현황]

(단위: 명, %)

연도	신청자 (A)	선정자 (B)	선정률 (B/A)	신규카드 발급 ¹⁾ (D)	신규카드 발급률(D/B)	강좌이용 자 ²⁾ (E)	선정자 대비 강좌 이용률 ³⁾ (E/B)
'19	2,387	2,310	96.8	1,440	62.3	1,541	66.7
'20	3,508	3,289	93.8	2,080	63.2	1,756	53.4
'21	7,014	6,223	88.7	4,040	64.9	3,776	60.7
'22	14,193	11,259	79.3	5,880	52.2	8,776	77.9
'23	22,726	20,006	88.0	11,926	59.6	15,617	78.1
합계 ⁴⁾	49,828	43,087	86.5	25,366	58.9	31,466	73.0
평균 ⁵⁾	9,966	8,617	86.5	5,073	58.9	6,293	73.0

주: 1) 신규카드발급 인원수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신규로 카드를 발급한 자의 수

2) 강좌이용자 수는 카드발급(재발급 포함)을 받은 후 스포츠강좌를 이용한 사람의 수

3) 전체 선정자 대비 실제 스포츠강좌를 이용한 자의 비율(2023년은 강좌를 수강한 후 사후 정산을 하기 전의 수치이며, 단기 체험강좌 이용자는 제외)

4) 합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분을 말함.

5) 평균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의 평균치를 말함.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셋째,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률이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강좌 보다 낮은 측면이 있으므로 장애인이 스포츠 강좌 이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나 장애인 스포츠 활동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종류는 검도, 골프, 농구, 댄스 등 29종으로 비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스포츠 종목과 동일⁸⁷⁾하다. 그런데 비장애인은 29가지 종목을 모두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장애인은 지체, 시각, 청각·언어, 지적·자폐, 뇌병변 등 장애 유형에 따라 일부 강좌 신청이 제한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용 화장실·엘리베이터·주차구역·휠체어 대여 여부·시각장애인 편의 서비스 등 유무에 따라라도 신청할 수 있는 ‘스포츠강좌 가맹시설’이 한정될 수도 있다.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스포츠강좌나 스포츠강좌 가맹시설과 실제 장애인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하여 강좌를 수강하는 것과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저소득층 유·청소년(이하 ‘비장애인’이라 함)⁸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강좌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7)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kspo.or.kr/kspo/main/main.do>>

88) 비장애인의 경우 ‘저소득층 만 5~18세’에 한정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제공함

2023년 기준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강좌를 모두 합하면 2만 9,267개가 있으며, 그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설된 강좌는 7,218개로 24.7%를 차지하고 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강좌 가맹시설의 수는 모두 2만 2,793개이며, 그중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시설은 4,469개로 19.6%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이 수강할 수 있는 강좌나 가맹시설이 비장애인이 수강할 수 있는 강좌나 가맹시설과 비교하여 그 숫자가 적은 편이 아니지만, 실제로 스포츠강좌 이용자 수를 비교하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모두 합한 이용자는 12만 1,089명이며, 그중 장애인 이용자는 1만 5,617명으로 12.9%에 해당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강좌나 가맹시설 비율보다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과 관련하여 2022년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는 ‘2022년도 기준 전체 2,256개 장애인 스포츠강좌 가맹시설 가운데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749곳은 장애인 스포츠강좌 프로그램이 없는데도 가맹시설로 등록되어 있고, 특히 공공시설 전체 296곳 중 절반이 넘는 149곳에서 장애인스포츠 관련 편의시설이 없는 등 2019년부터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진행한 이래 가맹시설 49.2%가 단 한 번도 이용된 적이 없다⁸⁹⁾’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89) 박성현, “[2022 국정감사]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49.2%, 이용된 적 없어”, 프라임경제, 2022. 10. 14.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가맹시설·이용자 수 현황(2023년말 기준)]

(단위: 개, 명, %)

스포츠강좌 수			스포츠강좌 가맹시설 수			스포츠강좌 이용자 수		
전체 ¹⁾ (A)	장애인강좌		전체 ²⁾ (C)	장애인시설		전체 ⁴⁾ (E)	장애인이용자	
	강좌수 (B)	비율 (B/A)		시설수 ³⁾ (D)	비율 (D/C)		이용자수 (F)	비율 (F/E)
29,267	7,218	24.7	22,793	4,469	19.6	121,089	15,617	12.9

주: 1)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과 장애인(만 5~69세)의 스포츠강좌 수의 합계

2)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스포츠강좌를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장애인이 스포츠강좌를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합계

3) 전체 스포츠강좌 이용이 가능한 시설의 수 중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이 가능한 스포츠강좌 가맹 시설(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장애인 운동 프로그램 운영시설, 장애인 형 국민체육 센터 등 공공·민간 체육시설 모두 포함)의 수

4) 저소득층 유·청소년 중 스포츠강좌를 수강한 자와 장애인 중 스포츠강좌를 수강한 자의 합계

자료: 문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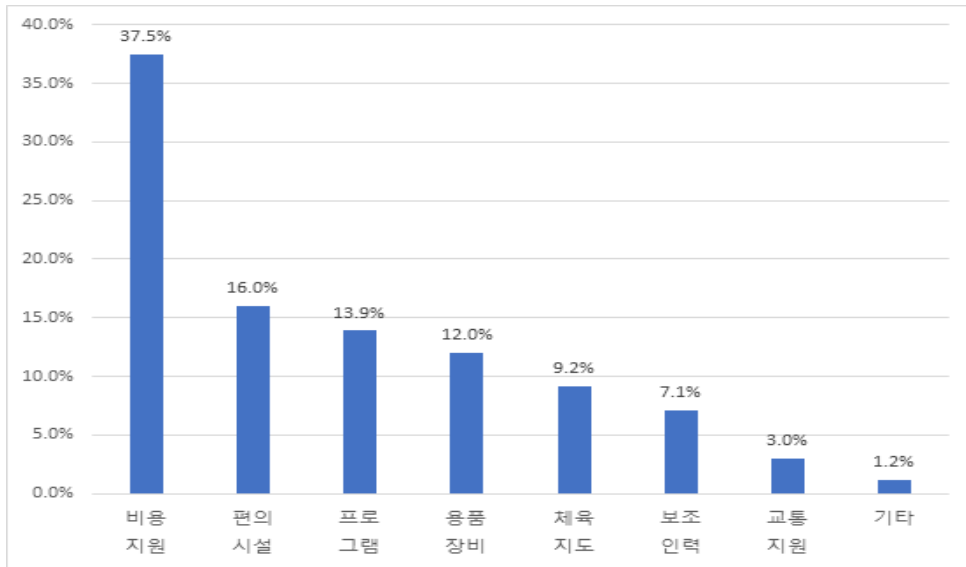
이처럼 장애인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 유형에 따라 수행이 가능한 운동의 종류, 편의시설, 이동 수단,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사 등 제반 사항이나 장애인 스포츠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3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 결과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동 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가장 먼저 ‘비용지원(응답률 37.5%)’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16.0%)’,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도 장애인이 운동 시 가장 필요한 사항 중 하나임에도 장애인 스포츠강좌 가맹시설 중 이에 투입되는 비용의 부담으로 사실상 가맹시설로 등록만 하고 이러한 편의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도 다소 발견되고 있다(2022년 문제위 국정감사 등).

특히 사설 체육시설의 경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스포츠 강좌, 장애인 안전사고와 안전 조치, 보험가입 등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중증 장애인보다는 경증장애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나 장애인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개설에 대하여 강제할 별다른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⁹⁰⁾

[장애인이 운동 시 가장 필요한 사항(2023년말 기준)]



자료: 문체부, “2023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보고서”, 2023. 12.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분석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사업은 장애인들의 체력측정, 운동처방 등을 통하여 장애인 체력증진과 생활체육의 참여 계기를 마련하는 ‘장애인체력인증센터’의 인건비와 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력인증’ 사업은 모두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생활체육활동 및 체력인증)에 근거⁹¹⁾를 두고 시행되고 있지만, 예산의 경우 장애인은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세부사업 중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내 역사업으로, 비장애인은 ‘국민체력인증’ 세부사업 중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내 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예·결산 현황('19~'24년)]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현액 ¹⁾ (A)	집행액 ²⁾	실집행액 ³⁾ (B)	집행률 (B/A)	불용액등 ⁴⁾ (A-B)
'19년	927	927	875	94.4	52
'20년	1,327	1,327	1,311	98.8	16
'21년	1,672	1,672	1,663	99.5	9
'22년	2,020	2,020	2,018	99.9	2
'23년	2,368	2,368	2,272	95.9	96
'24년	3,133	-	-	-	-

주: 1) 계획현액: 정부 계획액(당초)에 추경예산, 전년도 이월액 등을 모두 반영한 금액

2) 집행액: 정부가 집행한 금액(사업시행주체에 교부한 금액 포함)

3) 실집행액: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대한장애인체육회)이 정부가 지원한 보조금을 실제 집행한 금액 등

4) 불용액, 차년도 이월액 등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전국의 체력인증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체력인증센터의 경우 전국에 17개가 있고, 비장애인의 경우 80개의 센터(내방 74개소, 출장 6개소)를 운영한다. 그리고 현지에 직접 나가서 체력인증을 실시하는 출장전담반의 경우 비장애인의 경우 6개를 운영하는 반면, 장애인의 경우 이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91) ‘장애인체력인증’ 사업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도 받고 있음

[장애인체력인증센터 및 비장애인 국민체력인증센터 비교]

구분	장애인체력인증 사업	국민체력인증(비장애인) 사업
법률상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생활체육활동 및 체력인증)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도 받고 있음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생활체육활동 및 체력인증)
'24년예산	3,133백만원	14,435백만원 ¹⁾
사업내역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5561-301) 중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내역사업	국민체력인증(5161-305) 중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내역사업
보조기관 (지원방법)	대한장애인체육회(정액지원)	국민체육진흥공단 100%, 지자체 80%(정률지원)
개소현황 ²⁾	17개 센터 ※ 별도로 운영되는 출장전담반 없음	80개 센터(거점센터 4개소, 지역 70개소, 출장전담반 6개소)
실시방법	장애유형별(척수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실시	유소년기(11세~12세), 청소년기(13세~18세), 성인기(19세~64세), 어르신(65세~) 생애주기 별 실시

주: 1) '국민체력인증' 세부사업 중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내역사업만 해당

1. 2023년말 기준으로 건설중인 센터를 포함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첫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치료와 생활체육을 서로 연계하여 장애인의 체력증진, 운동처방 등을 수행하고, 체력측정항목과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증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문체부에서 수행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등 장애인체육 관련 사업은 2005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문체부로 이관된 것으로, 이관 이후 정책 방향이 재활 중심에서 전문·생활체육 육성 위주로 변환되었다.

본래 장애인의 생활체육은 비장애인과는 달리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복지부에서 시행되었던 장애인체육 관련 사업이 문체부로 이관된 이후 재활 목적보다는 전문체육과 연계된 종목 중심의 지도가 주를 이루는 측면이 있었다.⁹²⁾

92) 조재훈, “장애인 재활체육의 딜레마와 생활체육과의 연계”, 한국특수학회지, 2014.에 따르면 장애인 체육 관련 사업이 복지부에서 문체부(대한장애인체육회)로 이관된 이후 장애인체육지도자의 80% 이상을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소지자로 선발·배치하고 사업을 수행하였는바,

이는 장애인체력인증이 장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의 항목을 기준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애인 생활체육정책은 장애인이 사회복귀를 위하여 그 준비 과정인 ‘재활치료, 재활체육, 생활체육’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병원 등 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거친 장애인이 다음 단계인 ‘재활체육’의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바로 생활체육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재활치료와 생활체육 사이에 사각지대를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재활치료는 신체적 손상에 따른 기능을 회복·유지하고, 신체의 추가적 손상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 운영되는 장애인 생활체육은 재활치료 단계를 건너뛴, 더 이상 장애가 진행되지 않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정책이 시행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재활체육의 상당 부분은 생활체육과 연계되어 있고, 사회로 복귀하는 데 가교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체력인증’ 사업도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재활체육’과 관련된 체력측정이나 운동처방 등을 도입하여 장애인 생활체육과 동시에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⁹³⁾을 발표하여, 재활치료(의료행위)와 생활체육(체육활동)의 중간영역인 재활운동과 체육 기반 마련 및 제도화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장애인의 재활운동과 체육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세부사업 내역으로 전문지도사 교육·양성 및 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재활운동과 체육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문체부에서도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 보건복지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해당 사업이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재활 목적보다는 전문체육과 연계된 종목 중심의 지도가 주를 이루게 되었음

93) 보건복지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2023. 3. 21.

[재활치료, 재활체육 및 생활체육 비교]

구분	재활치료	재활운동 및 체육(가칭)	생활체육
소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의료법상 환자	장애인건강권법 대상자	국민체육진흥법 대상자
법령	의료법	장애인건강권법	국민체육진흥법
목적	의료 및 치료적 처치를 통한 원상회복	재활치료 종료 후 장애상태, 기능 손상정도 등을 고려한 운동역량 개발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	자발적인 체육활동의 운동기능 향상으로 체력증진 및 여가활동
제공 시설	의료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전용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전용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인력	의사, 간호사, 치료사 등	가칭 '장애인재활운동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내용	의료 치료	의료적 잔존기능 회복 및 신체적·심리적 재활운동	휠체어 농구, 탁구 등 종목별 운동

자료: 보건복지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2023. 3. 21.

한편, ‘장애인체력인증센터’는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에 따라 체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교실이나 동호회를 가입하게 하는 등 장애인이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체력인증센터’의 체력측정항목은 비장애인의 체력측정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을 측정하는 경우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 유형과 무관하여 체력측정이 가능하면 비장애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반면, 장애의 유형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측정항목이 거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대체 측정항목을 새로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체육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있다.⁹⁴⁾

참고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력측정항목 중 ‘심폐지구력’ 검사를 하는 경우 척수장애인은 ‘휠체어 5분 달리기’를 통해 체력을 측정하고, 청각장애인은 ‘페이서95’를 통하여, 시각장애인이거나 지적장애인은 ‘6분 걷기’ 검사를 통하여 체력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등, 대부분의 체력측정이 장애 유형별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다양한 장애인 체력측정 방법 개발과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이 실시 가능한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문체부와 복지부 간 협업을 통하여 장애인체력인증을 재할 측면에도 접근함으로써 장애의 특성에 따라 체력측정 항목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94) 서은철, “장애인체력인증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2022. 10. 05.

95) 심폐능력검사의 일종으로 일정한 거리(20m)를 정해진 시간 간격에 따라 신호음에 맞춰 왕복하여 달리는 검사를 말하며, 주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다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체력측정항목]

체력 요인	측정항목	장애유형				측정장비
		척수	시각	청각	지적	
심폐 지구력	휠체어 5분 달리기	○				20m 왕복달리기 측정기
	페이스 ¹⁾			○		20m 왕복달리기 측정기
	6분 걷기		○		○	초시계
	스텝 검사		○	○	○	스텝박스, 심박계, 시각장애인 보조틀(여20cm, 남30cm)
근력	악력	○	○	○	○	악력기(출장용 포함)
근지 구력	윗몸 일으키기		○	○	○	윗몸 일으키기(출장용 포함)
	암컬 ²⁾	○				덤벨 2kg(여), 3kg(남)
유연성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출장용 포함)
	등 뒤로 손잡기	○				줄자
신체 구성	혈압	○	○	○	○	자동 혈압계(출장용 포함)
	체중	○	○	○	○	체중계(휠체어체중계 포함)
	피부두겹검사 1(삼두근, 이두근, 견갑하부, 장골능)	○				스킨폴드 캘리퍼 ³⁾
	피부두겹검사 2(남: 가슴/복부/대퇴, 여: 삼두/상장골/대퇴)		○	○	○	스킨폴드 캘리퍼
	체성분 분석(체지방률)		○	○	○	입식 체성분분석기, 와식 체성분분석기, 체성분분석기 출장용

주: 1) 일정한 거리(20m)를 정해진 시간 간격에 따라 신호음에 맞춰 왕복하여 달리는 심폐 능력 검사

2) 이두운동기구

3) 피하지방의 두께를 측정하여 체지방 및 비만도를 체크하는 도구

자료: 장애인체력인증센터 홈페이지(<https://nfa.koreanpc.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력측정은 유아기, 청소년기, 청소년기, 성인기, 어르신기 등 생애 주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체력측정 방식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운동처방도 장애인 체력측정항목에 비하여 다양한 측면이 있다.

[국민체력인증센터 비장애인 대상 체력측정항목]

시기	구분	요인	측정 항목
유아기 (4세~6세)	체격	신체조성	신장(cm), 체중(kg), BMI(kg/m ²)
	건강 체력	근력	상대악력(%)
		근지구력	윗몸말아올리기(회)
		심폐지구력	왕복오래달리기(10m)(회)
		유연성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cm)
	운동 체력	민첩성	5m 4회 왕복달리기(초)
		순발력	제자리 멀리뛰기(cm)
		협응력	3×3 버튼누르기(초)
유소년기 (11세~12세)	체격	신체조성	신장(cm), 체중(kg), 허리둘레(cm), BMI(kg/m ²) 등
	건강 체력	근력	상대악력(%)
		근지구력	윗몸말아올리기(회)
		심폐지구력	왕복오래달리기(15m)(회)
		유연성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cm)
	운동 체력	민첩성	반복옆뛰기(회)
		순발력	제자리 멀리뛰기(cm)
		협응력	눈-손 협응력(벽패스)(회)
청소년기 (13세~18세)	체격	신체조성	신장(cm), 체중(kg), 체지방률(%), 허리둘레(cm), BMI(kg/m ²)
	건강 체력	근력	상대악력(%)
		근지구력	윗몸말아올리기(회), 반복점프(회)
		심폐지구력	왕복오래달리기(20m)(회), 트레드밀(VO ₂ max), 스텝검사
		유연성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cm)
	운동 체력	민첩성	일리노이(초)
		순발력	체공시간(초)
		협응력	눈-손 협응력(T-wall)(초)
성인기 (19세~64세)	체격	신체조성	신장(cm), 체중(kg), 체지방률(%), 허리둘레(cm), BMI(kg/m ²)
	건강 체력	근력	상대악력(%)
		근지구력	교차윗몸일으키기(회)
		심폐지구력	왕복오래달리기(20m)(회), 트레드밀(VO ₂ max), 스텝검사
		유연성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cm)
	운동 체력	민첩성	10M 4회 왕복달리기(초), 반응시간(초)
		순발력	제자리 멀리뛰기(cm), 체공시간(초)

시기	구분	요인	측정 항목
어르 신기 (65세 이상)	체격	신체조성	신장(cm), 체중(kg), 체지방률(%), 허리둘레(cm), BMI(kg/m ²)
	건강 체력	근기능상지	상대악력(%)
		근기능하지	의자에앉았다일어서기(회)
		심폐지구력	6분걷기(m), 2분제자리걷기(회)
		유연성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cm)
	운동 체력	평형성	의자에앉아 3M표적 돌아오기(초)
		협응력	8자보행(초)

주: '시기' 란의 연령은 모두 만 나이 기준임

자료: '국민체력 100' 홈페이지<<https://nfa.kspo.or.kr/main.kspo>>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장애인체력인증시설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체력인증센터' 근무자가 직접 출장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출장 과정에서 장비 이동의 난점, 측정 장비 파손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장애인체력인증센터'는 건강 운동 관리사 2명, 체력측정사 2명 등 평균 4명의 근무 인원으로 구성·운영되며, 인증센터에서 구비하고 있는 시설·장비는 각종 체력 측정기기나 운동기구 등이 있다. 그리고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방문한 장애인의 체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운동을 처방하거나 인증센터를 운영하는 근무 인원들이 직접 장애인을 찾아가서 현지에서 체력을 측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장애 유형 중 지체장애인, 뇌병변, 심장기능 이상으로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은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직접 방문할 수 없으므로 장애인 인증센터 근무자가 출장을 통하여 체력측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2022년도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인, 뇌병변, 심장기능 이상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절반이 넘는 5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출장을 통한 체력측정을 보다 확대·실시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등록 현황(2022년말 기준)]

(단위: 명, %)

장애유형	장애인수	비중
지체	1,176,291	44.3
뇌병변	245,477	9.3
심장	5,078	0.2
시각	250,767	9.5
청각	425,224	16.0
언어	23,349	0.9
지적	225,708	8.5
자폐성	37,603	1.4
정신	104,424	3.9
신장	105,842	4.0
호흡기	11,451	0.4
간	15,066	0.6
안면	2,725	0.1
장루·요루	16,779	0.6
뇌전증	7,076	0.3
합계	2,652,860	100.0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실제 ‘장애인체력인증센터’에서 이루어진 장애인 체력측정 출장 서비스 실태를 살펴보면, 2019년에 실시된 장애인 체력측정 총원 대비 출장 서비스를 통하여 체력 측정을 실시한 비율은 27.9%였으나, 2020년에는 54.6%, 2021년에는 62.4% 그리고 2022년 59.4%로 나타나는 등, 장애인 체력측정 전체 인원의 50% 이상이 출장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체력인증센터’ 근무자가 출장 서비스 실시를 위해서는 신체·체력 측정 장비를 직접 현장에 가져가서 체력인증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까지 관련 예산⁹⁶⁾조차 없었다. 따라서 출장 서비스를 실시할 때는 인증센터 내 장비를 현지까지 운송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장비가 파손되는 문제점 등이 발생⁹⁷⁾하기도 하였다.

96) 2024회계연도에는 이동식 측정장비 예산 267백만원(19.1백만원×14개소)이 신규 편성되었음

97) 문체부, “202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23.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이용현황(2019~2022년)]

(단위: 명, %)

연도	합계 (A)=(B+C)	방문		출장	
		인원(B)	비율(B/A)	인원(C)	비율(C/A)
2019년	9,790	7,058	72.1	2,732	27.9
2020년	3,781	1,716	45.4	2,065	54.6
2021년	9,283	3,489	37.6	5,794	62.4
2022년	16,405	6,667	40.6	9,738	59.4

주: 2022년 국민체력인증센터 이용자는 총 25만 366명으로 이 중 출장전담반이 출장을 통하여 측정한 사람은 1만 6,495명(6.6%), 내방에 의한 측정자 수는 23만 3,871명(93.4%)임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셋째, 장애인체력인증 시설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전국 각 지역 보건 의료기관에 장애인 체력측정을 위한 장비를 비치하거나 체력측정 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 보건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상호 협력체제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에 분포된 ‘장애인체력인증센터’는 모두 17개로 각 광역자치단체 시·도에 평균 1개⁹⁸⁾ 정도의 개소가 배치된 반면, 지역 보건 의료기관은 전국 각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대부분의 보건 의료기관에는 장애인의 신체를 측정할 수 있는 전문 장비를 갖추고 있다.

98) 경기도의 경우 수원, 광주, 포천, 군포 등 4곳이 있으며,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다.

[전국 지역보건의료기관 현황(2021년 기준)]

(단위: 개소)

지자체	장애인체력 인증센터	보건소 (보건의료원) ¹⁾	일반보건지소 ²⁾	보건진료소 ³⁾
서울	1	25	30	0
부산	-	16	10	5
대구	1	8	9	8
인천	1	10	26	25
광주	1	5	0	10
대전	1	5	6	8
울산	-	5	8	11
세종	1	1	10	7
경기	4 ⁴⁾	48	122	162
강원	1	18	100	129
충북	1	14	96	159
충남	1	16	151	235
전북	1	14	150	238
전남	-	22	217	327
경북	1	25	223	311
경남	1	20	173	221
제주	1	6	11	48
계	57	253	1,342	1,904

- 주: 1) 보건소(보건의료원): 각 시·군·구 별로 1개씩 설치되어 지역 전체 주민의 의료혜택을 담당
 2) 일반보건지소: 보건소의 하부기관으로 지역의 보건을 맡아 처리하며, 전염병 등 질병을 예방, 공중보건 향상 등을 담당.
 3) 보건진료소: 지역보건의료 기관 중 가장 하부기관으로 의사의 배치가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담당공무원(예: 간호사, 조산자 면허 소지자 등)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보건시설
 4) 경기도 수원, 광주, 포천, 군포 등 4곳
 1. 장애인체력인증센터는 2023년 기준, 보건소, 일반보건소, 보건진료소 현황은 2021년 기준임
 자료: 장애인체력인증센터(<https://nfa.koreanpc.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수행하는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건강사업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활용하여 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으며, 동 사업은 각 지역의 보건소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의 주요 목적은 ‘장애인체력인증센터’의 설치 목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체력측정을 측정하고 운동처방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체력증진, 생활체육 활성화’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보건소 설치 근거 법률]

법령	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9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기획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구축 2.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장애인의 진료 및 재활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연구 5.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지원 및 평가 6.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항의 홍보 7. 장애의 예방·진료·재활 등에 관한 신기술·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8.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교육·훈련 9.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국제협력 10.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다만,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law/>>

현재 전국 각 지역의 보건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상급 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는 전국 각 지자체에 253개소가, 일반보건지소는 1,342개소, 보건진료소는 1,904개소가 각각 배치·운영되고 있다.

이들 지역 보건의료기관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에게 재활치료를 하는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 ‘장애인체력인증’을 통해 재활치료와 생활치료를 혼합하여 체력측정·운동처방 등이 이루어진다면 전국에 확산되어 있는 지역 보건의료기관 인프라와 협력체제 구축이 가능해 보인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의 신체를 측정하는 도구 등은 지역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측정 결과를 공유하거나 ‘장애인체력인증센터’ 근무자가 출장 시 필요한 측정 장비를 일부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비치하는 등, 장애인 재활이나 생활체육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건의료기관의 전국적인 배치·운영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이미 비치된 장애인 신체 측정 장비를 사용하거나 각 보건소에 장애인 체력 측정 장비나 시설을 비치·확충하는 등 장애인체력인증센터와 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분석

‘반다비99) 체육센터’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 중 ‘생활밀착형(장애인형) 체육시설’로서,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이다.

동 체육센터는 정부의 총사업비에 대한 국비지원과 지자체의 지방비를 각각 지원하는 형태로 건립된다.

한편,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이 운동 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¹⁰⁰⁾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는데,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¹⁰¹⁾을 설립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통한 체력증진, 신체기능 회복, 재활 지원과 관련된 편의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재활시설은 오직 장애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이 생활체육까지 실시하기에는 시설의 규모나 편의시설 등에 한계가 있다. 이와는 달리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스포츠 인프라로서, 장애인이 생활체육에 사용하는 데 충분한 시설이나 요건을 갖추고 있다.

반다비체육센터의 운영 모델에는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 등 3개의 유형이 있으며, ‘체육관형’에는 하위개념인 동일한 명칭인 ‘체육관형’과 ‘복합체육관형’이, ‘수영장형’에는 ‘수영장 복합형’과 ‘수영장 강화형’이 있으며, ‘종목특화형’에는 ‘동·하계 종목특화형’, ‘해양 종목특화형’, ‘장애 유형 특화형’ 등 3개의 유형이 있다.

반다비체육센터 유형 중 ‘체육관형’과 ‘종목특화형’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1개소당 각각 30억원을 지원받으며, 수중운동실을 포함하거나 ‘수영장형’의 경우 10억원이 추가된 총 40억원이 지원된다. 그리고 각 체육관 1개소당 건립비용 30~40억원을 4년 동안 지원받을 예정이다.

99) 반다비: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 마스코트 이름

100) 장애인이 운동 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1위는 비용지원(37.5%), 2위는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16.0%), 그리고 3위는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13.9%) 순으로 나타났다.

101)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던 시설로 전국 30개소에서 운영되었으나 지방 이양 사업에 따라 각 지자체에 이양·운영 중임

정부는 2027년까지 총 150개소를 목표로 반다비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¹⁰²⁾을 수립하였는바, 2023년 기준 전국 각 지역에는 89개소의 반다비 센터가 건립이 완료되었거나 건립 중이며, 2024년도에는 15개소를 신규로 건립·지원할 예정이다.

[반다비체육센터(생활밀착·장애인형) 운영 모델]

구분	시설 유형	지원 액수
체육관형 ¹⁾	○ 체육관형 - 체육관형 기본 모델	○ 체육기금 30억원 ※ 수중운동실 포함 복합 체육관형 10억원을 추가지원(총 40억원)
	○ 복합체육관형 - 체육관형 모델에 수중 운동실(2~3레인 규모)을 추가한 모델	
수영장형 ²⁾	○ 수영장 복합형 - 수영장형 기본 모델	○ 체육기금 40억원
	○ 수영장 강화형 - 수중운동실을 포함한 수영장 복합형 모델	
종목특화형	○ 동·하계 종목특화형 - 기초지자체별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하계종목(골프, 론볼³⁾, 볼링, 사이클, 양궁 등) 또는 동계종목(아이스하키, 컬링 등)에 특화된 장애인체육시설 건립	○ 체육기금 30억원 ※ 수중운동실 포함 복합 체육관형 10억원을 추가지원(총 40억원)
	○ 해양 종목특화형 - 해양종목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장애인이 접하기 힘든 해양스포츠(조정, 요트 등) 특화시설 건립	
	○ 장애 유형 특화형⁴⁾ - 시각, 뇌병변 등 장애 유형에 특화된 종목⁵⁾을 중심으로 특화시설 건립	

주: 1) 특수학교 내에 건립 및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이 가능

2) 체육관형과 마찬가지로 특수학교 내에 건립 및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이 가능

3) 론볼: 잔디 경기장에서 볼을 굴러가며 행해지는 스포츠로 장애인의 참여가 가능함.

4) 지역별로 분포된 장애인의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 선정

5) 골볼(시각장애), 보치아(뇌병변) 등

자료: 문제부,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지침 및 운영지침」, 2023. 6.을 바탕으로 재작성

102) 2018년에 수립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서는 2022년까지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30%를 달성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2025년까지 150개의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2027년까지 목표 시기가 연장되었음

첫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공모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① 코로나 이후 건축자재비 상승과 높은 부지 매입비용, ② 장애인 편의·안전시설 설치로 인한 비용증가 등 지방 재정확보의 어려움 등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동 센터를 당초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건립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19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체육센터 30개소(당해 연도 목표 30개소)를 신규로 선정·지원하였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신규 건립 대상 체육센터가 23개소(목표 30개소)로 감소하였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된 2023년도에도 13개소(목표 14개소)가 선정·지원되어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정체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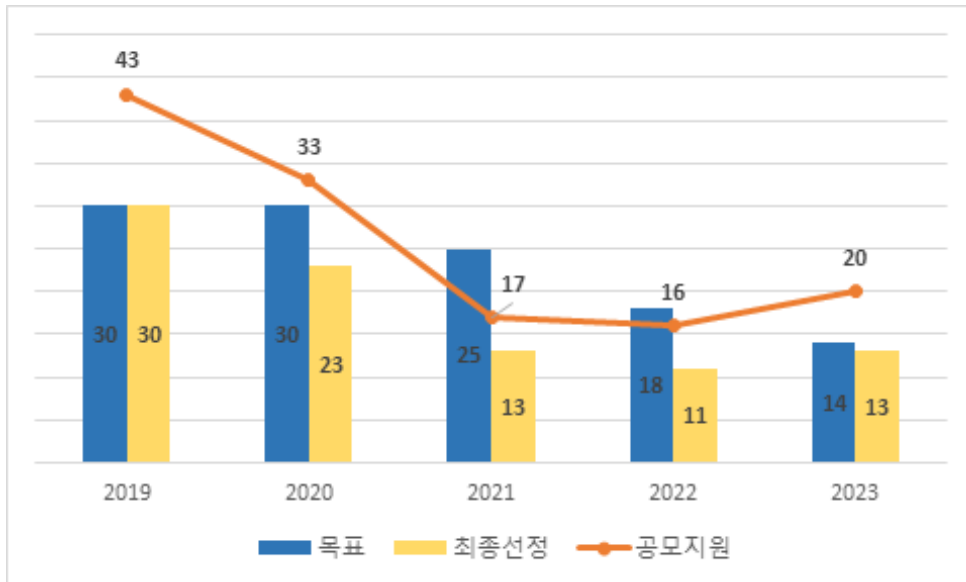
지난 2019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지원 대상 공모를 개시할 때는 각 지자체가 사업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함(43개소 지원)으로써, 정부의 목표계획에 따른 체육센터 30개소의 선정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지자체의 공모 지원 자체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어, 반다비체육센터로 선정되는 개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공모 지원 감소는 다음 연도의 목표치를 다시 축소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2023년말 현재 반다비체육센터는 모두 89개 설치되었으며, 최근 선정 추이를 고려하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2018)’에서 제시한 것처럼, 2027년까지 150개소를 설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반다비체육센터 목표 및 선정 개소 수 현황]

(단위: 개소)



주: 반다비체육센터 사업이 취소된 1곳(광주광역시 서구, '23. 8. 22.)을 포함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은 문체부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와 심사과정을 통하여 선정되고 있어, 비록 문체부가 열의를 가지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여도 대상자인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에 대하여 공모 자체를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 공모 감소 원인¹⁰³⁾ 분석을 통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103)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장애인 우선 이용을 목적으로 건립되는 반다비체육센터의 특성상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위한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사업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반다비체육센터를 건립한 후에도 장애인 시설의 특성상 장애인에 대하여 입장료를 감면할 수밖에 없어 자체 수입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이러한 재정적 요소로 인해 재정 사정이 좋지 않은 지자체는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에 대한 공모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 포함) 사업진행 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지원계획 안내·공고	문체부	지원계획 공고(문화체육관광부⇒시·도⇒시·군·구)
②지원신청서 접수	문체부	시·도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시·군·구⇒시·도⇒문화체육관광부)
③평가 실시	문체부	정량·정성 평가 및 최종 평가 결과 정리
④지원 대상 확정·통보	문체부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최종 선정 및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시·도, 공단)
⑤기금교부·관리·정산	국민체육 진흥공단	기금 교부, 사업 관리, 정산(공단)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부 (공단⇒시·도⇒시·군·구)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

둘째,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반다비체육센터를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나 지침 등의 법령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체육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지원 공모 초기(2019년 시작)에는 체육센터의 운영 주체,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자체 운영조직·인력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이 운영됨에 따라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사업의 건립·지원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동 센터에 대한 정부의 관리지침과 운영지침의 부재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용지침을 마련하거나 시설을 변경함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등의 문제가 발생¹⁰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자 문체부는 2021년도에 설계부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고, 2023년 7월에는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지침(시설설계 사항을 포함)’을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문체부에서 제정·시행 중인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지침’은 반다비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지침을 강제할 수단이 없으며, 단지 권고 수준에 불과하므로 각 지자체는 체육센터를 당초 목적에 따라 건립·

10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2021.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지침 등 법령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체육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2023년 현재 경기도의 경우 「반다비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경기도조례 제7678호, 2023. 7. 18. 제정)를, 전북 익산시는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운영 조례」(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2336호, 2022.12.30. 제정)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장애인 우선 사용 및 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반다비체육센터의 기능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전문·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제6조에서는 지자체의 반다비체육센터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각각 명시하고 있다.

전북 익산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체육센터 이용대상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하되, 반다비체육센터 정책방향에 따라 장애인을 우선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사용허가 우선순위로 장애인 복지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 등을 정부나 도·시의 행사 다음인 2순위로 두고 있다.

그 외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체육센터 관련 자체 조례나 지침을 개정하여 반다비체육센터 관련 규정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체육시설 관련 조례를 준용하여 동 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우선 이용이라는 설립 취지에 따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로 반다비체육센터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로 현재 문체부도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지침」(2023. 7.)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도 별도의 운영규정을 마련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반다비체육센터·운영 관련 조례 등 주요 내용 사례]

법령명	주요 조문 내용
「경기도 반다비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다비체육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 사회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장애인 우선 사용 및 이용)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센터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체육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회복을 위한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전문·생활체육 활성화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한 어울림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4.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여가선용 프로그램 보급 5. 장애인의 안전 및 직업교육 등 진로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 6. 그 밖에 체육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6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체육센터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장애인 진로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장애인 생활체육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4. 장애인 생활체육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역 연계 5.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상담·지원 및 서비스 연계 6. 그 밖에 체육센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이용대상) 반다비체육센터의 이용대상은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며 반다비체육센터의 정책 방향에 따라 장애인 우선 사용으로 한다.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셋째, 장애인의 실질적인 체육시설 접근성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장애인과 장애인체육 전문가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통해 장애인의 편의·안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을 우선 이용대상으로 하는 국민체육센터로서 그 특성상 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성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체육센터 설계단계부터 실제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장애인체육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관련 의견을 청취·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부 반다비체육센터의 경우 설계단계에서 장애인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체육센터를 완공하여, 운영과정에서 편의시설이나 운동시설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한 예로, 반다비체육센터의 공사나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일부 개선·보완될 부분이 종종 발견되고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중 장애인용 손잡이나 점자블록 미설치, 휠체어 통행을 위한 센터 주 출입구의 경사로에 진입판 설치 필요, 주 출입문에 직원 호출 벨 설치 필요, 장애인용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 보완 등의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다¹⁰⁵⁾. 이처럼 체육센터의 개관 이후 체육시설 등을 보완하는 경우 이용자의 불편, 추가적 재정 소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 체육센터의 설계단계부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105) 문체부 답변자료에 따름

[반다비체육센터의 공사나 운영방식 관련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례]

반다비 체육센터	변경대상	설계나 운영방법이 변경되어 지적된 사례
A반다비 체육센터	운영방법	- 이용지침 중 수영장 레인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배분 방식을 장애인 지도자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오후 6시~9시)대에는 성인풀로 변경하여 운영
B반다비 체육센터	편의시설	- 장애인용 손잡이나 점자블록 등 미설치
C반다비 체육센터	편의시설	- 센터 주출입구에 설치된 휠체어 이용 경사로에 진입판을 설치하여 장애인도 입장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
D반다비 체육센터	편의시설	- 주출입문 직원호출벨 부재 - 장애인화장실 세면대 손잡이 불편함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실제 반다비체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로는 외부의 경우 체육시설 진입로, 장애인용 주차공간, 계단, 난간, 도로 시설물 등이 있고, 내부는 입구와 입구 로비, 점자블록 등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접수 데스크 등이 있으며, 그 밖에 피난시설, 위생시설, 휴게실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수영장 시설의 설계단계에서는 수영장 접근경로, 입수시설, 안전사고 예방 등을 고려해야 하며, 체육관의 경우 좌식배구, 골볼, 휠체어농구 등 장애인스포츠 종목을, 종목특화형의 경우에는 특정 종목의 전국대회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 경기장을 시설 내에 설치하는 등 타 국민체육센터와 다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체부의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지침 중 설계 관련 주요 내용]

구분	설계지침 주요 내용
외부시설	- 체육시설 진입로에 명확한 표지판과 조명을 갖추고 접근로의 기울기를 낮게 설치 - 장애인용 주차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체육시설 진입로를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 그밖에 계단, 난간, 도로 시설물 등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설계지침을 규정
내부시설	- 입구와 입구 로비, 접수구역에 점자블록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휠체어 이용자 등이 사용하기 쉽게 할 것 - 접수 데스크는 높이를 낮춘 부분이 있어야 하며, 시각·청각장애인 등을 고려한 설계를 할 것 - 그밖에 복도, 난간, 도어(door),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설계지침을 규정
피난 (비상 탈출)	- 설계 초기 단계부터 건축가와 건물 관리자가 장애인의 피난(비상탈출)과 관련된 사항을 확립·협의를 할 것 - 중증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미끄럼대, 시각장애인 대피를 비상벨·음성안내 장치, 청각장애인 대피를 위한 경광등·조명 문자 안내판 등 장애인 피난시설과 관련된 설계지침을 규정
위생시설	- 화장실 내 촉지기능 안내표지(시각장애인용) 설치, 응급 비상 호출 벨, 장애인용 세면대, 남녀공용 장애인 화장실¹⁾ 등을 설치해야 함 - 탈의 구역이나 탈의실·샤워실에 장애인 편의를 고려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 위생시설과 관련된 설계지침을 규정
기타시설	- 휴게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소, 휠체어 보관장소 등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설계지침을 규정
수영장 설계	- 수영장 접근경로, 입수시설, 안전사고 예방, 입수자 편의를 위한 입식 계단, 안전한 바닥 마감재 사용, 중증장애인 샤워시설 등 장애인 수영장 시설과 관련된 설계지침을 규정
체육관 설계	- 좌식배구, 골볼, 휠체어농구 등 최대한 많은 종목의 장애인스포츠 전국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
종목 특화형	- 특정 종목의 전국 대회(리그전)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 경기장을 시설 내 설치 - 수중운동실은 장애인, 노인 등이 수중 운동(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수영장을 설치하지 않는 ‘체육관형 센터’와 ‘종목특화형 센터’에 설치를 권장

주: 1) 남녀공용 장애인 화장실: 성별과 관계없이 장애인 이용자가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된 화장실의 경우 성별이 타 도우미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1. 문체부의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지침」은 각 지자체에 강제력이 없어 단순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자료: 문체부,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지침 및 운영지침」, 2023. 6.을 바탕으로 재작성

넷째, 장애인 입장료 감면으로 인한 체육시설 운영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체육센터를 건립한 이후 장애인을 우선하지 않는 운영 등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반다비체육센터를 건립할 때는 정부로부터 건립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되지만 등 체육센터가 완공된 후에는 정부로부터의 지원 없이 지자체 스스로 운영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그런데 체육센터 수입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장료 수입은 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특성상 입장료를 경감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체육센터를 관리·운영할 때 필요한 재정수입 또한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도 장애인 생활체육에 필요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치, 장애인 시설물 유지·관리,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교통수단 확보 등 타 체육센터보다 행정·재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반다비체육센터의 당초 목적인 장애인을 우선하는 체육 프로그램보다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중시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반다비체육센터는 ‘생활 SOC’의 하나로 여가·건강·안전·환경 분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 인프라 시설이므로 경제적 수익보다 공공성을 더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반다비체육센터의 당초 운영목적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임에도 장애인의 이용권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의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률이 저조하다거나 체육센터 입장 수입의 제고를 목적으로 장애인을 우선하지 않는 방식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다비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하지 못하여 일부 장애인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일례로 수영장을 운영하는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지도자가 근무하는 야간 프로그램 요일과 시간대(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9시)에는 장애인 전용 수영장 레인으로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 밖의 요일이나 시간대에는 해당 레인을 장애인 우대 레인으로 지정하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다섯째, 반다비체육센터를 건립·배치할 때는 각 지역의 반다비체육센터의 개소수와 1개소당 이용이 가능한 장애인 수, 공공체육시설 확보현황 및 반다비체육센터의 장애인체육 이용수요 우선 반영이라는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육센터를 건립·배치할 필요가 있다.

전국에 분포된 반다비체육센터의 지역적 안배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체육센터 1개소당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수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 각 지자체 중 반다비체육센터가 가장 많이 건립·배치된 곳은 경기도로 모두 18개의 반다비체육센터가 있으며, 충남이 14개소, 그리고 전북이 10개소로 타 지자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반다비체육센터가 있다. 반면에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세종 등의 지역에 건립된 반다비체육센터는 1개소에 그치고 있다.

반다비체육센터 1개소당 사용이 가능한 장애인의 수¹⁰⁶⁾는 충남 9,640명으로 가장 적으며, 제주 1만 2,392명, 세종 1만 2,863명 등의 순으로, 반다비체육센터 1개소당 사용이 가능한 장애인 수가 적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체육센터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서울의 경우 1개소당 39만 1,859명의 장애인이, 부산의 경우 17만 6,245명의 장애인이 반다비체육센터를 사용할 수 있어 각 지역의 편차가 큰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6) 비장애인 사용자는 제외하며, 해당 지역에 등록된 장애인의 수를 같은 지역의 반다비체육센터 개수로 나누어 산출한 수치임

[광역자치단체별 반다비체육센터와 1개소당 이용이 가능한 장애인 수]

(단위: 개소, 명)

지역	반다비체육센터수 ¹⁾ (A)	장애인수 ²⁾ (B)	1개소당 장애인 수(B/A)
서울	1	391,859	391,859
부산	1	176,245	176,245
대구	2	127,611	63,806
인천	2	151,035	75,518
광주	3	69,476	17,369
대전	1	71,941	71,941
울산	1	51,473	51,473
세종	1	12,863	12,863
경기	18	584,834	32,491
강원	5	101,794	20,359
충북	6	97,966	16,328
충남	14	134,957	9,640
전북	10	132,014	13,201
전남	9	138,595	15,399
경북	5	182,835	36,567
경남	7	190,186	27,169
제주	3	37,176	12,392
합계	89	2,652,860	29,476

주: 1) 2023년말 기준 건립 중인 센터 포함

2) 2022년말 기준이며,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모두 포함함

자료: 문체부 및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반다비체육센터 및 동 체육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체육관과 수영장까지 범위를 확대¹⁰⁷⁾하여 장애인체육시설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7) 반다비체육센터(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비장애인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생활체육관이나 수영장의 범위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시설 모두를 포함하였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공공체육시설은 총 1,366개소이며, 이 중 장애인 체육시설은 59개소¹⁰⁸⁾, 공공체육시설에 속한 생활체육관과 수영장 등 총 1,307개소이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반다비체육센터를 포함) 중 동일한 주소 내에 생활체육관 또는 수영장 등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 한 개의 시설로 보아 중복 개소수에서 제외할 경우 전체 체육시설은 총 1,060개소이며, 이 중 장애인 체육시설은 57개소, 공공체육시설은 반다비체육센터를 포함하여 총 1,003개소가 있다.

[장애인 체육시설 및 비장애인 체육시설 확보현황(2023년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개소 수	중복제거 후 개소 수	비중
장애인 체육시설	체육관 및 수영장	59	57	5.4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관	710	679	64.1
	수영장	492	220	20.8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¹⁾	105	104	9.8
	소계	1,307	1,003	94.6
합계		1,366	1,060	100.0

주: 1)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광역형(15개소), 생활밀착형(반다비체육센터 89개소)을 말함.

자료: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기초자치단체 단위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 수요분석”, 2023. 11.

한편 광역자치단체별 장애인 체육시설 비중을 살펴보면 장애인체육시설 지역 비중은 경기도가 17.5%, 서울특별시 15.8% 순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시에 이용이 가능한 체육시설 시설 또한 경기도가 20.7%, 서울이 13.9% 순이다.

108)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체육시설로 조성된 것만 해당되며, 복지부의 지역사회재활시설로 공급된 장애인체육시설 30개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정보센터에 등록된 29개소를 포함함.

[광역자치단체별 장애인 체육시설 및 비장애인 체육시설 확보현황(2023년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장애인 체육시설(A)	공공체육 시설(B)	시설합계 (C)=A+B	장애인 시설비중 (D)=A/C	장애인체육시설(A) 지역 비중	시설합계(C) 지역 비중
서울	9	138	147	6.1	15.8	13.9
부산	1	36	37	2.7	1.8	3.5
대구	2	37	39	5.1	3.5	3.7
인천	1	45	46	2.2	1.8	4.3
광주	1	26	27	3.7	1.8	2.5
대전	8	25	33	24.2	14.0	3.1
울산	2	17	19	10.5	3.5	1.8
세종	0	23	23	0.0	0.0	2.2
경기	10	209	219	4.6	17.5	20.7
강원	2	66	68	2.9	3.5	6.4
충북	4	43	47	8.5	7.0	4.4
충남	3	52	55	5.5	5.3	5.2
전북	4	78	82	4.9	7.0	7.7
전남	3	57	60	5.0	5.3	5.7
경북	5	66	71	7.0	8.8	6.7
경남	2	72	74	2.7	3.5	7.0
제주	0	13	13	0.0	0.0	1.2
합계	57	1,003	1,060	5.4	100.0	100.0

자료: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기초자치단체 단위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 수요분석”, 2023. 11.

전국에 분포된 장애인·비장애인 체육시설과 1개소당 이용이 가능한 장애인의 수를 비교해보면 부산 4,763명, 인천 3,283명, 대구 3,272명 등이 평균(2,503명)을 상회하였다.

[광역자치단체별 장애인·비장애인 체육시설과 1개소당 이용 가능 장애인 수]

(단위: 개소, 명)

구분	장애인체육시설 (A)	공공체육시설 (B)	시설합계 ¹⁾ (C)=A+B	장애인수 ²⁾ (D)	1개소당 장애인 수 (D/C)
서울	9	138	147	391,859	2,666
부산	1	36	37	176,245	4,763
대구	2	37	39	127,611	3,272
인천	1	45	46	151,035	3,283
광주	1	26	27	69,476	2,573
대전	8	25	33	71,941	2,180
울산	2	17	19	51,473	2,709
세종	0	23	23	12,863	559
경기	10	209	219	584,834	2,670
강원	2	66	68	101,794	1,497
충북	4	43	47	97,966	2,084
충남	3	52	55	134,957	2,454
전북	4	78	82	132,014	1,610
전남	3	57	60	138,595	2,310
경북	5	66	71	182,835	2,575
경남	2	72	74	190,186	2,570
제주	0	13	13	37,176	2,860
합계	57	1,003	1,060	2,615,686	2,503

주: 1) 2023년말 기준이며, 중복을 제거한 개소수임

2) 2022년말 기준이며,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모두 포함함

자료: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기초자치단체 단위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 수요분석”, 2023. 11.을 바탕으로 재작성

향후 반다비체육센터를 추가로 건립·배치할 때는 해당 지역의 반다비체육센터의 건립(개수) 여부, 장애 인구수 및 수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되, 기존의 반다비체육센터를 포함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계획에는 공공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 시설의 확보 내역이 수요분석에 이미 반영되어 시행되고¹⁰⁹⁾ 있으므로 공공체육시설이 중복·배치된 지역에는 반다비체육센터의 건립을 최소화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반다비체육센터’의 특수성인 장애인체육 이용수요를 우선 반영하는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건립·배치할 필요가 있다.

109) 문체부 연구용역(2018년 및 2023년) 결과에 따름

최근 장수 시대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국민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의료비 절감, 삶의 질 제고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도 과거 소수의 재능있는 유망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전문체육’에서 국민 누구나 편안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육성’으로 체육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그동안 시행되어 온 생활체육 육성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지원제도, 재정투입 및 성과 등을 평가·분석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몇 가지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총괄 분석

첫째, 생활체육 육성사업과 관련된 재정투입의 규모 외에도 외부적인 요인이나 재정투입기간 등에 따라 생활체육 참여율, 체육시설 이용자 만족도 등의 성과가 변동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 점검이 필요하다.

둘째,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율’과 관련된 성과지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딘 참여율 회복세와 최근 악화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적극적인 수준으로 보이고 있으나, ‘장애인 생활체육’의 경우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5년간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과 지출 규모를 비교한 결과 수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다한 측면이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 중 일부가 같은 문체부 소관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연례적으로 전출되는 사례도 있다.

2. 생활체육 운영

첫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유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강좌를 추가로 개설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이 일부 종목에 편중된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감소는 학교 체육의 다양성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스포츠강사가 감소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을 타 부처의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안 주말체육프로그램과 학교밖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면민하게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교 내에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의 정원이 매우 적은 수준(‘23년 기준 전체의 1.0%)이므로 이를 보다 확대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정원을 배치할 때 생활체육 참여자 현황, 지역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비율은 물론 지역의 생활체육 환경까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결과 조치 미흡, 보다 다양한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발굴·지정할 필요성, 비인기 종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3. 생활체육시설

첫째, 일부 공공체육시설은 빠른 노후화, 안전상 문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무 등으로 개보수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지만, 관련 법령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부족한 개보수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는 지역의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역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4. 장애인 생활체육

첫째,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내역사업을 비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과 분리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사업 내에 편성을 검토하고, 동 강좌의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며, 장애인이 스포츠 강좌 이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나 장애인 스포츠 활동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이용률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체력인증 제도’는 재활치료와 장애인 생활체육과의 상호 연계, 장애인 체력측정항목과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의 개발, 장애인체력인증 출장 서비스 제도의 난점 개선, 각 지역 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전국적인 체력인증 서비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

셋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모의 감소 원인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건립지원, 지자체의 동 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례 등 제정, 동 체육센터를 건립한 후 장애인 우선 운영방식의 변경 지양, 각 지역의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한 체육센터의 건립·배치 등이 필요하다.

5. 시사점 및 종합 제언

그동안 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등을 제정하고, ‘국민체육진흥계획’, ‘스포츠진흥기본계획’ 등 중장기 계획에 따라 국민의 생활체육 육성정책을 시행하였다. 본 보고서는 생활체육 육성사업 운영, 생활체육시설 설치·운영,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으로 구분하여 그간 사업의 성과와 개선과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생활체육 육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체육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스포츠권’을 보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생활체육 육성사업의 운영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체육시설 등 인프라를 완비해 나감으로써, 거주 지역과 연령대, 성별, 소득 수준,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의사로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선제적으로 지켜 나가는 ‘적극적인 복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재정투입 대

비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생활체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생활체육 육성사업 평가

발간일 2024년 7월 4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2070 · 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tel 02 · 2672 · 1535~6)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198-0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4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87-002086-01



국회의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